

한국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방안

1998. 3

김정국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장지인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장연 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증권연구원

序 言

증권시장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제 회계정보의 질적·양적인 향상은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과제중의 하나인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 회계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회계기준 설정체제, 회계기준, 회계감사제도 등이라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회계기준 설정체제가 정비되어야 회계기준의 제개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회계기준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어야 회계정보가 올바르게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무리 회계기준 설정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또한 회계기준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을 가려낼 수 있는 회계감사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회계기준 설정체제, 회계기준, 회계감사제도의 정비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때 회계제도의 전반적인 선진화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한국회계기준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요사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국내회계기준의 국제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지난 수년간 금융업계에서 매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던 보유주식평가손실의 당기순손익반영문제도 본 보고서에서 함께 다룰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본 연구원의 다른 연구자료에서 별도로 다루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당해 자료(본 연구원의 Issue Paper 98-2)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또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회계기준 설정체제의 개선문제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설정체제상의 문제점 및

단기적인 대책도 다루었으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도 상당한 역점을 두었다. 또한 그동안 회계업계 및 학계에서 많이 주장되어 왔던 회계연구원의 설립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한편 회계감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문제와 함께 그 중요성이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회계감사서비스와 관련된 규제감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참여한 여러 연구요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제 1부(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업회계기준의 개선방안)의 연구는 중앙대학교의 장지인교수님이 맡아 주셨다. 제 2부(한국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원의 김정국 박사가 맡았는데, 중앙대학교의 장지인교수님이 이 연구와 관련하여 귀중한 자료와 조언을 제공하였다. 제 3부(회계기준 설정체제에 관한 연구)에 관한 연구도 본 연구원의 김정국 박사가 맡았는데, 외국어 대학교의 조장연교수님이 소중한 자료와 연구조언을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한국의 회계감사서비스에 대한 금융기관종사자들의 신뢰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맡아주셨다. 그리고 기타 학계인사들, 한국공인회계사회, 증권감독원 직원들, 원고정리에 애를 많이 쓴 김제향 연구조원 등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본 연구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들의 개인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8년 3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운열

< 목 차 >

제 1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업회계기준 의 개선방안

I. 서론	3
II.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국제비교	6
1. 정보의 가용량(공시수준)	6
2. 정보의 신뢰성(reliability)	11
3.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17
III.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21
1. 국내회계기준의 발달과정	21
2.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23
가. 국내기준과 차이가 없는 (혹은 차이가 미미한) 국제회 계기준	23
나. 국내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국제회계기준	24
다. 국제회계기준에 상응하는 국내기준이 없는 기준	29
IV. 대내적 부조화와 회계정보 산출의 정치적 영향	30
1. 회계기준의 대내적 부조화	30
2. 회계기준 설정의 정치적 영향	32

V. 신뢰성제고를 위한 회계기준의 발전방향	35
1. 회계기준의 국제화	35
가.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	35
나. 회계기준의 국제화 전략	37
2. 공시수준의 확대와 기준의 보완	40
가. 공시수준의 확대	40
나. 회계기준의 보완	44
3. 대내적인 관련규정과의 조화와 체계화	47
가. 세법 및 세무회계와의 조화	47
나. 각종 회계처리기준의 일관성제고	48
다. 회계기준 체계의 정비	49
4. 개념구조의 설정과 기준설정 기구의 보완	50
가. 개념구조의 설정	50
나. 회계기준 설정기구의 보완	53
VI. 맺음말	55
1. 회계기준의 국제화	55
2. 공시수준의 확대와 회계기준의 보완	56
3. 대내적인 관련규정과의 조화와 체계화	57
4. 개념구조의 설정과 기준설정 기구의 보완	58
부록	61
참고문헌	63

제 2부 한국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

I. 서론	69
II. 회계정보의 유용성 및 회계감사품질에 대한 일반의 인식	73
III. 국내 회계감사시장 현황	77
IV. 분석적 틀 - 회계감사 관련 규제감독제도의 검토를 위한 분석적인 시각의 정립	82
V. 감사보수제도	91
1. 현행제도	91
2. 문제점	93
3. 개선방안	99
가. 지정감사의 경우	99
나. 비지정감사의 경우 - 세가지 대안의 고려	100
VI. 감사업무 수임제한제도	102
1. 변천과정	102
2. 현재의 수임한도 제도	107
가. 감사인이 감사할수 있는회사의 규모에 대한 제한 ...	107
나.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수 있는 회사수에 대한 제한 ·	108
3. 외국의 감사업무배정 및 제한에 관한 제도	109
4. 현행 감사수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0

VII. 감사인 선임관련제도	113
1. 감사인의 선임, 해임 및 부당교체	113
2. 감사인 지정	115
가. 감사인 지정제도 변천과정	115
나.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	119
다. 문제점 및 개선안	125
VIII. 한국의 감리제도	128
1. 변천과정	128
2. 현행 감리제도의 틀	130
3. 외국의 감리제도	134
4. 과거의 증권감독원 감리결과분석	142
5. 감리제도 개선방안	149
가. 감리의 강화	149
나. 공인회계사회 자율감리에 대한 감독강화	152
다. 상호감리제도 도입의 검토	153
라. 감리결과에 대한 처벌 강화	155
마. 전문감리심의기구의 필요	157
IX.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58
(부록 1) 일본의 표준보수규정	161
(부록 2) SEC의 회계와 감사에 관한 조사	167
(부록 3) 美國의 監理制度	170
참고문헌	175

제 3부 회계기준 설정체제에 관한 연구

I. 서론	181
II. 회계기준 설정환경의 이해	183
1. 국가간 회계기준 설정환경의 차이	183
2.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설정환경	186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189
1. 미국	189
2. 영국	201
3. 호주	212
4. 일본	227
5. 프랑스	232
6. 독일	240
7.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241
IV. 한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243
1. 현행 기준설정 기관	243
2. 문제점	245
가. 조사연구의 전문성 부족	246
나. 조직구조상 기준제/개정의 탄력성 부족	246
다. 기준설정의 공개성과 투명성 부족	247
라. 인력과 예산의 비독립성으로 인한 회계기준제정에 정 치적 영향 초래	247
마. 회계기준심의회 위원구성	249

V. 한국회계기준 설정기관의 개선방향	250
1. 개선방향 설정시 고려사항	250
가. 주요기본개념들	250
나. 민간부문의 참여정도	254
2. 회계기준설정기관 개선방안	263
가. 개선방안	263
나. 제언 및 향후 검토과제	272
3. 회계기준심의회 및 회계연구원의 조직·운영체계	275
VI. 결론 및 주요내용 요약	278
1. 한국회계기준설정기구의 문제점	278
2. 외국의 사례검토로부터의 시사점	279
3. 회계기준설정기구 개선안	282
부 록	294
참고문헌	300

<표/그림 목차>

제 1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업회계기준 의 개선방안

<표 II-1> 국가별 공시수준의 비교	8
<표 II-2> 공시요구 기준의 비교	10
<표 II-3> 인지된 국내회계기준의 質	12
<표 II-4> 국가별 국제회계기준의 활용형태	13
<표 II-5> 회계감사인 數	14
<표 II-6> 회계감사보고서의 포괄성	16
<표 II-7> 회계기준의 국제비교 ¹⁾	19
<표 III-1> IAS와 국내기준의 비교	25

제 2부 한국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

<표 II-1> 회계정보 신뢰도 및 감사인의 평판에 관한 조사결과	74
<표 III-1> 연도별 회원현황	77
<표 III-2> 한·미·일 3국의 공인회계사 현황	78
<표 III-3> 연도별 외부감사 시장규모	78
<표 III-4>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매출액 구성비	79
<표 III-5> 미국의 6대회계법인의 매출액 구성비('92)	79
<표 III-6> 산업별 상위 3개 회계법인의 집중도 (CR-3)	81

<표 III-7> 감사인별 상위 3개 산업비중의 특화도(SR-3)	81
<표 V-1> 개별재무제표 회계감사보수산출방법	92
<표 V-2> 개별재무제표 회계감사의 기본보수	93
<표 V-3> 각 국가의 감사수임료 선행 실증연구 결과	94
<표 V-4> 주요국의 감사보수결정 형태	98
<표 VI-1> 외부감사법률에 대한 적용변천 요약	104
<표 VI-2> 감사인별 감사 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에 대한 제한	107
<표 VI-3> 주요국의 감사업무 수임제한에 관한 제도	110
<표 VII-1> 최근의 감사인 지정요건의 확대 또는 개선	117
<표 VII-2> 감사인 지정사유의 변천	118
<표 VII-3> 연도별 감사인지정 현황	124
<표 VII-4> 외감대상기업대비 감사인 지정대상기업 비율	124
<표 VIII-1> 연도별 외부감사 대상회사 현황	142
<표 VIII-2> 감리위원회의 감리실적	143
<표 VIII-3> 감리위원회의 감리지적현황	144
<표 VIII-4> 감리위원회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144
<표 VIII-5>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리실시현황	145
<표 VIII-6>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리지적 현황	146
<표 VIII-7> 증권위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147
<표 VIII-8> 연도별 감사보고서 감리지적비율	148

제 3부 회계기준 설정체제에 관한 연구

<표 V-1> 국가별 회계기준 설정기구 성격비교(註2)	284
<표 V-2> 회계기준 설정체제 개선시 고려사항	286

<그림 V-1> 미국의 회계기준설정체제	287
<그림 V-2> 영국의 회계기준설정체제	288
<그림 V-3>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준회계기준설정체제	289
<그림 V-4> 오스트레일리아의 새로운 회계기준설정체제안 ..	290
<그림 V-5> 일본의 회계기준 설정체제	291
<그림 V-6> 일본의 재단법인 기업재무제도연구회	292
<그림 V-7> 한국회계기준 설정체제의 개선방안	293

제 1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의 개선방안

1998. 3

I. 서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업이 회계정보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과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불신감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도가 상당히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회계정보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낮고, 결과적으로 회계정보의 이용도가 저조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IMF사태로 국내 회계제도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회계정보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IMF가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주요한 사안중의 하나가 기업회계제도의 투명성제고이다. 그것은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여 국내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이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도록 하며, 나아가서 한국의 회계감사도 신뢰할 수 없으니 이를 개선하여 회계정보의 신뢰도를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고,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재벌그룹들의 결합재무제표작성과 금융기관의 유가증권평가손의 적절한 반영, 그리고 대손충당금의 합리적인 설정을 하도록 관련 회계기준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한국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회계정보는 기업내외의 이용자집단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회계정보의 기본적인 역할은 많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지받아 왔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역할과 중요성이 널리 수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고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풍토는 회계정보를 유용한 도구로 기업경영에 활용하기 보다, 회계정보가 아닌 다른 수단에 의

한 경영과 통제, 그리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회계정보가 기업경영에서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부족과 회계정보에 대한 불신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회계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정부주도의 규제 일변도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회계정보에 의존한 규제나 이해관계자집단들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직접적인 규제기관의 통제방식에 의해 기업경영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회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보급되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회계정보에 대한 불신은 전통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기업이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과 사회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불신감 등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 기업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규모가 팽창되면서 과거의 직접적인 통제와 규제가 더 이상 효율적일 수 없음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가능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회계분식과 부실감사로 인해 회계정보의 이용자인 투자자들이 외부 감사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연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사회전반적으로 투명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IMF관리체제라는 급박한 경제위기속에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의 신뢰도가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황변화속에서 기업실무자로부터 정책입안자에 이르기까지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되어야 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질 것이며, 유용성있는 회계정보가 제공되어야 회계정보의 이용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이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계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성을 가지는 것이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회계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가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회계정보가 널리 활용되기위한 가장 근본적인 필수 조건이다.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가 산출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잘 정비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회계기준의 측면), 이러한 재무제표는 독립된 외부감사자의 객관성 있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외부감사의 측면). 또한 외부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감독업무가 필요하다(감리업무 측면). 따라서 회계기준, 외부감사 및 감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가지의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어 정착되어가고 있는 단계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회계정보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사회 전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그 활용도가 낮은 형편에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가지 제도적인 장치 가운데, 회계기준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유용성 있는 회계정보의 산출측면에서 분석하고, 유용한 회계정보의 산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에 대하여 국제화수준,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회계정보 산출의 정치적 영향, 세법 및 세무회계의 영향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국제비교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회계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수준을 유지할 때 높아진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에 회계정보의 질(quality)을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국가의 회계정보의 질을 비교·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의 질을 국가간에 비교·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① 정보의 가용량(information availability, 공시수준), ② 정보의 신뢰성(information reliability), ③ 정보의 비교가능성(information comparability) 세가지를 사용한다. 국제비교에 이용된 국가들은 소위 신흥공업국(emerging capital market을 가진 국가)들이며, 자료가 가용한 선진국들도 포함된다.

1. 정보의 가용량(공시수준)

정보의 가용량은 공개기업에 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의 적절성, 시의성, 그리고 편리하게 접근가능함을 의미한다. 정보의 가용량의 적절성은 회계정보의 공시와 관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 공시의 적정성을 사용하여 정보의 가용량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회계정보 공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가지 방법은 국가간에 공시수준(disclosure level)을 비교하고 공시와 관련된 회계기준을 비교하는 것이다. 먼저 최근 CIFAR(1995) 연구결과에 나타난 공시지수

II.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국제비교

(disclosure index)를 국가간에 비교한 순위를 이용하여 국가간 회계정보 공시수준을 비교한다. <표 II-1>에는 CIFAR(1995) 연구에 포함된 41개 국가의 공시지수와 순위가 나타나 있다.¹⁾

CIFAR의 공시지수는 41개국의 1000개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나타난 정보를 85개 공시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이 연차보고서에 가용한지를 조사하여 가용한 항목의 백분율을 계산한 것이다. 85개의 항목은 7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범주는 8개에서 20개의 공시항목을 포함하고 있다.²⁾

CIFAR에서는 각 정보항목에 대해서 기존의 실태조사연구에서와는 달리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시지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공시지수를 재무정보지수(financial information index)와 보조정보지수(supplementary information index)로 구분을 하였으며, 재무정보지수(30항목)에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변동표 정보를 포함하며, 보조정보지수(55항목)에는 일반정보, 회계정책, 주주에 관한 정보, 보조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 II-1>에 나타난 공시지수는 재무정보지수와 보조정보지수를 통합한 공시지수이다.

1) Bavishi(1995)가 CIFAR(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ial Analysis & Research, Inc.)에서 연구조사한 국제회계 및 감사추세에 공표하고 있는 공시지수(IFRI,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dex)를 말한다. CIFAR는 세계 41개 국가로부터 추출된 1000개 대기업을 연차보고서를 분석하여 기업별 국가별 공시수준지수를 계산하여 공시하고 있다.

2) 7가지의 항목은① A: 일반정보(8개 항목), ② B: 손익계산서(11개 항목), ③ C: 대차대조표(14개 항목), ④ D: 재무상태변동표(5개 항목), ⑤ E: 회계정책(20개 항목), ⑥ F: 주주에 관한 정보(17개 항목), ⑦ G: 보조정보(10개 항목)이다.

<표 II-1> 국가별 공시수준의 비교

순위	국 가 명	공시 지수	순위	국 가 명	공시 지수
1	영국	85	11	스페인 짐바웨	72
2	핀란드 스웨덴	83	12	일본 멕시코	71
3	아일랜드	81	13	나이지리아	70
4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80	14	한국 아르헨티나 벨기에	68
5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79	15	독일	67
6	칠레 프랑스	78	16	이탈리아 타일랜드	66
7	미국	76	17	필리핀	64
8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75	18	오스트리아	62
9	이스라엘 네델란드 스리랑카	74	19	그리스 인도	61
10	홍콩 파키스탄	73	20	콜롬비아 대만 터키	58
			21	브라질 포르투갈	56

(자료) CIFAR(1995)

<표 II-1>에서 보면 소위 회계선진국들이 신흥공업들에 비해 재무 자료의 공시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시지수가 80이상인 국

II.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국제비교

가는 영국, 호주를 포함하여 7개 국가이며, 대부분의 신흥공업국가들은 70점대 이하이다. 한국은 68점으로 아르헨티나, 벨기에와 함께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71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시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만은 가장 낮은 공시수준을 나타낸다(20위, 58점). 독일을 포함하여 일본, 대만 및 한국은 대륙법계통의 회계모형을 가진 나라들로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회계처리실무가 선호된다. 따라서 낮은 공시수준은 이들 국가의 법적환경과 문화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³⁾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회계기준이 요구하는 강제적인 공시내용을 다른 신흥공업국 8개와 비교해 보면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인 12개 항목 가운데 6개 항목이 공시되고 있으며, 12개 공시요구사항들 중 분기별 재무정보, 부문별회계정보, 물가수준 회계정보, 중단된 영업부문 회계정보, 그리고 이익예측정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 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멕시코(10개), 필리핀(9개), 남아프리카(10개)와 같은 국가에서는 더 많은 정보가 공시되고 있다.

재무정보에 손쉽게 접근가능한지 여부도 정보의 가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말레이지아나 남아프리카와 같은 신흥공업국가에서는 이미 증권감독기구에 연결된 온라인시스템에 의하여 거의 모든 재무정보가 실시간(real time)으로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온라인시스템에 의해 재무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대신 증권감독원 공시실을 통하여 감사보고서를 반기별 혹은 연차별로 공시하고 있다. 투자자문사나 연구기관의 자본시장을 기초로 한 재무 및 회계분야의 연구능력도 가용한 정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

3) Gray, S., and H.M.Vint, "The Impact of Culture on Accounting Disclosure: Some International Evidence," *Asia-Pacific Journal of Accounting*(1995) 3: pp. 33-43.

인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표 II-2> 공시요구 기준의 비교

공시요구사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대만	멕시코	필리핀	남아프리카
1. 분기별 재무보고서	○					○	○	○	○
2. 회계정책에 관한 주석	○	○	○	○	○	○	○	○	○
3. 연결재무제표		○			○		○	○	○
4. 현금흐름표				○	○	○	○	○	○
5. 주당순이익		○	○	○	○		○	○	○
6. 부문별 회계정보			○	○		○			○
7. 물가수정 회계정보	○	○					○		
8.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	○	○	○		○	○	
9. 비정상적인 특별항목	○	○	○	○	○	○		○	○
10. 중단된 영업부문			○				○	○	○
11.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사건	○	○	○				○		○
12. 이익예측정보		○	○				○		○

(자료) CIFAR(1995)

2. 정보의 신뢰성(reliability)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두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첫째는 재무제표가 건전한 회계기준에 바탕을 두고 작성되어야 한다는 회계기준 측면과, 둘째는 이러한 회계 요구사항에 맞게 재무제표가 작성되기 위해서 적절한 감시가 취해져야 한다는 외부감사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회계기준의 건전성이나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측정하지 않고 공표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회계기준과 외부감사체도의 일면을 국가간에 비교하기로 한다.

특정 국가의 회계기준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하나, 합리적인 기준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회계전문가들에 의해서 인지된 각국의 회계기준의 질(quality)을 살펴보자. <표 II-3>은 국제회계사연맹(IFC)이 조사한 ‘인지된 회계기준의 질(perceived quality)’에 대한 자료이다.

이 조사에서 특정국가의 회계기준의 질이 부적합(poor)하거나 보통(adequate)이라는 것은 특정영역의 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를 적절히 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불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정영역은 기업합병, 투자자산, 고정자산, 리스, 외화환산 및 금융상품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국제회계사연맹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회계기준이 신흥공업국중에서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등과 같이 양호(good)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한편, 대만은 보통(adequate)수준이며, 중국은 부적합(poor)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표 II-3> 인지된 국내회계기준의 質

양호(good)	적절함(adequate)		부족함(poor)
브라질 칠레 멕시코 인디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이상 8개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요르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대만 태국 베네스웰라 짐바웨 (이상 15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이상 2개국)

(자료) IFC(1994)에서 조사한 자료를 Saudagaran and Diga(1997, p. 49)에서 재인용함.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은 독자적으로 국내 회계기준을 개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의 선진국이나 국제회계기준으로부터 모방하거나 일종의 차입을 하게 된다. <표 II-4>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7개 국가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자국내 회계기준 개발을 위하여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국제회계기준을 국내 회계기준의 개발을 위하여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회계기준의 국제화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II-4>에서 IAS를 국내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파키스탄을 포함한 6개국이며, IAS를 국내기준으로 채택하나 IAS에 없는 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국가가 말레이시아를 포함하여 2개국이다. 국내기준의 개발을 위하여 IAS를 직접 사용하나 환경에 따라 이를 국내사정에 맞추어 수정하는 국가가 알바니아를 비롯한 14개 국가이며, 국내회계기준이 작성될 때 주로 IAS를 기초로 작성되며 국내회계기준은 주로 추가적인 설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을 비롯한 5개국이

II.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국제비교

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회계선진국들은 별도로 국내회계기준을 작성하며, 국내기준에는 IAS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전체의 약 79%(53개국)의 국가들이 IAS를 국내기준으로 채택하고 있거나 국내기준을 개발할 때, 참고하며 국내기준에서 IAS를 언급하고 있다.

<표 II-4> 국가별 국제회계기준의 활용형태

IAS의 활용형태	국가수	해당국가
1. IAS를 국내기준으로 사용, 설명만 첨가	8개국	Croatia, Cyprus, Kuwait, Latvia, Malta, Oman, Pakistan, Trinidad & Tobago
2. IAS를 국내기준으로 사용하나, IAS에 없는 기준은 별도로 개발.	2	Malaysia, Papua New Guinea
3. IAS를 국내기준으로 사용하나, 어떤 경우에는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수정함.	14	Albania, Bangladesh, Barbados, Colombia, Jamaica, Jordan, Kenya, Poland, Sudan, Swaziland, Thailand, Uruguay, Zambia, Zimbabwe
4. 국내기준이 별도로 개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IAS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국내기준들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더함.	5	China, Iran, Philippines, Slovenia, Tunisia
5. 4와 같으나, 몇가지의 기준들은 IAS보다 선택의 범위가 큼. 국내 기준에는 IAS에 대한 언급이 없음.	17	Brazil, Czech Republic, France, India, Ireland, Lithuania, Mauritius, Mexico, Namibia, Netherlands, Norway, Portugal, Singapore, Slovak Republic, South Africa, Switzerland, Turkey
6. 5와 같으나, 각 국내기준은 관련된 IAS와 비교한 내용이 있음.	7	Australia, Denmark, Hong Kong, Italy, New Zealand, Sweden, Yugoslavia
7. 국내기준이 별도로 개발됨	11	Austria, Belgium, Canada, Finland, Germany, Japan, Korea , Luxembourg, Spain, U. K., United States
8. 현재 국내기준이 없음	1	Romania
9. 국내기준이 없음. IAS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보통 실무에서 이용됨	2	Botswana, Lesotho

(자료) IASC, IASC Insight, October 1997.

적절한 회계기준이 존재하더라도 적용성(enforcement)이 문제가 된다. 즉, 아주 적절한 회계기준이 존재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회계기준의 강제적용도가 낮은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준을 강제적용시키는 행정적인 제도가 미약할 수도 있으며, 한 국가의 직업회계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회계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하는 감시체계가 불비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 국가의 회계감사 기능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회계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숫자의 그리고 잘 훈련된 회계사들이 있어야 하며, 직업회계사들이 감사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잘 정비된 감사기준이 필요하다. 자격을 갖춘 회계사의 수를 국가간에 비교해보면 다음 <표 II-5>와 같다.

<표 II-5> 회계감사인 數

신흥공업국	인구 10만명당 감사인의 수	선진국	인구 10만명당 감사인의 수
칠레	87	뉴질랜드	550
아르헨티나	71	호주	539
말레이시아	48	영국	352
남아프리카	35	캐나다	350
필리핀	31	싱가폴	273
대만	17	미국	168
멕시코	15	홍콩	110
한국	7	프랑스	45
태국	5	독일	26
인도네시아	2	일본	10

(자료) Saudagaran and Diga(1997) p. 51.(1996년 8월을 기준으로 IFAC의 Secretariat로부터 직접구한 자료를 재인용함)

II.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국제비교

<표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 10만명 당 감사인의 수가 신흥공업국에 비해 선진국이 훨씬 많다. 특히 자본시장이 잘 발달된 회계선진국인 영국, 홍콩, 미국 및 싱가포르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회계사를 보유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일본은 가장 낮은 10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일본기업의 자본조달이 대부분 금융기관(bank finance) 의존적이기 때문이며, 이는 독일과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7명으로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감사인 부족은 여러가지 이유들 가운데 회계기준의 강제적용 수준을 높이는 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증가하는 감사서비스 수요를 감안한다면 감사서비스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신흥공업국들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하여 회계사의 수요를 증가시켜 증가하는 회계감사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회계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기회를 확대하여 회계감사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WTO 체제하에서 회계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국가간의 회계서비스의 질의 차이도 좁혀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공인회계사의 숫적 증가를 위한 노력이 회계사선발 시험에 반영되고 있다.

<표 II-6>은 회계감사 보고서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을 국가별로 나타내어 주고 있다. 이 자료는 CIFAR(1995)가 조사한 것으로 회계감사의 결과를 얼마나 포괄적으로 감사보고서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우수, 보통, 미흡의 세단계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다.

<표 II-6> 회계감사보고서의 포괄성

	우수(above average)	보통(average)		미흡 (below average)
신 흥 공 업 국	그리스 한국 멕시코 필리핀 태국 베네즈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대만 터키 짐바웨	말레이시아 나이제리아 포르투갈
선진국	호주 캐나다 홍콩 이스라엘 이태리	네델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자료) Saudagaran and Diga(1997, p. 51), (CIFAR, 1995로부터 추출된 자료를 재인용함)

여기서 감사보고서의 포괄성이란 감사의 범위와 감사보고서에 공시된 정보의 양으로 정의된다. <표 II-6>에서 보면 한국은 감사보고서의 포괄성면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신흥공업국에 비해 선진국들 중 많은 국가들의 감사보고서 포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중에서도 독일, 아일랜드 그리고 룩셈부르크와 같은 유럽대륙 국가들은 감사보고서의 포괄성이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사보고서의 포괄성은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회계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세 번째 기준은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다. 재무보고에서 비교가능성은 최소한 두가지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이 어느 정도 비교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재무보고서에 나타난 회계정보의 문맥상의 중요성 즉, 상황변수가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황변수가 비교가능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측정하여 비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이 어느 정도 국가간에 비교가능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는 몇 개의 국가와 회계기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비교의 기준(benchmark)은 국제회계기준이며,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어느 정도 국가간에 회계기준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비교한 결과는 <표 II-7>에 나타나 있다.

<표 II-7>에 포함된 국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8개 국가이다. 국제회계기준과의 비교에서 가장 국가간에 조화가 이루어져 있지 못한 회계기준들은 퇴직급여(IAS 19), 국고보조금(IAS 20), 퇴직기금(IAS 26), 은행회계(IAS 30), 합작투자(IAS 31), 금융상품(IAS 32)등이다.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위에서 열거한 기준외에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기준들로 연구개발비, 장기공사계약, 부문별보고, 환율변동 등이 있다. 보다 구체적인 차이와 그 내용은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대만은 4개 기준을 제외하고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도 거의 대부분이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다.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8개국 중에서 국제회계기준과 가장 조화를 이루지 못한 국가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II.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국제비교

<표 II-7> 회계기준의 국제비교¹⁾

IAS # 2)	기준내용	한국	대만	홍콩	인도네 시아	필리 핀	태국	호주	뉴질 랜드
1	공시방침	○	○	○	○	○	○	○	○
2	채고자산	○	○	x	○	○	○	x	○
4	감가상각	○	○	○	○	○	○	○	○
5	공시사항	○	○	○	○	○	○	○	○
7	현금흐름	○	○	○	○	○	○	○	○
8	특별항목	○	○	○	△	○	○	○	○
9	연구개발비	x	○	○	○	○	○	○	○
10	우발사항	○	○	○	○	○	○	○	○
11	장기공사계약	x	○	○	○	○	○	x	○
12	법인세	○	○	○	△	○	x	○	○
13	유동자산	○	○	○	○	○	○	○	○
14	부문별 보고	x	○	○	○	x	○	○	○
16	유형자산	○	○	x	○	○	○	○	○
17	리스	○	○	○	○	△	x	○	○
18	수익인식	○	○	○	○	○	○	○	○
19	퇴직급부	x	○	x	○	○	△	x	x
20	국고보조금	○	x	x	△	△	x	x	○
21	환율변동	x	○	○	○	○	△	○	○
22	기업결합회계	○	○	x	○	x	○	○	○
23	이자비용	○	○	○	○	○	○	○	○
24	관계회사	○	○	x	○	○	○	○	○
25	투자자산	○	○	x	○	○	○	○	x
26	퇴직기금	△	○	x	△	x	△	○	○
27	연결회계	○	○	○	○	○	○	○	○
28	관련회사회계	○	○	○	○	○	○	x	○
30	은행회계	x	x	x	○	x	○	○	x
31	합작투자	△	x	○	△	○	△	○	x
32	금융상품	△	△	△	△	△	△	△	○

(자료) Ron Ma et. al.(1997)의 자료를 변형한 것임.

주1: ○ = 국내기준과 IAS는 대체적으로 일치하거나, 국내기준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회계실무는 IAS와 일치함

x = 국내기준이 IAS와 일치하지 않거나, 국내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계실무도 일치하지 않는 기준.

△ = 관련된 국내기준이 없거나 IAS가 최근에 발표되어 비교가 곤란

주2: IAS의 일련번호는 1995년 말 기준이므로 현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III.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1. 국내회계기준의 발달과정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1981년 외감법을 근거로 제정된 이래 여러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왔으며, 1990년에는 급속히 진전된 기업활동의 국제화와 자본시장자유화에 대응하여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0년 개정의 주요내용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현재가치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외화환산손익을 이연자산(부채)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기업활동의 국제화와 함께 선물환회계처리에 대한 규정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시측면에서는 주당순이익이 처음으로 공시요구되었다.

1995년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드려 그 동안 사용해 왔던 순운전자본개념의 재무상태변동표를 현금흐름표로 변경하였고, 1996년에는 보다 대폭적으로 회계기준을 개정하였다. 1996년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①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하여 시장성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시가평가방법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시가주의회계의 출발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회계정보 이용자의 정보이해가능성을 높이고자 재무제표의 양식을 간소화하고, 회계용어를 단순화하고 통일하였다. 그리고 주

4) 최병성, 1996, “기업회계기준의 개정배경과 방향,” 공인회계사, pp. 19-23.

석을 통한 재무정보의 공시범위를 확대하였다. 예컨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환경정보에 관한 공시를 주식사항으로 요구하였다.

③ 수익의 인식기준 측면에서는 회계기준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조기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예를 들면 용역매출의 수익인식기준을 완성기준에서 진행기준으로, 장기예약매출을 진행기준으로, 도급공사의 수익인식기준을 진행기준으로 개정한 것과 장기할부판매의 수익인식을 회수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한 것 등이다. 또한 전기손익수정사항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재분류하였다.

④ 법인세기간배분회계를 도입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충실하게 하였으며, 관계회사주식평가에서 지분법을 선택적으로 도입 가능하게 개정하였다.⁵⁾

1996년도에 이루어진 기업회계기준의 대폭적인 개정은 최근 IOSCO의 지지를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IASC의 국제적인 회계기준조화에 대한 압력과 이에 부응한 각국의 추세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아직도 국제회계기준과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회계기준의 국제화는 국내 회계기준이 반드시 국제회계기준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회계의 국제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차이를 분석해서 우리의 현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된다.

5) 이연법인세제도는 기준상으로 도입하였으나 실무수용성을 고려하여 적용을 2년간 유예하여 199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2.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국제회계기준은 1997년 10월 현재 IAS 1(회계정책의 공시)으로부터 최근 공표된 IAS 33(주당순이익)까지 26개가 유효한 기준으로 공표되어 있으며, 그 목록은 <부록>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그리고 E55(자산의 감소)를 비롯한 10개의 공개초안이 공표되어 기준으로서 검토되고 있다.⁶⁾

국제회계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비교기준(benchmark)으로 하여 ① 국내기준과 차이가 미미하거나 동일한 기준, ② 국내기준에는 규정이 있으나 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기준, ③ 국내기준에 규정이 없는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국내기준과 차이가 없는 (혹은 차이가 미미한)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과 국내회계기준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기준으로는 회계방침의 공시(IAS 1), 재고자산(IAS 2), 현금흐름표((IAS 7), 우발사항 및 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한 중요한 사건(IAS 10), 이연법인세(IAS 12), 유형자산과 감가상각(IAS 16), 수익인식(IAS 18), 차입비용(IAS 23), 관계회사 및 지분회계(IAS 28), 그리고 주당순이익(IAS 33) 등에 관한 기준이다. 특히 IAS 7(현금흐름표)는 1995년 IOSCO의 압력

6) IASC, IASC Insight, October 1997, p. 14.

에 의해 국제회계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국내회계기준을 개정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10개의 기준도 세부적인 회계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국내기준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IAS 2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액의 증가로 인한 평가감액의 환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기준은 저가평가된 경우 순실현가액의 증가로 인한 환입을 인정하지 않고, 판매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IAS 12는 이연법인세의 효과를 이연처리법 또는 부채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기준은 부채법으로 계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입비용의 자산화 과정에서 IAS 23에서는 자산화율은 적격자산의 취득목적하에 특별히 이루어진 차입금이 아니라, 당기 중 차입한 총차입금에 대한 차입비용액의 가중평균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기준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또한, IAS 18은 용역매출의 경우 진행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기준은 단기의 경우에는 인도기준으로, 장기의 경우에는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기준은 IAS 28과 같이 개별재무제표상에서 지분법의 적용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분법 적용시 투자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부적인 차이는 존재하나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준들이다.

나. 국내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국제회계기준

다음 <표 III-1>은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이 국내기준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기준들의 차이를 요약한 것이다.

III.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표 III-1> IAS와 국내기준의 비교

IAS	국내기준	차 이 점
IAS 8	기준57, 58조 기준 58조, 예 규 47-3	<p>① IAS는 중단된 사업부문에 대한 공시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국내기준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p> <p>② IAS는 오류의 변경을 원칙적으로는 기초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수정하나, 국내기준은 오류변경의 효과를 당기순이익에 반영하고 비교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p> <p>③ IAS는 회계정책의 변경에서 소급법과 전진법 적용을, 금액의 합리적인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진법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기준은 전진법으로만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IAS 9	기준 70조	IAS는 연구비와 개발비로 구분하여, 연구비는 당기비용화하고 개발비는 제한적으로 자본화하여 상각기간을 발생연도부터 통상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상각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내기준은 연구비와 개발비의 구분없이 비경상적인 연구개발비는 자본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에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각기간을 더 연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IAS 11	기준42조, 건설업회계처리 기준 4조	IAS는 진행기준만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기준은 단기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하고,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IAS	국내 기준	차 이 점
IAS 17	<p>리스 회계 처리 기준 16조 1항</p> <p>리스 회계 처리 기준 24조 1, 2항</p>	<p>①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에서 IAS는 리스개시일 현재의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리스회사가 받을 보조금과 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 최저리스지급액의 현재가치중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나, 국내기준은 16조 1항에서 리스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기본리스료 총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자산부채로 공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② IAS는 판매후 리스거래에서 운용리스인 경우 정상적인 판매거래에서 발생한 처분손익을 즉시 인식하는 반면에, 국내기준은 신규자산의 처분손익을 이연처리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환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내기준은 판매후 리스를 신규자산과 중고자산으로 구분하고 중고자산의 경우에는 리스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융리스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③ 국내기준은 금융리스의 분류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금융리스가 운용리스로 분류되어 부외자산과 부외부채를 발생시킴.</p>
IAS 19	기준 30조	<p>IAS는 확정부담금제도와 확정급부제도의 선택가능한 두가지 제도를 운영하며, 퇴직보상제도에만 적용. 국내기준은 퇴직금제도(확정급부제도)를 원칙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보충적으로 운영함. 기타 종업원복리후생비는 당기비용처리 한다. 그리고 기업연금제도는 도입예정이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없는 상태임.</p>
IAS 21	기준 74조	<p>IAS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국내기준은 장기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손익을 이연자산과 이연부채로 계상하여 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III.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IAS	국내 기준	차 이 점
IAS 22	<p>합 병 준 칙 5조</p> <p>합 병 준 칙 6조</p>	<p>① IAS는 자산,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유가증권, 재고자산은 현재의 시장가치로 평가하나 국내기준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음.</p> <p>② IAS는 지분풀링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기준은 매수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분풀링법이 이용되고 있음.</p> <p>③ IAS는 매수원가가 교환거래일 현재 식별가능 매수자산, 부채의 공정가치 가운데 매수회사의 지분보다 적을 경우에는 취득한 비화폐성자산에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금액이 소멸될 때까지 비례적으로 감소시키고, 그 결과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경우 부의 영업권으로서 이연이익으로 처리하여 5년 내의 기간에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기준은 비화폐성자산을 감액시키지 않고 단지 매수차액을 합병이익으로 자본조정(주주지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IAS 25	기 준 66조	IAS는 장기투자자산의 경우 단기투자자산으로의 대체를 허용하나, 국내기준은 채권을 제외하고는 장기투자자산에서 단기투자자산으로의 대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IAS 27	연 결 제 표 기 준 4조	<p>① 국내기준은 연결범위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반면(지분을 50% 이상 혹은 지분을 30%이상인면서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IAS는 더 포괄적으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즉, IAS는 연결대상 제외 사항의 요건을 2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일시적 지배인 경우, 둘째는 지배회사로의 자금송금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장기간의 엄격한 통제하에 종속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에 국내기준은 외감법 시행령 제 1조의 3, 제 2 항에 의한 연결제외종속회사로서 9가지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p> <p>② 따라서 국내의 경우 내부지분율이나 상호지급보증 혹은 금전 대차관계에 의한 실질적인 지배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p>
IAS 32	기 준 66조, 및 78조	국내기준에는 전환권조정계정 등과 파생금융상품인 선물거래 등의 회계처리규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IAS는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것과 표시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분류, 인식, 공시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 요약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국제회계기준에는 개념적 체계 (conceptual framework)가 명시적으로 존재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1989년 7월에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에 관한 기초(개념적체계)”를 공표하였는데 이는 비교가능성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추진되었다.⁷⁾ 개념적 체계 프로젝트는 원래 1986년 11월 IASC이사회에서 검토테마로 채택되었고, 그 후 1988년 5월에는 “재무제표의 작성표시에 관한 기초(안)”으로 공표되었다. 이 안은 그 후 1989년 4월에 승인되고 동년 7월에 공표되어 운용되게 되었다.

개념적체계의 형식은 미국의 FASB개념적 체계와 유사하며, 그 내용은 ① 재무제표의 목적과 전제, ② 재무제표의 질적특성, ③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정의, ④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과 측정, ⑤ 자본유지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의 작성과 현행 기준의 개정,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대체적인 회계처리의 수를 줄이기 위한 기초를 제공, 국내기준을 작성하고자 하는 각국의 회계기준 설정주체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⁸⁾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인 개념적 체계가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정의,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기준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내부의 일관성이 결여되기 쉽고, 기준의 개정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7) 비교가능성 프로젝트(ED 32)는 국제회계기준의 질적향상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의 폭을 줄이고자 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이다. 과거에 다양하게 허용되었던 대체적 회계처리방법들을 줄이고 표준적(우선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선정하여 기존의 기준들을 개정하고 노력한 결과를 공개초안으로 발표한 것이다.

8) 개념적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장지인·이창우·김종대(1994)를 참조.

다. 국제회계기준에 상응하는 국내기준이 없는 기준

일부의 국제회계기준 중에는 상응하는 국내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기준들이 있다. 예를 들면, 부문별 회계정보의 보고, 물가변동의 효과를 반영하는 정보, 초인플레이션 경제하의 재무보고, 그리고 합작투자자의 지분에 관한 회계 등이다. 그 밖에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공시, 퇴직급여제도의 회계 및 보고에 대해서는 국내기준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절대적으로 미비하여 보완되어야 할 기준들이다. 상대되는 국내기준이 없거나 불비한 국제회계기준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① IAS 14: 부문별 회계정보의 보고
- ② IAS 15: 물가변동의 효과를 반영하는 정보
- ③ IAS 26: 퇴직급여제도의 회계 및 보고
- ④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하의 재무보고
- ⑤ IAS 30: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공시
- ⑥ IAS 31: 합작투자 지분에 관한 회계

이들 기준중에서 부문별 회계정보의 보고에 관한 기준과 합작투자 지분에 관한 기준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기준들이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회계처리 기준은 현재 은행감독원의 회계처리지침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

IV. 대내적 부조화와 회계정보 산출의 정치적 영향

1. 회계기준의 대내적 부조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특별법인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외감법은 주식회사로 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규제하여, 이해관계자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회계처리기준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근간이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회계관련규정이 산업별로 혹은 다른 법률체계로 존재하고 있어 일관성있는 회계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회계기준의 개정 및 제정에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회계처리기준은 은행감독원, 증권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증권감독원이 제정하여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등은 재정경제원이 매 결산기마다 결산 지침을 제정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회계처리기준이 관련감독기관이나 재정경제원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게 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현행 규정내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된 기준이 존재하고,

IV. 대내적 부조화와 회계정보 산출의 정치적 영향

지나치게 변경이 잦은 기준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회계실무가 세무회계 및 세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동일한 기업실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목적과 기능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기업회계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 집단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적적합(relevance)하고 신뢰성(reliability)있는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에,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데 있다. 또한 기능면에서 기업회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것인데 반하여, 세무회계는 과세소득을 적정히 계산하고 납세자의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그 목적과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적 입장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은 현금흐름을 통하여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지 않으나, 세법 및 세무회계는 기업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져다주므로 오히려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지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재무회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회계실무는 세법과 세무회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의 재무회계실무도 세무회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오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개정시마다 강조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이다. 기업이 재무제표작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회계방법의 선택이나 회계추정이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라는 목표하에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재무회계에서 선택이나 추정을 요하는 영역 즉, 감가상각비 회계나

대손충당금설정에서 경영자들은 기업회계기준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회계추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합리적인 추정의 노력없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재무제표에 보고하거나, 대손충당금의 설정에 있어서도 대부분 법인세법에서 정한 채권의 1% 상한선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회계방법의 선택이나 회계추정에 있어서 재무회계의 목적인 회계정보의 유용성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추정을 하지 않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회계정보상의 이익이나 재무상태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서는 재무회계정보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로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 회계기준 설정의 정치적 영향

회계기준의 설정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의 설정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집단의 이해조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속에서 동의(consensus)를 획득해 내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설정되어진 회계기준이라야 실무수용성이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기준의 설정과정이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고, 적정한 절차(due process)를 거친다고는 하나 아직 충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다. 따라서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의 로비나 정부의 압력에 의해 회계기준이 변경되거나 제정·개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준제정기관인 증권감독원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정부의 입장에서 감독과 통제를 목표로 회계제도를 개정하려고

IV. 대내적 부조화와 회계정보 산출의 정치적 영향

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도입하기로 결정이 된 결합재무제표도 초기에 재벌기업의 감독과 통제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입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다 재벌그룹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행정부 측에서는 일단 도입을 유보하였다가, 최근 다시 논의를 시작하여 2000년부터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MF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회계기준의 개정에서 원칙과 목표가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다른 예로는 1996년도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서 금전대차거래에 관한 회계처리규정에 관해 기업측과 금융기관측의 의견이 상반되었을 경우에 기업측 의견을 지지하는 정부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였던 적이 있는데, 같은 정부기관인 증권감독원으로서 상급기관의 압력을 견디어 내기가 무척 어려웠던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면 회계제도의 발전과 회계정보의 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회계정보의 생산이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6년 개정된 외화환산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이 최근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엄청난 규모의 외환차손 때문에 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하여 증감원에 회계기준개정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증감원은 외화환산회계처리기준을 1990년 당시의 기준으로 환원하게 되었다.⁹⁾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입각한 압력이 작용

9) 1997년 12월 15일자로 증권감독원은 장기외화자산과 부채의 환산손익을 현행 자본조정계정 처리방식에서 이연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 상환기간이내에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였다. 이것은 막대한 규모의 환차손이 자본조정계정에 계상되어 자본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회계기준의 회계처리방법(당기손익에 반영)과 달라 IMF와의 논란이 예상되었으나 IMF에서 국내사정을 감안하여 양해를 한

하면 원래 개정의 취지가 무시되고 회계기준은 정치적 산물이 되어 개정을 거듭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은행의 유가증권평가충당금 계상에 관한 은행감독원의 의사결정과정은 대표적인 정치적 영향이라 하겠다. 이러한 예들은 회계기준의 개정과정에서 목표나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관성도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른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다.

것으로 알려졌다.(매일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

V. 신뢰성제고를 위한 회계기준의 발전방향

WTO체제의 가동과 OECD가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에는 최악의 국면이라 할 수 있는 IMF 관리체제하에 놓이게 까지 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규제위주의 정부주도형 경제시스템을 민간주도형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자유시장의 경제원리에 기초하여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회계정보의 생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국제적인 신인도를 제고하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를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가 국내외적으로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본 장에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기업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개선방안을 네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회계기준의 국제화

가.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

급변하는 국제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의 국제화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국제적 조화의 전략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 것인가이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OSCO의 실질적인 후원에 힘입어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5년 7월 IASC와 IOSCO는 해외자본시장에서의 상장(cross-listing)이나 주식 발행에 국제회계기준을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수용하기로 두 기구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졌다. 이 협약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핵심기준(core standards)을 개발한다는 작업계획을 주어진 기간내에 완성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다.¹⁰⁾

IASC가 작업중인 핵심기준에 포함되는 기준은 ① 협약당시에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로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 주당순이익(EPS),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재무제표의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 ② 법인세(income taxes), 부문별회계(segment reporting) 등의 개정중이던 기준, ③ 영업권(goodwill), 자산의 가치감소(impairment), 투자자산(investments), 리스(leasing), 그리고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등과 같은 앞으로 개정되어야 할 기준, ④ 중간재무제표(interim reporting), 충당금 및 우발사항(provisions and contingencies) 그리고 중단된 영업부문(discontinued operations) 등 새로운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작업계획은 원래 1999년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1998년 3월까지 완성하기로 앞 당겨졌다.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국제회계기준을 강력히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다. 유럽연합이 결성되면서 유럽연합법의 조화의 일부로 회계지침서(EC Directives)를 개발하여 오다가, 1995년에 유럽회계기준위원회(European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결성을 한다는 의안을 취소하고, IASC-IOSCO작업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의 발전에 기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에 의한 국제회계기준의 인준은 국제적인 회계조화에 커다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금까지 지역경제협력체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회계조화의 움직임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¹¹⁾ 또한 유럽연합내의

10) IOSCO가 제시한 핵심기준의 목록과 1997년 10월 현재까지 IASC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부록에 요약되어 있음.

개별국가들에 의해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는 국제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국내용으로도 IAS를 수용할 입장을 표명하였고, 독일도 국내용으로 IAS를 수용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에서 가장 큰 은행인 독일은행(Deutsche Bank)은 1995년에 IAS를 수용하였고, 200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이 그들의 재무제표에 IAS를 사용하고 있다.¹²⁾

그 밖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의 회계기준설정기구들은 IASC와 협력하여 회계기준의 공동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IOSCO가 국제화되어가고 있는 자본시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안은 각국이 공통적인 재무제표작성 지침을 가지는 것이라는 결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전략으로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

나. 회계기준의 국제화 전략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제고는 불가피한 세계적 추세로 보여진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금까지 회계기준의 설정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수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전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IOSCO의 움직임으로 미루어볼 때 장기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은 모든 국가가 수용해야 할 큰 흐름으로 보여지며, 이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환경변화를 명확히

11) 지역경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장지인(1993)을 참조.

12) World Accounting Report, "Increased International Harmonization," May 1996, p. 2.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며, 우선은 갑작스러운 수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두 기준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조화를 요구받고 있는 부분, 예컨대 외화환산, 유가증권평가손,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설정,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과감히 수용하되, 필요할 경우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유예를 하여 주며, 동시에 IAS 적용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규정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IAS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내기준과 국제기준과의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은 후, 분야별로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심층적인 연구는 IAS의 각 기준별로 아주 구체적인 조문의 해석과 해설이 이해되고, 이를 국내기준과 비교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¹³⁾

비교분석의 결과에 따라 도저히 상호 수용(조화)하기 곤란한 부분은 조정을 통하여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필요한 차이나, 우리기준에 없는 필요한 국제회계기준은 과감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호 수용(조화)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서 우리의 손실(혹은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형태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외국기업에게는

13) 최근 이루어진 미국기준과 IAS의 비교는 좋은 예이다. FASB에서는 IAS의 각 기준과 미국의 회계기준을 5가지 형태로 나누어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기준은 각기 다른 연구자에 의하여 동일한 format에 따라 비교분석되었다. 보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

Bloomer, Carrie(ed.), The IASC-US Comparison Project, 1996, FASB.

V. 신뢰성제고를 위한 회계기준의 발전방향

IAS를 적용하되 국내기준과의 차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국내기업으로서 외국자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해당국가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순수 국내기업의 경우는 국내기준을 적용하되 기업이 자발적으로 IAS와의 중요한 차이를 조정하여 공시하도록 유도한다.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에 대한 이러한 기본입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설정기구나 정부차원에서 몇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의 내용과 국내기준과의 차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기업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와 별도로 국제사회에서 회계로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기준의 내용을 명확히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 기준이 국내에서 개정될 때마다 기준설정기구는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 각국의 기준설정기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국제회계기준 설정과정에 우리의 근린국가와 연대하여 적극적인 지역주의전략을 구사하여 미국/영국회계모형이 지배하는 국제회계기준에 한국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IASC의 board member로 재가입해야 할 것이다.¹⁴⁾ 특히 IASC와 IOSCO의 정책적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시켜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선진국 회계기준설정기구들의 연합인 G4 + 1(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회계기준설정기구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합하여 칭하는 것임)의 활발한 움직임을 주시하며, 우리나라의 기준설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4)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해오다 재정적인 문제로 상임이사국을 탈퇴하고, 대신 인도가 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2. 공시수준의 확대와 기준의 보완

가. 공시수준의 확대

다국적기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회계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한 요구는 다국적기업이 자원에 대한 중요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자신들이 보다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림으로서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유인때문이다. 그래서 경쟁은 품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의 노출과 교환을 유발시키게 된다.¹⁵⁾

국제적인 경쟁전략을 채택하는 회사들은 국제적인 자원에 의존하며 국제문화속에서 운영된다. 그들은 국외로부터 고객을 확보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소한 그들의 경쟁회사 만큼의 많은 양의 정보를 공시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 그들이 공시하고 있는 정보의 양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낮은 자본비용으로 외국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그들 기업의 이익과 자산의 품질에 관하여 최소한 그들의 경쟁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공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앞서 살펴본 CIFAR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공시수준이 매우 낮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문화요인과의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Gray(1988)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성향이 강하고, 따라서 보수주의적인 회계가치

15) Alchian, A., and H. Demsetz,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1972) 62, pp. 777-796.

V. 신뢰성제고를 위한 회계기준의 발전방향

(accounting values)를 갖는 국가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적인 회계가치를 가지는 국가들의 회계공시수준은 그렇지 않는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가설이 실증적으로 지지되고 있다.¹⁶⁾

회계정보의 공시정책은 경영자가 공시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이다. 즉, 경쟁적인 공시는 궁극적으로 자사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회계정보공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수준은 국제적인 수준에 비교할 때 저조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회계공시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공시영역과 공시회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공시영역의 확대 문제는 결합재무제표, 부문별 회계정보, 예측정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추가적인 회계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합재무제표의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구조 특유의 문제로서 현행 연결재무제표작성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계열사간에 상호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이 있어 실질적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지분을 10% 관련기업까지 포함)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¹⁷⁾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공시는 IMF에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두번째는 부문별 회계정보와 예측정보에 대한 공시와 같이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회계정보임에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공시요구되고 있지 않은 정보이다. 특히 다각화된 기업의 경우 부문별 회계정보(segmental reporting)의 공시는 기업가치평가에 유용한 정보라는 것이 실증적

16) Gray, S., and H.M.Vint, "The Impact of Culture on Accounting Disclosure: Some International Evidence," *Asia-Pacific Journal of Accounting*(1995) 12: pp. 33-43.

17) 우리나라 30대그룹의 채무보증금액은 1997년 4월 1일기준 자기자본대비 47.04%이며, 금액으로는 약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룹에 따라 최고 462%에 달하는 그룹도 있다..(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인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검증된 바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정보이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관해서는 일부국가들이 강제적으로, 그리고 일부국가에서는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항목이다. 예측공시에 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부문별회계정보의 공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보조에 맞추어 기업회계기준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세번째 영역으로는 현행 대차대조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서 지적되고 있는 영역으로서 환경정보, 인적자원회계 정보, 기술정보 등에 대한 자발적인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환경회계정보와 관련된 이슈는 환경관련 투자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업의 장래 부채를 어떻게 인식(재무제표 내부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와 기업의 환경활동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서 제5호(SFAS No.5)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장래에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채(공해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를 추정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에서는 환경지출의 자본화와 비용화에 관련하여 3가지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환경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4가지 규정을 발표하고 환경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에서도 환경부채의 인식과 측정 그리고 재무제표에의 공시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제연합(UN) 경제사회이사회 하부기관인 다국적기업위원회의 「국제회계 보고기준 전문가의 정부간 작업팀」에서는 회계정보공시의 글로벌화 문제의 하나로 환경정보에 대처할 것을 표명하고, 기업이 적절한 환경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 보고서와 경영자 보고서에 공시해야 할 환경정보의 내용을 12가지로 분류하여 권고하고 있다.

V. 신뢰성제고를 위한 회계기준의 발전방향

최근 환경정보 공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독일, 영국, 미국,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는 연차보고서에 회사의 환경정책, 환경관련 투자액, 보험내용, 환경감시활동 등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환경과 관련하여 공시된 정보에는 비교가능성이 적고, 정보내용도 대부분 자발적인 기준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최근 각국의 회계기준설정 단체들이 녹색정보에 대한 재무보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므로 환경공시에 관한 향후의 노력이 주목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96년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의 환경기준과 정책, 안전 및 사고에 관한 사항, 환경관련 투자액,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 부산물 및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충적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내용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공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

환경정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고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게 될 장래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다. 이러한 환경정보의 공시는 투자기대이익만이 아니고 투자대상기업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소위 Green Investor)요구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인적자원회계정보와 기술에 관한 정보의 공시는 측정의 문제 때문에 아직 공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가장 중요한 공시의 과제가 될 것이다.

공시회수의 증가 측면에서는 현행 반기재무제표의 공시에서 분기별 재무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증권감독원 공시실을 통하여 연차보고서를 공시하는 시스템을 실시간 베이스로 단말기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시회수의 증가는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서 회계정보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나. 회계기준의 보완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1996년 개정 이후에도 대폭적인 정비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의 기준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① 퇴직금관련 회계처리 기준은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설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만간 기업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도입을 준비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변화에 대응하여 IAS 9(퇴직보상비용)와 같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¹⁸⁾

② 기업환경의 국제화와 더불어 국제적인 합작기업(joint venture)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합작투자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이 없다. 합작투자의 경우 이익의 분배, 비용의 배분, 참여기업들의 지분 공시 등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현행기준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선물거래 등에 관한 회계처리만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 제36조, 기준예규 53-31). 파생금융상품은 상품의 종류가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화 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IAS 32호와 같이 파생금융상품의 인식방법과 대차대조표에 인식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시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④ 연결재무제표의 경우는 현행 기준을 보완하여, 연결대상의

18) 1997년 6월 23일 재정경제원에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새로이 도입되는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회계처리의 개선방향은 다음을 참조. 장지인과 정길채, “기업연금제도 도입과 회계처리 규정의 제정방향,” 경영학논집, 제24권 제1호, 1997, 중앙대학교 경영연구소.

V. 신뢰성제고를 위한 회계기준의 발전방향

범위를 실질적인 지배력기준으로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문제시되어 있는 재벌그룹의 계열사를 포함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국내기준은 금융업과 비금융업 등 상이한 업종에는 작성이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도 작성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기준도 이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있다.

⑤ 연구개발비에 관한 회계처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정요건을 갖춘 개발비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비용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경상적인 연구개발비의 경우 자본화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임의적인 회계처리를 통한 이익유연화의 가능성이 있다. 연구개발비의 자본화는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유인을 회계이익을 통하여 제공하기 위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회계처리방법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⑥ 금융리스의 분류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금융리스이면서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부외자산과 부외부채를 보유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같은 기준은 부외자산이나 부채를 활용하여 기업의 부채비율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 리스산업의 활성화 내지 리스이용자의 부채비율을 유리하게 해준다는 면은 있다. 그러나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에 객관적으로 표시하여 재무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시킨다는 기본 목적에는 상치된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엄격한 금융리스의 4분류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준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⑦ 합병회계처리기준에서 실질적으로 지분풀링법을 가미한 형태

로 매수법을 운영하여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으며, 합병에서 발생하는 부의 영업권을 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연결에서 발생하는 부의 영업권을 상각하는 것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개선이 요망된다.

⑧ 물가변동의 효과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의 자산재평가 동기가 신뢰성 있는 재무회계정보의 생산과는 거리가 있는 다른 목적에 있으므로, 오히려 기업간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산재평가에 대한 기준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회계처리 기준은 최근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있는 사안중의 하나이다. IMF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국내의 금융기관회계처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① 현재의 금융업에 대한 회계처리는 감독기관이 달라 기업회계처리기준과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부실채권, 유가증권투자손실, 대손충당금 설정 등에 대하여는 기업회계처리기준과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고 보다 객관성있는 정보를 예금자나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 유가증권평가손과 관련하여 99년 6월까지의 평가손을 부분 반영하도록(예, 30%, 50%) 한 것은 본격적인 시가평가를 도입한 국제기준과 상당한 괴리가 있어 시장성유가증권의 시가평가의 도입이 요망된다.

③ 현재는 대손충당금설정에 있어서 회수의문과 추정손실만 부실채권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는 공정여신의 경우 20%의 충당금만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기준에 비해 관대하게 분류하고 있는 부실여신 분류기준을 강화하여 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3. 대내적인 관련규정과의 조화와 체계화

가. 세법 및 세무회계와의 조화¹⁹⁾

세법 및 세무회계와 재무회계의 조화문제는 오랜동안 회계학계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양 회계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차이의 지속기간에 따라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영구적 차이는 주로 조세정책적 입법, 조세회피의 방지,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손금규제 등에 의하여 생긴다. 한편 일시적 차이는 손익의 귀속연도의 차이, 자산 부채의 평가방법의 차이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 정책에 따라서 영구적 차이의 폭은 커지기도 하고 좁아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의 해소 여부는 위의 정책목적에 따른 특혜나 규제규정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일시적 차이는 1996년 도입된 이연법인세 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차이의 영향을 어느 정도 해소하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연법인세 회계

19) 보다 구체적인 세법 및 세무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 및 조화에 대해서는 이성주(1994)와 신찬수(1993)를 참조.

기준은 현재 1998년 4월 1일까지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 기준이 실무에 적용이 되는 시점까지는 일시적 차이도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며, 앞으로 마련될 이연법인세에 관한 상세한 회계처리지침도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세정책적인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영구적 차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무회계와 세법의 조화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각종 회계처리기준의 일관성제고

우리나라는 감독기관이 다른 경우 상이한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금융업의 경우 회계기준의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감독기관이 상이한 관계로 기업회계기준과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외국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특수한 거래의 회계처리를 제외하고는 GAAP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업의 회계기준도 다른 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의 하나의 statement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회계기준의 경우 IAS 30은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 관한 회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감독기구가 상이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일관성유지는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회계기준은 기업이나 산업의 중요한 하부구조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재무회계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목적에 부합하는 회계기준을 유지하면서 특정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의 설정기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현재의 기준설정기관이

산업별 회계처리기준의 하나로 금융산업의 회계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회계기준 체계의 정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체계는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업종별회계처리기준이 있고, 그 하위기준으로 준칙이 있으며, 준칙보다 더 세부적인 예규가 존재한다. 이러한 회계기준의 체계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것으로서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비교하는데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기준의 개정시에도 관련된 준칙, 예규를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국가간에 회계기준을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다. 외국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회계기준을 자국의 기준과 비교하거나 이해하려고 할 경우 매우 복잡함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차제에 회계기준의 체계를 미국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체계와 동일하게 statement형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statement식의 회계기준은 매우 세부적으로 기술될 수 있기 때문에 준칙이나 예규가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statement 그 자체로 현행의 기준, 준칙 및 예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비교가 용이하고,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한 적용 및 개정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²⁰⁾

20) 회계기준의 현행체계는 우리나라의 법규체계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규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만의 경우 회계기준은 미국이나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statement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4. 개념구조의 설정과 기준설정 기구의 보완

회계기준의 설정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 하는 문제와 회계기준설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의 제고이다. 정치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재무회계의 개념구조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회계기준설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기준설정기구의 전문화와 독립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 개념구조의 설정

재무회계에서 개념구조 혹은 개념적 체계의 본래 목적은 기준설정 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기준설정기구가 회계기준 설정에 개념적 체계를 이용한 예가 많이 있다. 예컨대 FASB가 개념적 체계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개념적 체계를 수립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으며, 따라서 협의의 개념적 체계는 없었다. 개념적 체계를 광의로 해석할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짧은 회계역사의 결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짧은 역사속에서도 초기에는 일본식 회계제도를 이어 받았다가 나중에는 미국식 회계제도를 수용하여 거의 모든 회계방법을 미국의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V. 신뢰성제고를 위한 회계기준의 발전방향

최근 영미형 회계모형을 가진 국가에서는 모두 미국식의 개념적 체계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여오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도 미국의 개념구조와 유사한 개념적 체계를 설정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적 체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① 개념구조가 없으면 회계기준의 설정이 비일관적이고 비효율적이기 쉽다. 만약에 개념적 체계가 있으면 이에 준거하여 회계기준이 설정될 수 있으며, 각각의 회계문제에 대하여 매번 처음부터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이,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회계기준의 설정과정이 일관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제도는 각종법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법의 범위내에서 회계기준이 설정된다. 따라서 급변하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보이용자들의 수요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회계정보가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의 분석없이 이 법규에 의해 회계정보의 제공이 제약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미국의 예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개념적 체계가 회계실무의 개발에 있어서 규제지향적인 법률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개념적체계는 회계기준의 설정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에 의해 회계기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기준의 설정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누구의 발의에 의해 회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이 되느냐에 따라 회계기준이 영향을 받게되며, 정부나 관계기관의 압력에 의해 기준이 정해진 예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전에 많은 이해관계

자집단들에 의해 합의된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있는 개념적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회계기준의 설정과 구체적인 회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개인적인 편견과 정치적 압력을 줄일 수 있으며, 아울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사후 회계기준의 실무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④ 회계기준의 설정과 회계문제의 접근에 비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회계용어와 기본적인 회계문제에 관해 명확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회계기준작성자, 정보작성자, 정보이용자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 만약 개념적 체계에 의해 사전에 합의된 논리적으로 일관성있는 용어의 정의가 있으면 의사소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및 기준의 수용가능성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⑤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모든 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특정산업에 대한 회계기준은 그 산업의 감독기관에 의해 설정된다. 이러한 경우 기준간의 일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개념적 체계가 있으면 새로운 산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신속하게 그리고 기존의 다른 회계기준과 이론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개념적 체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명시적인 개념적 체계를 가진 국가들은 대부분 영미모형의 회계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의 개념적 체계는 상호 유사하며, 이를 기초로 설정된 회계기준의 체계와 그 형식 및 내용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의 회계제도가 가지는 특성

은 완전한 법규범력 보다는 추정적 증거력(prima facie evidence)적인 성격을 가지며, 회계기준의 개정 방법도 대륙법계통의 국가에서는 축조적 접근(case by case approach)인데 반해 개념적 접근(conceptual approach)을 따른다. 따라서 대륙법계통의 기준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계통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적 체계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상당한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개념적 체계를 정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의의중의 하나는, 개념적 체계를 국가간에 공통적으로 활용하게되면 자연스럽게 국가간에 회계기준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고 국가간의 회계기준조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계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는(특히 국제회계기준) 개념적 체계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나. 회계기준 설정기구의 보완

현재 우리나라 회계기준설정기구의 문제점은 기존 연구에 의하여 다양하게 지적되어 왔다.²¹⁾ 예를 들면 회계기준 설정기구의 연구기능 부족, 전문성의 결여, 적정한 절차의 부족 및 비효율성, 정치적 압력 등이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세계적으로 국제기업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여 회계기준도 국제화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회계기준설정기구는 전문성과 정치

21) 기준설정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대선 외(1994)와 송인만과 황인태(1997)을 참조.

적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간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회계연구원(가칭)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²²⁾. 회계연구원이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느 한 이해집단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로부터 독립되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22) 회계연구원의 설립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 연구보고서의 제 3부를 참조할 것.

VI. 맺음말

자유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하부구조인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생산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생산은 국제수준의 회계기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감사 및 감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IMF관리체제하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신인도의 회복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가 국내외적으로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기업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은 네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1. 회계기준의 국제화

첫째,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제고는 불가피한 세계적 추세로 보여진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되 갑작스러운 수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두 기준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조화를 요구받고 있는 부분(외화환산, 유가증권평가손,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설정,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과감히 수용하되, 필요할 경우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유예를 하여주며, 동시에 IAS 적용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규정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IAS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내기준과 국제기준과의 최대한

의 공약수를 찾은 후 분야별로 조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할 것이다.

둘째, 기업형태별로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외국기업에게는 IAS를 적용하되 국내기준과의 차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국내기업으로서 외국자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해당국가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순수 국내기업의 경우는 국내기준을 적용하되 기업이 자발적으로 IAS와의 중요한 차이를 조정하여 공시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에 대한 이러한 기본입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설정기구나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회계국제화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회계로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내기준의 내용을 명확히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국제회계기준 설정과정에 우리의 근린국가와 연대하여 국제회계기준에 한국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공시수준의 확대와 회계기준의 보완

회계정보의 공시정책은 경영자가 공시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이다. 즉, 경쟁적인 공시는 궁극적으로 자사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회계공시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공시영역과 공시회수의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공시영역의 확대 문제는 결합재무제표, 부문별 회계정보, 예측정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추가적인 회계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

이다. 공시회수의 증가 측면에서는 현행 반기재무제표의 공시에서 분기별 재무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증권감독원 공시실을 통하여 연차보고서를 공시하는 시스템을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기준으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시회수의 증가는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서 회계정보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회계기준의 보완은 퇴직금관련 회계처리 기준, 합작투자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과생금융상품과 관련된 현행기준, 연결재무제표, 연구개발비에 관한 회계처리, 금융리스의 분류조건, 합병회계처리기준, 자산재평가 등의 영역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대내적인 관련규정과의 조화와 체계화

첫째, 세법 및 세무회계와 재무회계의 조화문제는 오랜동안 회계학계의 논란이 되어왔다. 양 회계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차이의 지속기간에 따라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인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일시적 차이는 1996년 도입된 이연법인세 회계에 의하여 상당한 개선이 기대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세정책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영구적 차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무회계와 세법의 조화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감독기구가 상이한 경우 회계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특정산업의 회계처리기준은 감독기구가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프레임워크내에서 설정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재무회계기준 설정을 위한 개념적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기준의 설

정기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재무회계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회계기준을 모체로서 유지하면서 특정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회계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의 체계를 미국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체계와 동일하게 statement형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statement식의 회계기준은 매우 세부적으로 기술될 수 있기 때문에 준칙이나 예규가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statement 그 자체로 현행의 기준, 준칙 및 예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 비교가 용이하고,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한 적용 및 개정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4. 개념구조의 설정과 기준설정 기구의 보완

회계기준의 설정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하는 문제와 회계기준설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의 제고이다. 정치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재무회계의 개념구조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회계기준설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기준설정기구의 전문화와 독립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개념적 체계는 회계기준의 설정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에 의해 회계기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기준의 설정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누구의 발의에 의해 회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이 되느냐에 따라 회계기준이 영향을 받게되며, 정부나 관계기관의 압력에 의해 기준이 정해진 예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전에 많은 이해관계자집단들에 의해 합의된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있는 개념적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회계기준의 설정과 구체적인 회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개인적인 편견과 정치적 압력을 줄일 수 있으며, 아울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사후 회계기준의 실무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회계기준설정기구의 문제점은 연구기능 부족, 전문성의 결여, 적정한 절차의 부족 및 비효율성, 정치적 압력 등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회계기준설정기구는 전문성과 정치적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간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회계연구원(가칭)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회계연구원이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부록> 국제회계기준의 현황

IOSCO의 핵심기준 리스트		IASC 현재 진행상황		
	일 반 기 준	기존 IAS	IASC 개정 완료	개정 작업 진행 중
1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	IAS 1(1997)	✓	
2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IAS 8(1993)	✓	
3	Information disclosed in financial statements	IAS 1(1997)	✓	
손 익 계 산 서				
4	Revenue recognition	IAS18(1993)	✓	
5	Construction contracts	IAS11(1993)	✓	
6	Production and purchase costs	IAS 2(1993)	✓	
7	Depreciation	IAS 4(1994) and IAS 16 (1993)	✓	
8	Imairment	I A S 16(1993)		E55
9	Taxes	I A S 12(1996)	✓	
10	Extraordinary items	IAS 8(1993)	✓	
11	Government grants	I A S 20(1982)	✓	
12	Retirement benefits	I A S 19(1993)		E54
13	Other employee benefits	None		E54
14	Research and development	IAS 9(1993)		E60
15	Interest	I A S 23(1993)	✓	
16	Hedging	None		Issues Paper
대 차 대 조 표				
17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 A S 16(1993)	✓	E56
18	Leases	I A S 17(1982)		
19	Inventories	IAS 2(1993)	✓	
20	Deferred taxes	I A S 12(1996)	✓	

21	Foreign currency	I A S 21(1993)	✓	
22	Investments	I A S 25(1985)		Issues Paper
23	Financial instruments/off balance sheet items	I A S 32(1995)		Issues Paper
24	Joint ventures	I A S 31(1990)	✓	
25	Contingencies	I A S 10(1974)		E59
26	Events occurring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I A S 10(1974)	✓	
27	Current assets and current liabilities	IAS 1(1997)	✓	
28	Business combinations (including goodwill)	I A S 22(1993)		E61
29	Intangibles other than R&D and goodwill	None		E60
현 금 흐 름 표				
30	Cash flow statements	IAS 7(1992)	✓	
기타 기준				
31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 A S 27(1988)	✓	
32	Subsidiaries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I A S 21(1993)/ I A S 29(1989)	✓	
33	Associates and equity accounting	I A S 28(1988)	✓	
34	Segment reporting	I A S 14(1997)	✓	
35	Interim reporting	None		E57
36	Earnings per share	I A S 33(1997)	✓	
37	Related party disclosures	I A S 24(1984)	✓	
38	Discontinuing operations	IAS 8(1993)		E58
39	Fundamental errors	IAS 8(1993)	✓	
40	Changes in estimates	IAS 8(1993)	✓	

(자료) IASC, IASC Insight, October 1997, p.14.

참고문헌

- 김지홍, 1996, “회계정보의 역할과 기업의 경쟁력,” 한국회계학회 발표 논문집.
- 서정우, 1997, “한국회계제도의 세계화(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미 발표논문
- 송인만, 1997, “국제회계기준의 수용과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전략,” 국제회계기준 심포지엄 자료, 증권감독원, pp. 41-74.
- 송인만·황인태, 1997,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절차』, 한국회계학회 미발표 연구보고서
- 신찬수, 1993,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 해소를 위한 제언,” 『상장협(제29호)』, pp.124-155.
- 이대선·장지인·나인철·이창우, 1993,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설정 과정의 발전방향,” 『회계학연구(제18호)』, pp. 377-412.
- 이성주, 1994, “세법과의 조화를 위한 기업회계기준 정비방안,” 『상장협(제30호)』, pp. 89-103.
- 이재술, 1997, “국제·한국회계기준 차이분석 및 국제회계기준 수용을 위한 대안분석,” 국제회계기준 심포지엄 자료, 증권감독원, pp. 75-162.
- 장지인, 1993, “아시아 태평양지역 회계기준의 조화: 한국의 관점”, 중앙대학교 경영연구소 제3회 경영포럼 발표논문집
- 장지인, 1994,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와 한국의 대응”, 『경영학연구

(제23권 제2호)』, 179-196

장지인 · 정길채, 1997, “기업연금제도 도입과 회계처리 규정의 제정방향,” 『경영학논집(제24권 제1호)』, 중앙대학교 경영연구소.

장지인 · 이창우 · 김종대, 1994, “기업회계기준의 개념적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보고서(제2호)』, 한국회계학회.

최병성, 1996, “기업회계기준의 개정배경과 방향,” 『공인회계사』, pp. 19-23.

Alchian, A., and H. Demsetz, 1972,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777-795.

Bavishi, V., 1995, *International Accounting and Auditing Trends*, 2nd edition.

Princeton, NJ :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ial Analysis and Research*

Bloomer, Carrie(ed.), 1996, *The IASC-US Comparison Project*, FASB.

Gray, S., 1988, “Towards a Theory of Cultural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Systems Internationally,” *ABACUS*, Vol. 24, 1-15.

_____, and H.M. Vint, 1995, “The Impact of Culture on Accounting Disclosure: Some International Evidence,” *Asia-Pacific Journal of Accounting*, Vol. 3, 33-43.

IASC, IASC Insight, October 1997.

Ma, Ronald(ed.), 1997, *Financial reporting and Accounting in Asia-Pacific region*, Scientific Publishing Inc.

Saudagaran, S.M., and J.G.Diga, 1997, "Financial Reporting in Emerging capital Markets: Characteristics and Policy Issues," *Accounting Horizons*, Vol.11 No.2, pp. 41-64.

Verrechia, R.E.(1983), "Discretionary Disclosur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5, 179-194.

Zarzeski, M.T.(1996), "Spontaneous Harmonization Effects of Culture and Market Forces on Accounting Disclosure Practices," *Accounting Horizons*, Vol. 10, 18-37.

World Accounting Report, "Increased International Harmonization," May 1996.

제 2부

한국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

1998. 3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회계감사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함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회계감사제도중에서 규제감독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를 보면 여러 가지 규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보수의 상한제, 감사인 감사업무 수임한도제, 감사인 지정제도, 감리제도등이 대표적인 규제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모든 규제감독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우선 제 II 장에서는 회계정보의 유용성 및 회계감사품질에 대한 일반의 견해를 기존의 연구결과나 간단한 씨베이 자료등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제 III 장에서는 국내회계감사시장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현행 회계감사 관련 규제제도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분석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적인 틀을 이용하여 제 V 장부터 제 VIII 장까지에 걸쳐 현재의 주요 규제 및 감독 제도를 검토하였다. 먼저 제 V장에서는 보수제도를, 제 VI 장에서는 감사인 감사업무수임한도제도를, 제 VII 장에서는 감사인 해임이나 감사인 지정 등 감사인 선임관련 제도를, 그리고 제 VIII 장에서는 감리제도를 검토해 보았다. 제 IX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한국의 회계정보이용자들은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에 대해 상당히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재의 감사보수 상한제도는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을뿐더러 적절한 수준의 감사보수 정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보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지정감사와 비지정감사의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감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간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증권당국에서는 감사인 유형별 시간당 감사보수액을 결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실제감사보수 총액은 이 시간당 감사보수액과 실제감사소요시간을 곱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시간비례제외에도 만약 지정감사인과 피감사인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물론 총액기준에 의해 감사보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만약 소요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증권당국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이다.

- 감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지정감사인의 경우 이용되는 시간비례제를 이용토록 권장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재의 감사보수 계산산식을 다소 개선하여 사용하되, 최종감사보수는 개선된 감사보수 계산산식을 이용하여 나온 기준금액의 $\pm 25\%$ 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시간비례제를 이용하든 총액보수제를 이용하든) 결정되도록 권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권장사항이므로 이 범위를 넘어서는 감사보수계약을 자유로이 체결할 수는 있지만, 이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경우 계

I. 서론

약 당사자들인 감사인과 피감사인에 대해서 감리감독을 강화토록 한다.

- (3) 현재의 130% 수입한도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입한도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일 것 같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감사인들로 하여금 규제의 틀속에서 안주케 만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어차피 현재 수입한도 계산에 사용되는 산식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수입한도를 정하는 것 보다는 간접규제방식, 즉 과다수입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 (4) 감사인 지정은 단기적으로는 현상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처벌적인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감사인 지정후 사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5)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조치로서 향후 감리의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권감독원에 의한 감사보고서 감리의 강화를 위한 예산증액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상장기업의 감사보고서 감리시 서면감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사례가 적지 않다면, 감사보고서 감리시 서면감리외에 서면감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 예를 들어 자료요청 등 -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새로운 감리기법의 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감리시 관련회사등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도 실지조사의 비중을 대폭 늘릴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감리 강화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중대한 분식회계

나 부실감사에 대한 제보 내지 정보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맡고 있는바, 증권감독원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의 감리결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Kosdaq 시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감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증권감독원 감리국에서는 경영자에 의한 부정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리시 적극적으로 부정적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부정적발을 위해 외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든지, 감사국이나 국세청, 그리고 여타 금융기관등과 효율적인 공조체제를 확립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식 상호감리제도(peer review)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리결과 분식회계등이 적발될 경우 감사인 및 피감사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내부감사를 포함하여 관련 경영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벌의 실효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감독당국의 인식이 새로워져야 할 것이고, 기타 감사인 평가시 감리결과에 대한 배점을 높인다든지, 적발된 분식회계처리사실을 주총에서 보고토록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II. 회계정보의 유용성 및 회계감사품질에 대한 일반의 인식

회계이익정보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이용도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한봉희(1997)는 회계이익정보의 유용성을 회계이익과 동시적인 주가변동과의 상관관계로 측정한후, 과거 15년 동안 이러한 상관관계의 변화 추이를 세가지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첫째, 회귀식에서 비기대회계이익과 회계이익이 초과주가수익률을 설명하는 정도 (Adj. R^2)가 높아졌는지를 검증하였다. 둘째, Ball and Brown(1968)식의 방법론으로 사전 비기대회계이익 정보에 의하여 투자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초과주가수익률이 증가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과주가수익률을 비기대회계이익에 회귀시켜 얻은 이익반응계수가 커지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회계이익의 주가수익률 설명력(Adj. R^2), 회계이익을 이용한 투자주가수익률, 그리고 이익반응계수 모두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87년을 기점으로 분명한 하락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회계이익정보의 유용성이 과거 15년 동안 저하되었으며 이러한 저하가 87년에 급격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 자본시장에서 회계이익정보의 유용성이 과거 40년간 저하되지 않았다는 Francis and Schipper(1996)의 보고와 대조된다. 본 논문에서 한봉희는 회계이익정보의 유용성 저하는, 정확히 인과관계는 밝히지 못하지만, 비적정의견의 감소가 내포하고 있는 부실회계가능성의 고양, 이와 더불어 하이텍 방향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역사적원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의 부적절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추론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회계정보이용자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감사정보 및 회계정보 전반에 관한 신뢰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증권사는 27개 상장증권사들 중 일은증권을 제외한 26개사였으며, 은행은 25개 상장은행 중 한미은행을 제외한 24개 은행이었다. 전화인터뷰 대상자들은 증권사의 경우 조사부장 또는 조사부차장이었고, 은행은 주로 여신부나 기업분석실 차장 또는 과장이 주대상자이었다. 조사기간은 1997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이었다. 질의항목의 내용과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1> 회계정보 신뢰도 및 감사인의 평판에 관한 조사결과

항목	은행		증권사	
	평균	편차	평균	편차
1	3.33	1.32	3.5	1.15
2	2.12	1.27	1.15	0.51
3	2.19	1.33	1.81	1.10
4	2.58	1.00	3.58	1.25
5	1.58	0.71	1.65	0.69

(항목별 질의내용)

- 1항 : 귀하는 기업 분석시 감사인의 의견을 고려하십니까?
- 2항 : 만일 귀하가 분석중인 기업들 중 한 회사는 우리 나라의 최우수, 최대 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다른 회사는 안건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았다면 두 재무제표간에 신뢰도에 차이를 두겠습니까?
- 3항 : 만일 귀하가 분석중인 기업들 중 한 기업은 삼일 회계법인에서 다른 기업은 최근에 신설된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았다면 두 재무제표간에 신뢰도에 차이를 두겠습니까?
- 4항 : 만일 귀하가 분석중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감사의견이 한정 의견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감사의견으로 인하여 주가에 반응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II. 회계정보의 유용성 및 회계감사품질에 대한 일반의 인식

5항 :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회계정보, 특히 재무제표의 신뢰도는 우리 나라 증권시장의 규모에 비하여 어떻다고 보십니까?

(항목별 응답범위)

모든 질문 항은 1부터 5의 범위 안에서 답하도록 하였으며,

1은 '거의 안 한다.'

2는 '약간.'

3은 '보통수준.'

4는 '많이.'

5는 '아주 많이 한다'로 범위를 주었다.

위의 응답결과는 몇가지 흥미로운 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투자자그룹과 채권자그룹 모두가 우리나라 회계정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항 5(우리 나라 회계정보, 특히 재무제표의 신뢰도)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은행은 1.58, 증권사는 1.65로 나타났고, 과반수 가까운 응답자가 두 그룹 모두 가장 낮은 '1'로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회계정보의 신뢰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 주었다.

둘째, 두그룹 모두 기업분석시 감사인의 의견을 많이는 아니라도 보통수준 이상으로 참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 : 은행 3.33, 증권사 3.5). 한편 이와 유사한 조사가 주인기(1992)에 의해서도 행해진 바가 있다. 주인기(1992)는 감사보고서의 외부투자자들에 대한 유용성이 3.804로 1부터 7까지의 분포시 중간정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그러나 두 그룹 모두 어느 감사인이 감사를 하였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를 두지 않거나, 또는 두어도 약간정도 차이를 두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의 명성효과가 비교적 우리나라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유용성이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다.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부실한 기업회계장부, 회계감사인의 부실회계감사, 증권감독원의 감독부족, 기업과 회계감사인에 대한 소송의 어려움, 회계기준의 미흡 및 운용상의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의사결정에 있어서 회계정보보다 기타 정보에 대한 높은 의존도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단 작금의 회계정보에 대한 일반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회계감사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만을 지적하고 회계감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기타 회계정보의 낮은 신뢰도 및 유용성에 대한 보다 깊은 원인 분석은 향후의 연구를 통해 답하고자 한다.

III. 국내 회계감사시장 현황

1997년도 9월말 현재 총개업회계사수는 3,305명으로 96년 3월말의 3,276명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7년 4월 1일을 기하여 종전의 합동회계사무소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회계법인수가 11개에서 34개로, 감사반수가 211개에서 248개로 증가하였다.

<표 III-1> 연도별 회원현황
(각년도 3.31현재, 단 97년은 9월말 현재)

구분 \ 연 도		'91		'92		'93		'94		'95		'96		'97. 9. 30	
		갯수	CPA 수	갯수	CPA 수	갯수	CPA 수	갯수	CPA 수	갯수	CPA 수	갯수	CPA 수	갯수	CPA 수
개업	회계법인	12	1,419	11	1,367	10	1,391	10	1,446	11	1,470	11	1,569	34	2,066
	합동회계사무소	19	304	20	332	22	355	21	346	23	373	25	408		
	감사반	44	182	79	320	110	449	148	580	184	734	211	858	248	1,024
	개 인		289		329		336		410		434		441		215
	총개업	75	2,194	110	2,348	142	2,531	179	2,782	218	3,011	247	3,276	247	3,305
휴 업			305		303		295		290		300		313		780
폐 업			17		17		17		7		8		10		
총등록회원수			2,516		2,668		2,843		3,079		3,319		3,599		4,085
전업자 1인당 회사수			2.73		3.16		3.39		2.47		2.39		2.49		2.54

(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이러한 공인회계사수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으며 일본에 비해서도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이유는 미국의 경우 공인회계사 시험이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고 공인회계사들이 감사업만이 아니라 기타 산업체에서도 많이 수용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III-2> 한·미·일 3국의 공인회계사 현황

	한국	미국	일본
등록공인회계사 수	3,599명	318,829명	12,559명
공인회계사 1인당 인구수	12,462명	825명	10,023명

(주1) 한국은 96년 3월 31일 현재, 미국과 일본은 95년 12월 31일 현재 (자료) 권수영·최창규 (1998.1)

(주2) 보다 상세한 자료를 위하여는 장지인·김정국(1998.3. p24)을 참조

한편 감사수수료를 통한 외부감사시장규모를 보면 96년도 3월말 현재 약 1,417억원에 달하고 있다.

<표 III-3> 년도별 외부감사 시장규모(단위: 억원)

93	94	95	96
875	998	1,229	1,417

공인회계사들은 회계감사업무만이 아니라 세무, 경영자문등 기타업무에도 종사하고 있다. 매출액 구성비를 외국과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 III-4>와 <표 III-5>와 같다.

III. 국내 회계감사시장 현황

<표 III-4>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매출액 구성비(1992.3-1993.2)

법인	회계감사		세무		기타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A	10,707	77.0	2,883	20.7	313	2.3	13,902
B	12,363	58.5	1,191	5.6	7,570	35.8	21,124
C	4,673	59.3	999	12.7	2,208	28.0	7,880
D	7,357	76.6	680	7.1	1,570	16.3	9,607
E	9,444	82.9	1,399	12.3	550	4.8	11,393
F	6,382	65.4	2,378	24.4	991	10.2	9,751
G	7,035	83.6	818	9.7	564	6.7	8,417
H	5,509	87.5	479	7.6	306	4.9	6,294
I	8,181	75.6	1,157	10.7	1,479	13.7	10,817
J	7,270	73.5	1,519	15.3	1,107	11.2	9,896
계	78,921	72.3	13,503	12.4	16,657	15.3	109,081

(자료원 : 증권감독원 회계감리국)

<표 III-5> 미국의 6대회계법인의 매출액 구성비('92)

	총수입 (\$ million)	감사서비스	세무서비스	경영자문서비스	국내합작 회계법인
A A & C o.	2,680	35%	20%	45%	안진
E&Y	2,281	51	23	26	영화
DTT	1,955	54	23	23	안건세화
KPMG	1,800	53	27	20	산동
C&L	1,567	58	18	24	삼일
PW	1,370	45	27	28	세동
평균	1,664.7	49.3	23	27.7	

*Public Accounting Report(미국 93년 8월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회계법인들은 총수입중에서 회계감사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는데, 향후 경영자문등을 통해 수입다변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어느 산업이나 산업집중도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산업별 집중도는 한 산업이 소수의 감사인에 의하여 점유된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그 산업의 감사활동이 소수의 감사인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또는 많은 감사인들에게 퍼져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정문종·이재맹(1996)은 간편한 집중도 측정치로서 점유율 상위 3등까지의 점유율을 합한 상위 3개 법인 집중도(CR-3)를 이용하여 집중도를 측정하였다. <표 III-6>를 보면 거의 모든 산업에 있어서 연구대상 기간중 상위 3개 법인 집중도(CR-3)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문종·이재맹은 산업집중도(CR)를 측정한 방식과 비슷하게, 그러나 각 산업별도가 아니라 각 감사인에 대하여, 산업별비중 상위 3등까지의 비중을 합한 '상위 3개 산업 특화도(SR-3)'를 구하였다. <표 III-7>를 보면 감사인들의 산업특화도가 증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감사인들이 소수의 산업에 특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하겠다. 특히 CR과 SR의 변화추이를 함께 고려한다면 감사인의 전문성이 증가하는 것과 일관된 시장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할수 있다 (pp. 268-271). Walker and Johnson(1996, p.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높은 시장집중도 현상은 미국 및 기타 국가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들은 비미국 국가에서의 감사시장이 점차적으로 대형국제회계법인이나 그들과 연계되어 있는 회계법인들에 의해 지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III. 국내 회계감사시장 현황

<표 III-6> 산업별 상위 3개 회계법인의 집중도 (CR-3)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음식	58.3	57.6	57.0	50.0	58.6	68.7
섬유	53.1	51.7	47.0	48.4	50.3	58.7
목재	62.9	63.0	57.6	58.9	54.0	63.3
화학	46.9	44.9	47.2	56.8	68.6	62.2
비금속	74.5	75.6	77.0	7.5	77.9	77.9
조립금속	69.1	68.0	67.9	72.1	79.1	80.8
전자통신	79.2	79.0	77.7	79.8	82.0	82.5
자동차	78.1	79.6	81.9	85.6	84.9	81.3
건설업	67.4	69.3	68.2	77.2	77.6	79.2
도소매	65.1	61.2	60.0	64.5	67.5	71.5

(자료: 정문중 · 이재맹, 1996, P. 269)

<표 III-7> 감사인별 상위 3개 산업비중의 특화도(SR-3)

	삼일	삼덕	산동	세동	청운	신한	안건	세화	영화	안진
1988	71.9	72.8	76.0	58.8	61.2	65.1	75.4	80.5	64.6	81.4
1989	72.4	68.7	76.5	54.2	61.4	68.4	72.2	79.9	60.9	82.0
1990	71.0	66.4	78.4	53.1	61.6	63.5	67.7	79.6	60.1	82.0
1991	73.3	71.2	79.1	50.0	65.1	64.1	71.1	75.6	59.4	87.6
1992	71.5	71.8	82.3	53.5	69.1	55.2	74.4	79.3	65.7	84.8
1993	63.6	76.0	86.0	55.6	70.5	64.9	77.3	81.4	65.4	84.4

(자료: 정문중 · 이재맹, 1996, P. 270)

IV. 분석적 틀 - 회계감사 관련 규제감독제도의 검토를 위한 분석적인 시각의 정립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회계감사시장에서 최소의 감사비용으로 최대의 감사품질을 갖춘 회계감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회계감사와 관련된 현행 한국의 규제감독제도에는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회계감사제도는 수입한도제도, 감리제도, 감사인 평가제도, 보수제도등 다양한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구성요소 하나하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구성요소들을 개별적으로만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분석적인 시각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시각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보고자 한다.

회계감사의 목적은,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회계감사기준 제3조).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회계감사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를 행해야 한다. 이러할 때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에게 양질의 감사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비용에 제공할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두가지를 지적해 본다면 하나는 건전한 경쟁체제의 조성이며, 또 다른 하나는 양질의 감사서비스가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규제감독수준의 결정이다.

IV. 분석적 틀- 회계감사 관련 규제감독제도의 검토를 위한 분석적인 시각의 정립

가능한 낮은 감사보수에 양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는 우선 감사인간 경쟁체제를 조성해야 한다. 자본주의경제체제는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자유경쟁원리를 택함은 복잡다기한 시장에서 자유경쟁 체제가 결국 자원의 배분, 가격결정, 품질향상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감사서비스시장에 있어서도 타산업에 있어서와 같이 구성원인 감사인들간의 경쟁이 최대한으로 보장될수 있도록 감사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할수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감사인배정제가 있었다가 지금은 원칙적으로 자유수입제로 바뀐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인간의 경쟁을 조장함에 있어서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회계감사서비스업에 있어서의 경쟁조장은 다른 산업에 있어서와는 그 의미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감사인간의 경쟁이 조장되어도 그것이 반드시 감사품질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감사인이 제공하는 감사서비스의 품질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감사품질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른 재화나 용역과 달리 감사서비스의 경우에는 품질이 갖는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일단 감사의 품질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요구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그 이상의 감사품질의 한계유용성은 감사인에게나 피감사인에게나 모두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일정감사품질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에 의한 경쟁력향상을 추구하게 되기 쉬울 것이다.

그런데 가격경쟁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감사인이 피감사

인의 회사와 소속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나 선진화된 감사기법의 사용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낮추고 이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가격경쟁력향상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오히려 조장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감사절차의 생략 등 감사품질저하에 의해 생산비용을 낮추고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 이는 부정적이며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결국 감사서비스업은 타 산업에 있어서와 같이 건전한 경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경쟁조장이 가져오는 이익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감사품질의 하락이라는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품질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감사품질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감사품질이란 다른 상품이나 용역과는 달리 그 품질을 외형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서비스업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이사회가 요구하는 최소감사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인 감독**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감사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더욱 그러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감사서비스업을 보면 여러 가지의 사전적 규제장치와 사후적인 감독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사전적 규제장치의 예로서는 공인회계사의 높은 질적 수준의 유지를 위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일정한 경우 감사인이 증권당국에 의해 지정되는 감사인 지정제도, 감사보수상한제도, 수입한도제도, 감사인 선임 및 해임 관련제도 등이 있

IV. 분석적 틀- 회계감사 관련 규제감독제도의 검토를 위한 분석적인 시각의 정립

다. 사후적인 감독장치로는 증권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감리제도, 회계법인내의 심리실 운용, 기타 소송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사전적인 규제장치와 사후적인 감독장치는 조화를 이루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검토에 앞서 분석적 시각의 정립을 위해 몇가지 중요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인회계사는 원래 독립적으로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인회계사는 전문적인 회계지식과 독립성의 유지가 소요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독립성 유지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공인회계사들 자신에게 돌아간다. 공인회계사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독립성 유지를 위해 자체 검사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직업윤리의식의 발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도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공인회계사들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감사품질의 저하도 가능하므로, 경쟁자체를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규제제도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규제장치나 새로이 도입하려는 규제장치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과연 이러한 규제의 결과 발생하는 경쟁제한이라는 비용측면과 규제에 의한 감사품질 저하방지라는 효익측면의 상대비교가 필요하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한 규제제도의 효익측면과 비용측면을 상대비교한 결과 그 규제제도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규제장치가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전적 규제장치들간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의 독립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현재 여러 가지 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관련 제도가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상장법인들의 경우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인들간의 수입경쟁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 저하를 우려하여 감사인 수입한도제도가 있다. 또한 학연이나 지연에 의해 감사인이 선임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됨을 우려하여 감사인 지정제도가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사전적 규제장치들이 총체적으로 볼 때 모두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말해 과잉규제나 중복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특히 외국의 예를 참조해 볼 때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정보나 감사품질에 대한 일반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설명할 외국의 예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규제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러한 과잉규제 내지 중복규제의 문제가 나중에 개개의 사전규제장치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될 것이다.

세째, 감독과 규제간의 선택문제이다. 예를 들어 수입한도제도는 반드시 이러한 사전적인 규제를 두지 않더라도 사후적으로 과다수입감사인에 대한 감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감사인지정제도의 경우나 감사보수상한제의 경우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는 사전적인 규제에 드는 비용과 사후적인 감독에 드는 비용의 크기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사전적인 규제를 사후적인 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후적인 감독에 지나친 비용이 든다면 오히려 사전적인 규제가 결국에는 값싼 감독장치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규제완화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네째, 사후적인 감독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처벌 등)가 적절한 수

IV. 분석적 틀- 회계감사 관련 규제감독제도의 검토를 위한 분석적인 시각의 정립

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인 감독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빈약한 감독은 사후적 적발기능도, 사전적 예방기능도 제대로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감독은 여러 가지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는 자율규제감독제도의 도입, 그리고 감독결과 적발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제도의 정비등이 있다. 즉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감독이 어려우면 이를 자율규제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이관시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감독수준이 부족하다면 이 경우에는 처벌의 강화를 통해 감독의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회계감사서비스업의 경우 증권감독원이나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감리는 사실상 현재의 많은 문제점들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감독인원을 대폭적으로 충원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타 보완적인 감독장치 내지 기법의 개발도 필요하겠으나,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로 적발된 경영자나 감사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결국 감독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처벌강화는 현실적인 비용의 지출을 감독자로부터 피감독자로 상당부분 이전시키게 된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피처벌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과 사회적인 효익간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적인 결정시에는 이 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회계감사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기업의 경영자이건 감사인이건 피처벌자가 감수해야 하는 처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상외로 상당히 강화된 형태를 띠기 쉬울 것이다. 감독수단 및 수준의 적정성, 자율감리(내지 감독)체제 도입 및 강화, 처벌의 실효성 제고 문제 등이 나중에 현행 규제감독장치의 적정성 문제를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다섯째, 외국의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간의 격차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제도가 외국의 제도와 똑같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외국에는 없는 제도가 유독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특유의 그러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요한다. 현재 감사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감독제도에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가 존재하는 바, 그러한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감사환경에 비추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제도가 외국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본 장에서는 한국의 회계감사서비스와 관련된 규제감독제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지를 정리해 보았다. 이하 다음 장에서 규제감독장치들의 적정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볼 것이다.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언급될 것이므로 본 장에서는 다만 간단하게 현행 규제감독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첫째,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130% 수입한도제는 폐지하고, 대신에 과다수입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즉 수입에 관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감독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감사인 지정제도는 잠정적으로

IV. 분석적 틀- 회계감사 관련 규제감독제도의 검토를 위한 분석적인 시각의 정립

현상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점차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
토록 한다. 감사인은 원래 독립적인 감사를 행하도록 자격증을 부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분적이거나 감사인을 지정해 온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감사현실이 독립성있는 감사를 하기에는 어려
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감사인평
가제도와 결부되어 회계법인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실보다는 득이
보다 많은 제도라고 판단되며,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는 현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감사인
들이 독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필요
하다. 최근 들어 증권당국에서는 감사인 평가제도의 도입과 평가결과
의 공시를 통해 감사인 명성효과(reputation effect)를 쌓아 나갈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는데 이도 감사인의 독립성 향상을 위해 좋
은 방안이다. 또 감사인지정제도를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감사인
의 독립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사들, 즉 현재의 감사인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감리를 강화토록 함으
로써 감사인이 스스로 독립성유지에 대해 신경을 쓰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결국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인이 독립성
을 유지토록 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좋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감사인
의 독립성이 위협받을만한 환경(기업의 높은 부채비율, 상호지급보증을
포함한 과도한 내부거래등)을 개선해 나가면서 그 환경속에서 감사인
이 스스로 독립성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감사보수상한제를 폐지한다. 이는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

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된다. 감사보수 상한제하에서는 전체적인 감사보수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쉬우며, 감사인들로 하여금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여하지 않아도 좋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감사품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서 공인회계사들의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감사보수상한제를 폐지하되 대신 너무 적은 감사보수를 받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강화토록 한다.

넷째, 현재의 감리는 중요한 감독수단이기도 하지만, 보다 효율화되어야 하며,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여건상 소송제도를 이용한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권익보호가 쉽지 않으며, 경영투명성이 낮고,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하에서는 공적기관에 의한 감리제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시 된다. 따라서 당분간은 감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효율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때는 다른 규제감독장치가 발달하게 될수록 공적기관에 의한 규제감독의 필요성은 상존하겠으나 그 필요도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증권감독원에 의한 감리업무의 상당부분이 공인회계사회로 이관되어 자율감리체제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전적 규제와 사후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규제·감독비용의 절하 및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와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실제적으로 강도있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감사보수제도

1. 현행제도

현행감사보수체계는 다음의 <표 V-1>에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감사보수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위의 표를 이용하여 산정된 감사보수는 감사인이 피감사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낸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감사보수제가 적용되고 있다.

둘째, 자산총액에 따라서 감사보수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요율이 자산총액에 비하여 최고 0.642%에서 0.004%까지 체감적으로 감소한다. 이는 감사규모에 따라 감사위험이 체감적으로 증가함을 반영한 위험보상액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자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감사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수도 있다.

셋째, 기본보수를 정함에 있어서 같은 자산규모일지라도 상장법인, 등록법인 및 초도감사법인등에 대해서는 일정율을 가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현행 감사보수규정에 감사투입시간을 포괄하여 감사위험의 보상적 성격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만우, 1992, p. 140).

<표 V-1> 개별재무제표 회계감사보수산출방법

구분(보수규정근거조항)	산 출 방 법	보수액
①기본보수(제3조 제1항 제1호 “가” ¹⁸ 목)	아래의 (표3-1-2)참조 본사의 사업장수: 1개인 경우 ①의 10% 2개인 경우 ①의 15% 3개인 경우 ①의 20% 4개이상인 경우 ①의 25% 상장법인:(①+②)×19% 등록법인:(①+②)×14% (①+②+③)×10%	
②사업장수에 따른 가산보수 (제3조 제1항 제1호 “나” ¹⁸ 목)		
③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가산보수 (제3조 제1항 제1호 “다” ¹⁸ 목)		
④감사인변경시 가산보수 (제3조 제1항 제1호 “라” ¹⁸ 목)		
소 계		
< 추가조정보수 >		
⑤외국어직무수행 또는 외국어 보고서 작성 추가보수 (제3조 제3항)	(①+②+③+④)×50%	
⑥반기재무제표확인 및 의견표시보수 (제3조 제5항)	(①+②+③+④)×10%	
⑦감사를 받지 아니한 연결재무제표가 있는 법인의 가산보수(제3조 제6항)	(①+②+③+④)×10%	
소 계		
합 계		
◆ 실비변상비용		
①출장비 (제3조 제2항)		
②인쇄비 (제5조)		
합 계		
총 계		

(참고) 공인회계사일당 : 책임공인회계사 211,000원, 담당공인회계사 146,000원, 수습공인회계사 92,000원, 공인회계사 이외의 보조자 53,000원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 보수규정, 1997년 5월 2일 증관위 승인

<표 V-2> 개별재무제표 회계감사의 기본보수

(단위: 천원)

자산총액(A)	보수액(B)	보수율(B/A)
5억미만	3,210	0.642% 초과
5억	3,210	0.642%
10억	3,560	0.356%
30억	4,780	0.159%
50억	5,910	0.118%
80억	9,210	0.115%
120억	13,550	0.113%
300억	16,230	0.054%
500억	18,740	0.038%
1,000억	21,230	0.021%
3,000억	28,540	0.010%
5,000억	33,950	0.007%
1조	44,160	0.004%

(주1) 자산총액이 100억원인 경우 기본보수액 = (921만원+1,355만원)/2

(주2): 자산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0.044/10,000를 곱한 금액을 1조원에 대한 보수에 합산한다.

2. 문제점

우리나라의 감사보수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가. 외상매출금이나 재고자산 비중의 미반영:

외국의 경우를 보면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상매출금이나 재고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감사보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수있다.

<표 V-3> 각 국가의 감사수임료 선행 실증연구 결과

국가명	선행 실증연구	결 정 요 인				
		자산 규모	매출채권/재고자산	영업의 복잡성	계속감사 기간	감사인의 규모
미국	Simunic(1980)	○	○	○	×	○
영국	Taylor & Baker(1981)	○	—	○	—	—
	Iyer & Iyer(1993)	○	○	○	—	×
캐나다	Anderson & Zeghal(1994)	○	○	○	—	×
오스트레일리아	Francis(1984)	○	—	○	×	○
	Francis & Stokes(1986)	○	○	○	—	○
뉴질랜드	Firth(1985)	○	○	×	—	×
	Johnson et al.(1995)	○	○	○	×	○
인디아	Simon et al.(1986)	○	○	○	—	○
싱가포르	Low et al.(1990)	○	×	○	—	—
	Simon et al.(1992)	○	○	○	—	×
홍콩	Simon et al.(1992)	○	○	○	—	○
말레이시아	Simon et al.(1992)	○	○	○	—	×

주: ○는 유의수준 5%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함.

×는 유의수준 5%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음.

자산규모: 감사대상회사의 총자산 또는 \log_e (총자산)

매출채권/재고자산: 감사대상회사의 매출채권 또는 재고자산의 총자산에 차지하는 비율

영업의 복잡성: 감사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수, 해외매출액 또는 영업 업종의 수

계속감사기간: 현행 감사인에 의한 초도감사이후 현재까지의 감사연수

감사인의 규모는 예를 들어 Big-8(Big-6)대비 소규모 감사인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사보수체계는 재고자산이나 외상매출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사보수를 결정짓는 계산공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현재의 감사보수계산 방식은 기업의 위험도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재고자산이나 외상매출금 규모는 실지조사나 확인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하는 요인들이므로 보수산정시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감사보수 상한제도

위의 <표 V-1>과 <표 V-2>에 나타나 있는 공식에 따라 나온 감사보수는 공인회계사가 받을수 있는 상한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즉 그 이하로는 받을 수 있어도 그 이상으로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상한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감사보수의 최대한도를 적정수준에서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너무 높으면 의미가 없고 너무 낮으면 감사시간에 대한 제약 때문에 감사품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증권당국에서 정하는 감사보수란 아무래도 적정수준보다는 낮게 책정되기 쉽상이다. 이럴 경우 낮은 감사수수료 수준은 감사인들에게 낮은 감사품질을 정당화시키는 심적인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앞으로 부실감사에 대한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감리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면 자연히 적은 감사보수를 받고 적당히 감사를 수행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정해져 있는 감사보수의 최대한도제가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대한도를 대폭적으로 인상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정도 인상해야 적정수준인지도 명확치 않으므로 항상 분규가 따르기 쉽다. 또한 일정규모이상의 기업들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제도하에서 최대감사수수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감사대상회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기업들중에는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 최대보수한도만을 낮게 정해주고 감사인에게 감사토록 한다는 것은 감사인에게 상당한 부담 (risk)을 줄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감사품질에 대한 규제감독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으나 규제감독장치가 강화되면 될수록 -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한 나아가야할 방향이지만 - 최대보수를 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감사보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적정보수산정공식의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 외국에서 감사보수가 통상 어떻게 산정 청구되고 감사보수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 V-4>과 같다.

다. 피감사인의 내부통제체제의 정비도 미반영

현재의 보수산식은 피감사인의 내부통제체제의 정비도를 반영키 어렵다.

라. 보수계산시 총액제만의 사용

감사보수계약에는 시간비례제와 총액제 모두가 유용한 수단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간비례제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마. 지정감사와 비지정감사의 보수결정 방식이 동일

지정감사와 비지정감사는 감사환경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감사보수계산에는 단일공식이 사용되고 있다.

바. 낮은 감사수수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사수수료는 낮다는 인식이 많다(윤계섭, 1995). 감사수수료를 인상하여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표 V-4> 주요국의 감사보수결정 형태

국가	내용
영국	<p>① 보수는 감사 시작전에 부담할 보수를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 감사에 소비하는 시간 및 참여 감사요원의 수준에 따른 해당 요율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청구액의 조정은 감사인과 감사고객간에 합의할 사항이다. 감사과정중에 중간보수가 요구되고 감사종료시에 최종보수가 제시된다.</p> <p>② 보수 수준에 관한 정부나 법률적 지침은 없으며, 협회도 보수 수준을 정하거나 권고하지 않지만 회원이 관여된 보수 논쟁이 있는 경우에 보수에 관한 독립된 감사인 역할을 한다.</p>
호주	<p>① 감사수수료는 개인의 경력수준에 따른 요율과 사용하는 시간에 의해 청구된다.</p> <p>② 감사보수에 관련된 정부 또는 규제기관의 지침(guideline)은 없으며 전문가기준AUP 32 "감사독립성"에 의하면 "보수는 제공된 용역에 대해 적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p>
캐나다	<p>① 보수와 그 산정은 감사인과 고객의 협의사항이다. 따라서 감사보수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제는 없다.</p>
미국	<p>① 감사인과 고객과의 협의 사항임.</p> <p>② 감사보수 산정은 감사참여 staff과 감사예상 소요시간에 의해 산정</p> <p>③ 정부와 관련된 특정업무에 있어서 보수계약은 정부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p>
독일	<p>① 일당기준 또는 정액수수료 계약에 의해 결정</p> <p>② 감사보수는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치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감사보수는 독일 각 주의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2년마다 시장가격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진다)</p>
일본	<p>① JICPA는 감사에 대한 표준감사 수수료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규정으로서의 시행이 아니라 고객회사와 협상을 위한 참고 근거로서 이용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보수의 구성은 기본 보수와 일당으로 구성되어 있음)</p> <p>② 감사보수는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감사인과 피감사업체의 교섭을 통해 결정된다.</p> <p>(*) 기타 (부록: 일본의 표준보수규정)을 참조</p>
싱가포르	<p>① 감사 보수는 소요시간과 요구되는 전문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ICPAS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수행된 업무의 가치를 정당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p> <p>② 보수에 관한 규정은 없다.</p>
대만 홍콩	<p>① 감사보수를 결정하는데 이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니며 회계법인은 시간투입을 기준으로 보수를 고객과 협의한다</p>
필리핀	<p>① 소비시간에 의거 산정된 보수로서 피감사인이 동의한 수준</p>

(자료 : 한국 공인회계사회, 1995)

3. 개선방안

감사보수체제의 개선방안을 만들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개선방향은 감사보수체제의 결정시 감사인이 지정되는 지정감사와 감사인이 지정되지 않는 비지정감사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지정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인과 피감사인이 사전에 합의하지 않는 한 시간비례제를 이용하여 감사보수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비지정감사의 경우에는 자유계약제나 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감사인과 피감사인간에 감사보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하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가. 지정감사의 경우

먼저 감사인유형별로 시간당 감사보수상한액을 결정하고, 이 시간당 보수기준액과 실제감사에 소요된 시간을 이용하여 총 감사보수를 계산토록 한다. 다만 지정감사인과 피감사인은 합의에 따라 시간비례제가 아니라 총액기준으로 감사보수를 정할 수도 있다. 만약에 감사인과 피감사인이 서로를 잘 알고, 또 굳이 감사에 소요되는 시간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총액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감사소요시간 및 총 감사보수산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증권당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한다.

나. 비지정감사의 경우 - 세가지 대안의 고려

(제 1안) : 지정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유계약제로 함.

공인회계사회에서는 감사인유형별 감사시간당 감사보수를 사전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이용을 권장한다. 한편 과다(또는 과소)하게 감사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감사인과 피감사인에 대해서는 감리감독을 강화토록 한다.

(제 2안) : 자유계약제로 하되 일정한 범위내에서 감사보수가 결정되도록 유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현재의 보수계산방식을 개선한 보수산정공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피감사인별 표준감사보수액이 산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다. 개선된 표준감사보수액 산정공식은 피감사인의 재고자산이나 외상(해외)매출금 규모와 같은 감사위험도, 산업별 요인 등을 반영토록 한다.

실제보수는 피감사인의 내부통제수준을 고려하여 (표준감사보수액 $\pm 25\%$)의 범위내에서 결정되도록 권장한다. 여기서 $\pm 25\%$ 라는 수치는 미국에서 피감사회사의 내부통제수준의 차이에 따라 감사보수가 약 65%정도 차이가 날수 있다는 자료를 참조하여 정한 것이다. 위의 범위내에서 감사보수계약을 시간비례제로 하느냐 또는 총액제로 하느냐는 감사인과 피감사인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결국 보수의 결정은 감사인과 피감사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최종적으로는 결정되겠으나, 위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감사보수계약을 체결한 피감사인이나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리감독을 강화토록 한다.

(제 3안): 종전과 같이 감사보수상한을 정한다.

종전과 같이 공인회계사회에서 만든 개선된 공식을 재경원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개선된 공식은 현재의 공식에다가 피감사인의 재고자산이나 외상매출금 규모등 위험도, 산업별요인등을 반영한다. 개선된 공식을 위하여는 주인기·최관(1997.12) 참조할 것.

(비지정감사의 감사보수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소견)

— 제 1안 지지

- 원칙적으로 감사보수가 자유롭게 체결되도록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외국에서의 관행과도 일치한다.
- 어차피 현재 감사보수 상한은 있어도 하한은 없는 실정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단기적으로는 제 2안의 채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현재 낮은 감사보수수준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인상시키기 위하여는, 당분간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감사보수체제를 설정하고 이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I. 감사업무 수임제한제도

1. 변천과정

가. 외부감사법 시행이전의 수임제도

1968년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되면서 감사업무를 조직적으로 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법인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1976년 증권거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수임을 할 수 있는 감사대상을 제한하여 소속공인회계사의 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외부감사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의 수임제도는 증권거래법에 근거한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 감사인의 소속공인회계사수와 감사인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자체적인 내규에 따라 피감사 회사를 배정하였는데 그 배정제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감사인의 조직형태(즉 법인인가 또는 합동공인회계사반인가)와 소속 공인회계사 수에 따라 수임할 수 있는 감사대상회사의 자산규모에 제한이 가하여졌었다.

둘째로, 각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수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숫자가 계산되었다.

셋째로, 이렇게 계산된 감사대상법인수에서 20%까지는 감사인의 연

VI. 감사업무 수임제한제도

고관계를 인정하여 감사인과 피감사회사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3~5개, 감사대상회사 3~5개를 한 단위로 묶어 복수로 배정하여 배정된 그룹내에서 선택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넷째로, 외국인 투자업체나 차관기업체등 이외에는 3년까지만 계속 감사를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배정의 주된 이유는 감사보수수입의 개인별 균등화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확보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배정제도는 독립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윤종안, 1988, p. 31).

첫째, 공인회계사는 부단한 연구, 교육훈련과 피나는 경쟁을 통해서 전문가로 양성된다. 그러나 회계감사업무를 배정하는 제도하에서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자기발전을 시도하게 하는 동기유발이 되지 않으며 공인회계사의 질적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회계감사업무가 부업화되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지게 할 우려가 있다.

셋째, 기업이 대규모화되고 국제화되고 있는데도 구태의연하게 4인 1조직 감사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감사기준과 준칙에 미달되는 부실감사가 속출하게 되었다.

넷째, 일률적이고 경직화된 배정방식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중 감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으며 초도감사로 인한 이해부족으로 비능률과 부실감사가 빈번히 발생되었다.

<표 VI-1> 외부감사법률에 대한 적용변천 요약

개정일자	적용기간	자유수입비율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른 수입제한
제1차 개정 1982. 3. 10	1982 사업년도	감사인 별로 조직점수와 개인점수를 산출하여 수입할 수 있는 피감사업체수를 부여하고, 그 개수 범위내에서 50%는 자유수입, 나머지 50%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5:5 복수추천)	(1)회계법인:제한없이 모든 기업 수입 가능 (2)합동회계사무소:1000억원 미만 기업만 수입가능 (3)개인공인회계사:40억원 미만 기업만 수입가능
제2차 개정 1983. 2. 24	1983사업년도 - 1984. 7월말	100%(수입 한도범위) 자유수입	상 동
제3차 개정 1984. 7. 31	1984. 8. 1 - 1985. 3. 31	130%(공시 한도내) 자유수입	상 동
제4차 개정 1984. 11. 22	1985 사업년도	상 동	(1)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수 50인이상:제한없음 50인 미만: 5000억원 미만 (2)합동회계사무소: 1000억원 미만 (3)개인공인회계사: 50억원 미만
제5차 개정 1986. 3. 12	1988사업년도 -1989사업년 도	상 동	(1)회계법인: 상동 (2)합동회계사무소 소속공인회계사 14인 이상: 1000억원 미만, 14인 미만: 500억원 미만 (3)개인공인회계사: 70억원 미만
	1988사업년도 -1989사업년 도	상 동	(1)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수 100인이상: 제한없음 50인-100인 미만: 5000억원미만, 50인 미만: 3000억원 미만 (2)합동회계사무소 : 상동 (3)개인공인회계사:100억원 미만
제6차 개정 1990. 3. 29	1990사업년도 -1997.4.9	상 동	(1)회계법인: 상동 (2)합동회계사무소:1000억원 미만 (3)감사반: 200억원 미만
제7차 개정	1997.4.10 - 현재	상 동	(1)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수 100인이상:제한없음. 100인 미만: 8000억원 미만 (2)감사반: 300억원 미만

VI. 감사업무 수입제한제도

이러한 지적외에도 배정제는 감사인에게 유사공권력이 주어짐으로써 회사별업종별 특성에 따른 최적감사보다는 감사인의 자의에 의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비상장비등록 법인에게는 지나친 부담을 주며 공인회계사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회계법인의 대형화조직화를 곤란하게 하고 회계산업개방시 국내 회계시장의 잠식이 우려되는 점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배정위주의 수입제도는 본질적으로 감사인간의 과당경쟁을 지양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회계감사인의 전문성을 도외시함으로써 감사업무의 질적인 발전을 유도하지 못하고 공인회계사자격이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는 특권으로서 인식되어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은 공인회계사 스스로가 지키도록 노력해야지 배정제도와 같은 특정제도로서 해결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깊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제도는 배정제도에서 점차 자유수입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나.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의 수입제도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후 종전의 업무수입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일부 개선되어 1982. 3. 10부터 『감사인의 업무수입준칙』이 새롭게 시행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감사인의 조직형태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가 제한된 것은 종전과 변동이 없다.

둘째로, 일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각 법인별로 결정된 감사대상법인

수중에서 50%까지는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서 감사계약을 체결하되 감사대상기업의 자산계층별로 일정한 계약한도를 부여하였다. 즉 감사인들은 감사보수가 적은 소규모기업을 일정비율만치는 의무적으로 감사토록 하고 또한 수임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의 숫자도 제한하였다.

(감사인별 감사대상회사수=감사대상회사총수 x (감사인의 점수한도/감사인 들의 조직점수와 개인점수의 총계)

셋째로, 자유수임계약에서 제외된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를 자산계층별로 5개씩 복수로 추천하여 각 그룹내에서 선택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1982년도의 감사계약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이러한 수임제도는 1983년부터 50%의 자유수임한도를 철폐하여 자산계층별로 설정된 일정한 제한조건내에서 100% 자유수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1984년 8월 1일부터는 자산계층별 제한조건을 삭제함과 동시에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각 감사인별로 계산된 감사대상회사수의 130%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자유수임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위하여는 조익순(1988)을 참조하기 바람.

배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자유수임제도로 감사계약제도를 변경하였는바 자유수임제도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되었다. 즉 이 제도는 감사업무의 수임을 위한 회계법인간에 치열한 경쟁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직업윤리규정에서 금하고 있는 청탁, 간청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수임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부감사인의 선임권이 피감사회사에 있으므로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될만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2. 현재의 수입한도 제도

현재 감사인이 감사할수 있는 회사의 규모나 연간 감사할수 있는 회사수에 대한 제한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 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 4조에 나타나 있다.

가. 감사인이 감사할수 있는 회사의 규모에 대한 제한

<표 VI-2> 감사인별 감사할수 있는 회사의 규모에 대한 제한

감사인		감사할수 있는 회사의 규모
회계법인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	제한없음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8,000억원 미만. 이 경우 법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인 회사를 감사하거나, 법 제 4조의 3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명을 받은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또는 지명을 받은 사업연도중에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이 8,000억원을 초과하게 된때에도 그 기간종료시까지의 당해 회사를 감사할수 있다.
감사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 직전 연도에 감사한 회사를 계속 감사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

(*)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감사인의 업무수입준칙 제3조6항에 의하면 당해감사인에서 3월 31일 현재 최근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수습공인회계사 2인을 등록된 공인회계사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수습공인회계사의 수는 당해 감사인에 소속한 등록된 공인회계사수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

나.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수 있는 회사수에 대한 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4조 2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수 있는 회사의 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회사수로 한다.

- 연간 감사할수 있는 회사수 = 당해 연도 감사대상회사의 총수 x (당해 감사인의 평가점수/전체감사인의 평가점수의 합계) x 130
- 위의 산식에서의 평가점수는 감사인의 조직체계와 운영상황 및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능력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평가점수의 산정방법등은 공인회계사회가 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 종전에는 자산규모 80억원 미만 회사에 대한 의무수입제 및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회사에 대한 200% 수입한도제도가 있었으나 이러한 제한은 법규개정으로 인해 1997년도부터는 없게 되었다.

(참고 1) 감사인의 조직 및 운영규정 제 6조(한공회 내규 제38호 제6조(평가점수))에 의하면 감사인별 평가점수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 평가점수의 기본단위는 100점으로 하되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들의 개인경력에 따라 실제로는 80점에서 120점까지 차등을 두어 점수를 매긴다.
- 회계법인의 이사 1인마다 기본단위의 50%를 가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수는 소속된 공인회계사수의 100분의 25를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이사로 계산한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판정된 평가등급(총6등급)에 따라 감사인별 기본점수에다가 5%에서

20%까지 가점한다.

(참고 2) 감사인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평가

- 외감법 제16조의 2,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 2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조직 및 운영등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정한다.
-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 평가기준”을 만들게 되었다.
- 평가기준을 보면 회계법인평가에 있어서 우선 조직화와 감사의 질적관리의 2개 대항목으로 나누고, 조직화는 조직과 급여체계, 설비·재정·보험, 국제화·정보화, 인력관리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감사의 질적관리는 감리와 소송, 고객만족도, 독립성확보, 감사업무관리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시행초기인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며, 그후부터는 2년주기로 실시한다.
- 감사인 지정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1997년부터 본 평가기준에 의거 법인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유예규정을 둔다. 즉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법인과 기타 법인간의 감사지정회사배정비율의 격차를 1997년에는 적게하고 1998, 1999, 2000년으로 가면서 점차 확대할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결과로 인한 혜택이 시차를 두고 점차 적용되게함으로써 회계법인간 차이가 심화되고 영구화되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을 방지할 수 있다.
- 평가결과 우수한 회계법인에대하여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펴는 한편 그렇지 못한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서비스 질을 개선할수 있도록 유인책을 실시하는 균형있는 정책집행이 요청된다.

3. 외국의 감사업무배정 및 제한에 관한 제도

현재 주요 외국에 있어서의 감사수임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감사업무배정이나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 주요국의 감사업무 수임제한에 관한 제도

국 가	내 용
영 국	감사업무 배정 및 제한 규정은 없음.
호 주	감사업무의 배정 또는 제한 규정은 없음. 단, 청산업무 시 법원이 지정하는 경우는 있음.
카 나 다	업무배정이나 제한 규정은 없음.
미 국	감사업무의 배정 또는 제한의 규정은 없음.
독 일	감사업무의 배정 또는 제한의 규정은 없음.
일 본	업무배정 및 제한 규정은 없음.
홍 콩	업무배정 및 제한 규정은 없음.
싱가포르	업무배정 및 제한 규정은 없음.
대 만	감사업무 배정은 없고,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는 개인 공인회계사는 감사할 수 없고, 증권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1995, p. 96)

4. 현행 감사수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 동안 자유수임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적지 않은 비판이 있어 왔다. 이강수(1991, p.17)는 자유수임제도는 감사인의 감사능력의 경쟁이 아니라 감사업무의 수임경쟁을 유발했으며, 이는 바로 현재의 감사품질의 하락,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하락을 초래한 독립성의 결여를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의 자유수임제도에 따른 독립성의 결여는 다음과 같은 김일섭(1988)의 지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

VI. 감사업무 수입제한제도

다. 그는 한 회계년도에 감사의견이 경영자에 불리한 경우 차회계연도에는 타감사인을 찾는 opinion shopping 현상, 감사계약시에 의견형태를 어느정도 약속하는 opinion dumping 현상, 고객 유치 및 확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 과도한 수입경쟁에 따른 상호불신 증대현상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자유수입제도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배정제도로 다시 돌아가자느니, 또는 현재의 130% 한도제에서 과거의 100% 수입한도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행 수입한도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제 1안) 현행 130% 수입한도제의 폐지

(제 2안) 현행 130%의 유지

(제 3안) 130% 수입한도를 100%로 낮춤

이상의 3가지 안을 놓고 볼 때, 제 1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수입한도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힐 것 같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감사인들로 하여금 규제의 틀속에서 안주케 만들 가능성이 많다.
- 현재의 130% 수입한도를 100%로 낮추는 제 3안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감사품질의 저하를 막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감사품질의 저하를 경쟁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데에는 앞서 이미 설명한 바 와 같이 많은 문제가 따른다. 감사품질의 저하는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수입한도설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리나 소송제도와 같은 감독장치의 정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방지해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과다수입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강화함으로써 지나친 수주경쟁을 어느정도 막을수도 있을 것이다.

- 수입한도의 설정은 결국 회계감사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쌓아 올릴 유인을 제공한다.
- 또한 앞의 <표 5-3>에서도 제시되었지만 외국의 예를 보아도 수입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130% 수입한도제를 폐지하는 제 1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VII. 감사인 선임관련제도

1. 감사인의 선임, 해임 및 부당교체

현재 감사인은 회사감사의 제청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고 있으나 회사가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동 위원회의 제청에 의해서도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¹⁾. 또한 대주주(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합계가 3% 이상일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사인 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였다.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개 사업년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토록 하였다. 다만 기업들이 다소 불편할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감사인을 부당하게 해임하는 경우에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감사인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또한 감사인들의 재무제표, 평가등급, 감리결과 지적사항등을 공시토록 하여 기업이 이를 참고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1) 최근에 개정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안(제 3조의 2)에 의하면 상장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 선정시 현재는 감사가 제청해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내부감사와 채권자대표, 사외이사, 제2 대주주등이 참여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제청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다. 이는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키 위한 조치이다.

우리나라의 감사인 선임제도는 그동안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완되어져 왔다.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부분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상장법인들의 경우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면, 현재의 내부감사기능을 보완할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가 설립되고 여기에서 외부감사인의 선임도 하도록 제도가 성숙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경우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에서 선임된 외부감사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1: 상장법인의 감사인 해임) 감사인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 5조

- ① 회사는 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법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평가(이하 “감사인평가”라 한다) 결과 감사인이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평가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6. 감리업무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감사인이 업무정지 또는 감사인지정 제외조치를 받거나 소속 공인회계사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 ② 회사가 감사인 해임을 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회사 및 감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참고 2: 감사인 부당교체) 감사인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①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감사인 교체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중요한 감사절차의 실시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2. 감사의견표명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 3. 현저히 낮은 감사보수로 감사계약을 한 경우
 - 4.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다만, 교체사유가 감사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거나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교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사정으로 감사인이 교체된 경우 한정 의견 등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에게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2. 감사인 지정

가. 감사인 지정제도 변천과정

1980년 12월 31일 외감법의 제정으로 감사계약제도는 배정제에서 자유수입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감사제도가 시장원

리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증권당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초기부터 완전한 감사계약제도로 보기에 충분치 않은 실정이었다. 즉 외감법에 의한 자유수입제도가 회사의 감사인 선임권 남용과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현행 자유수입제도하에서의 회계감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1989년 2월 증권감독원산하에 외부감사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감사제도전반에 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의 개선내용 중 감사인 선임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존의 자유수입제를 계속 유지하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기업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89.12.31 외감법 개정시 법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규정하고 동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감사인 지정요건은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지난 96년말과 97, 98년도 초에 걸쳐 또 한 차례 개정이 되었다. 개정경위는 <표 VII-2> 로 정리되어 있으나 가장 최근의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VII. 감사인 선임관련제도

<표 VII-1> 최근(96년말-98년1월)의 감사인지정요건 확대 또는 개선

현행	확대 또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와 경영 미분리 회사 : 50%이상소유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대표이사인 회사 	<p>25%이상 소유 대주주(특수관계인포함)가 대표이사인 회사(상장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 과다회사 : 동업종평균 1.5배이상 상장회사 	<p>부채비율 과다 회사. 단, 주거래은행의 요청으로 은행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상장회사는 지정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대주주 등에 가지급금, 대여금 과다 상장회사(자기자본 30%이상) 	<p>추가:대주주, 특수관계인(계열사제외)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 담보제공, 지급보증의 자기자본의 10%이상 인 상장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회사 	<p>추가: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교체한 경우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결과 기업회계기준 위반회사 	<p>중대한 분식, 오류의 경우로 하고 경미한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합병예정기업 및 관리종목 	<p>현행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 미선임등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합리화 지정대상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법 위반회사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외감법에 관련내용 없음) 	<p>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은행이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p>

(*) 자료 : 월간 공인회계사 (1996. 11., P. 39) 및 기타

(*) 지정대상기준의 변경시 대상기업수(상장회사) : 현재 99사에서 약 120개사로 확대 예상

<표 VII-2> 감사인 지정사유 의 변천

년도	감사인 지정사유	관계 규정
'89.12.30	①법정기한내 감사인 미선임 회사 ②감사인교체사유가 부당하거나 선임절차 위반회사 ③감리결과 조치 해당 회사 ④감사인이 수입한도 위반인 경우 ⑤기업공개 권고 해당 회사	외감법
'90. 3. 3	①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서 주식 총수 50%이상 ②산업합리화 대상 지정 회사 ③상장법인중 관리종목 지정회사	외감법시행령
'90. 5.16	①상장법인중 부채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의 1.5배 초과회사 ②증권거래법 위반 조치 회사	감사인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91.11. 5	①상장법인 또는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등록법인으로서 총주식수 50%이상 지배주주또는 대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외감법시행령
'94. 4.30	①전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이면서 감사인을 교체한 회사	감사인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94. 4.30	①임원, 대주주, 관계회사에게 자기자본의 30% 초과한 대여 또는 담보제공한 상장회사 ②상장예정회사('92.12 감사인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신설되었다가 일부개정하여 외감법시행령으로 이관함) ③상장법인과 합병예정회사	외감법시행령
'96. 12.30	①감리결과 중요한 회계기준위반 ②관계법률에 의한 금융감독기관의 장 또는 감독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증권관리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금융기관	외감법
'97. 3.22	①25%이상 소유대주주가 대표이사인 상장회사 ②부채비율과다회사. 단 주거래은행이 지정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하는 회사를 제외 ③지배주주등에 대한 대여금과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인 회사 등	외감법시행령
'97. 3.26	①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회사가 감사인 교체시 ②기타(외감법,외감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들)	감사인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98.1.8 공 포 (동 년 4.1일 시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은행이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감사인 지정요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조의 3)

(주) 1994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는 한일(1996. P.20)을 참조한 것임.

나.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

1)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는 증관위 규정인 감사인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7조(지정대상회사)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2개 사업연도 범위내에서, 제3호 또는 제1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3개 사업연도 범위내에서 감사인을 지정한다.

1. 법 제4조제1항, 제5항 또는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4조의 제 2항 또는 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의 당해회사
3. 위원회의 감리결과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되어 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과 관련된 조치를 받은회사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등” 이라한다)의 직전사업연도말 소유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합계가 당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100분의 25)이상이고 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주가 당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가. 상장법인

나.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등록법인

다.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5. 회사가 선임한 감사인이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업무가 제한되거나 특수관계에 있어 감사를 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회사가 감사인이 감사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지하여 지체없이 위원회에 감사인교체 선임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산업정책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산업합리화계획에 의거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부족액 또는 부채초과액 등을 기업회계기준의 예외사항으로 처리하고 있는 회사
7. 상장법인(금융업·보험업 및 리스업 제외)중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상장법인의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이상으로서 상장법인 평균부채비율 이상인 회사. 다만, 동업종 상장법인이 5사 이하인 경우에는 상장법인평균부채 비율의 1.5배 이상인 회사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회사의 거래은행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주된 거래은행이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8. 상장법인중 지정기준일(당해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의 초일로 한다. 이하같다.) 현재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의 당해회사
9. 상장법인중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에 대한 대여금 등의 비율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

가. 회사의 임원, 지배주주등(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동호에서같

VII. 감사인 선임관련제도

다)에 해당하는 주주중 최대주주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 담보로 제공한 현금 및 유가증권가액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상인 회사

나. 지배주주 등에 대한 대여금 및 금전채무 지급보증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회사

10. 다음 사업연도중에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 및 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비상장회사²⁾

11.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감사인지정과 관련된 조치를 받은 상장법인

12.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회사

② 제1항 제7호의 부채비율, 동업종평균부채비율 및 상장법인평균 부채비율은 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회사는 위원회에 지정대상사업연도 종료 3월전까지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중에 상장 또는 합병되지 못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에 상장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별도의 지명신청없이 위원회가 기지정한 감사인을 계속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는 감사인 지정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 제19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법인

2.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최근 신문보도(1998. 2.23. 매일경제신문)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은 이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이유는 M&A를 통한 구조조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3.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6.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연결재무제표작성회사에 대한 개별회사 재무제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감사인(이하 “연결감사인” 이라한다)으로 함께 지정한다.

2) 감사인 지정방법

감사인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2조(지정방법)①감사인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지정대상회사의 지정순서는 직전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연결감사인 지정의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자산)규모가 큰 회사순으로 한다.
 2. 감사인의 지정순서는 감사인별 지정점수를 산출하여 다음 각목의 순으로 하고 제1호의 지정대상회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인이 지정대상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된(증권위가 지정하여 선임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선임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 가. 지정점수가 많은 감사인

VII. 감사인 선임관련제도

나. 지정점수가 같은 경우는 감사인 점수가 많은 감사인

다. 감사인 점수가 같은 경우는 감점이 적은 감사인

3. 제2호의 감사인 점수 및 감점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 감사인의 업무수입준칙에 의하여 산출한 점수로 하며 감사인별 지정점수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지정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지정받은 회사수는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제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인 재지명 신청이나 회사의 당좌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감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text{지정점수} = \frac{\text{감사인점수}}{1 + \text{지정받은회사수}}$$

4. 감사인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중대한 부정행위 등을 주주총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동 감사인을 당해회사 자산규모수준의 회사(지정순서상 당해회사 규모 직전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되 제3호 산식의 지정받은 회사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직전사업연도에 지정받은 회사가 계속하여 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사업연도에 한하여 전기 감사인을 계속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③ 지정대상회사가 위원회로부터 감사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감사인을 선임하였거나, 이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회사가 선임한 감사인은 당해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3) 연도별 감사인지정 현황

<표 VII-3> 연도별 감사인지정 현황

(단위 : 사)

구분 \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10
1. 감사인 미선임	221	32	11	10	15	9
2. 감사인 부당교체	—	—	—	5	3	11
3. 감리결과 조치	16(1)	9(4)	2	4(1)	—	11(2)
4. 소유·경영미분리	4	77(6)	85(16)	99(8)	126(16)	136(11)
5. 대여금과다 상장법인	—	—	—	—	—	13(10)
6. 산업합리화 기업	16	15(8)	13(7)	13(5)	10(3)	10(4)
7. 부채비율 과다	12(1)	79(13)	78(6)	90(12)	86(12)	86(13)
8. 관리종목	5	6(2)	5(2)	5(4)	6(5)	7(2)
9. 증권거래법 위반	5	3	8(2)	1	3(2)	2
10. 기업공개 예정법인	—	—	68(12)	49(4)	112(14)	56(10)
11. 기업공개 권고	4	4(1)	1(1)	—	—	—
12. 상장법인과 합병예정	—	—	—	—	8	5(1)
계	282	208	248	258	344	318

주:()는 지정요건 중복사수임.

(자료: 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 20년사, 1997, p. 404)

<표 VII-4> 외감대상기업대비 감사인 지정대상기업 비율

구분	'93	'94	'95	'96	'97
전체외감 대상기업(A)	5,972	6,261	7,053	7,857	8,540
상장법인 (B)	651,103, 15.8%	667,110, 16.5%	681,106, 15.6%	704,121, 17.2%	710,122, 17.2%
등록 법인	2015,129, 6.4%	2053,127, 6.2%	2076,219, 10.5%	2198,195, 8.9%	506,140, 27.7%
기타 법인	3306,11, 0.3%	3541,27, 0.8%	4296,22, 0.5%	4955,38, 0.77%	7324,48, 0.66%
감사인지정 기업수(C)	243	264	347	354	310
비율(C/A)	4.1	4.2	4.9	4.5	3.6%

VII. 감사인 선임관련제도

- (주1) 상장법인, 등록법인, 기타법인의 경우 연도별로 (총회사수, 감사인지정회사수, 지정비율)을 나타냄. 예를 들어 93년도 상장기업 총수는 651개사였으며, 이중 103개사가 감사인이 지정되었으며, 이는 651개사의 15.8%에 해당됨.
- (주2)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등록법인의 정의가 달라지게 되었다. 즉 1996년 4월, 관련기준의 개정으로, 보증사채 발행기업들은 등록법인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97년도부터 등록법인수가 상당수 줄어들고 기타법인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다. 문제점 및 개선안

- 상장법인들의 경우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의 감사인 지정요건들의 적합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전체 외감대상법인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약 4% 안팎에 해당하는 법인들이 감사인이 지정되고 있다. 상장기업들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5-17%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감사인이 지정되고 있다. 특히 상장법인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와 같이 광범위하게 감사인이 지정되는 제도를 가진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 현재와 같이 광범위하게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감사인간의 경쟁도 저해하며, 또한 독립성이란 결국 감사인자신의 노력에 의해 자발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는 대전제가 흔들리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감독당국이나 감사인자신들도 하여금 독립성유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각종 규제에 의존케 만듦으로써 결국에는 독립성유지가 아니라 전반적인 독립성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감사인지정제도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관리대상종목의 경우라든지, 감리결과 심각한 분

식회계사실이 드러난 회사,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가 스스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 등이다. 지정을 축소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기존의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들에 대해 감리를 강화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사인 지정제도는 중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되어야 하겠으나,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유용성 - 상대적으로 저렴한 독립성 제고장치가 될 수 있다는 - 이 있다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의 회계 및 감사환경을 살펴볼 때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회계정보를 직접 만드는 기업들의 책임감이 약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업경영층에 대한 견제장치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소송제도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한편 기업은 감사를 불필요한 간섭정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으며, 감사인 선임이 주로 학연이나 지연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낮은 감사보수등으로 인해 감사품질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도 낮은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정확한 회계정보에 대한 기업의 낮은 책임의식이나 경영견제장치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미비점들은 회계관련 당사자들의 인식에 관한 문제, 또는 사회체제와 관련된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들로서 단시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않다. 3)

3) 그러나 최근에는 상당한 변화가 이 사회에서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예전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화로서 그야말로 IMF사태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사료된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재벌체제의 재조정,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한계기업의 정리등은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들이 현실화된다면, 현

VII. 감사인 선임관련제도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감사인 지정제도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감사인 독립성제고 장치가 될 수 있다⁴⁾. 이는 특히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기업들의 경우에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기존의 감사인 지정요건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한편 감사인 지정제도는 당분간 특히 비상장법인들의 경우 지속토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장법인들의 경우에도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자리잡을 때까지는 현재의 지정제도를 보완적인 차원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감사인 지정후 사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감사인 지정후 특별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감사인 지정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정회사중 일부를 표본추출하여 사후감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1996). 물론 지정회사중 일부를 표본추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으나, 지정회사를 감사한 감사인이 부실감사를 하였을 경우 감사인에 대한 벌점을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재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 많은 요건들은 현재보다는 그 중요성이 많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감사인선임위원회가 많이 설립되고 활성화된다면 - 상장법인은 의무사항이지만 - 현재와 같이 증권당국에 의한 감사인 지정은 자연히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 4) 여기서 ‘저렴하다’는 것은 효용성 대비 저렴하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의미에서 저렴하다는 것은 아니다. 감사인 지정은 감사인간의 경쟁을 약화시킨다. 또한 감사인의 독립성은 감사인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대전제가 흔들리게 된다. 나아가서 만약 감사인이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대상기업을 고객으로 남기고자 할 경우 생각보다는 독립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VIII. 한국의 감리제도

1.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감리제도는 1975년 공인회계사회내에 『회계감사심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1981년 11월 이전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1980년 말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 외감법이 제정됨에 따라 1981년 12월부터는 동 법률에 의한 공적 행정기구인 감리위원회가 증권감독원에 설치되고 모든 외부감사대상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업무체제가 확립되었다.

한편 감리업무를 효율성을 제고하고 외부감사의 조기정착과 외부감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일반감리를 매년 확대하여 실시하고, 금융부정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기업과 부실기업으로 전략회사등에 대하여는 특별감리를 실시하였는데, 1985년부터는 공개예정법인에 대하여도 특별감리(통계표상에서는 수시감리로 별도 구분되어 있음)를 실시하였다. 또한 1987년부터는 부실징후법인에 대한 심도있는 감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보고서 감리방법을 정밀감리체제로 전환하여 일반감리대상을 확대.선정하는 대신 약식감리제도는 폐지하였다. 감리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정정 및 필요한 보고의 요구 또는 권고, 재무부장관에 대한 감사인 징계요청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후 1989년 12월에 외감법이 개정되어 외부감사에 관한 업무가 감리위원회에서 증권위로 이관되면서 새로운 감리체계가 정립되었다. 개

정법률에서 증권위는 종전의 감리위원회와 달리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 및 관계회사와 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사 및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설립인가의 취소, 등록취소, 일정기간의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의 유가증권 발행제한등과 같은 조치들을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증권감독원, 1997, pp. 396-399). '93. 12월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증권관리위원회가 수행하던 감리대상회사중 상장법인과 공개예정법인 이외의 회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는 위탁감리체제가 수립되었다(원정연, 1996). 1996년 12월말에는 외감법이 개정되었고 1997년 3월 26일에는 감리업무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우선 종전 증권감독원 조직감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감사인 평가기준을 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인을 평가하여 우수감사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감사인에게 그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감사인 스스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감사보고서 감리대상 선정방법이 개선되었고 감리위원회 운영방식이 개선되었으며, 감리결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2. 현행 감리제도의 틀

한국의 감리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감사업무에 대한 질적관리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속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질적 관리제도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감사인 조직에 의한 자율적 관리와 증권관리위원회의 외부감사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규제 및 감리로 구분된다.

가. 자율적 관리제도

1) 감사인 조직에 의한 내부관리

회계감사기준 제 9조에서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회계감사준칙 240조에서는 회계법인은 구체적으로 내부업무조직, 공인회계사등의 채용, 훈련 및 승진, 감사업무의 감독 및 내부심리의 네 개 분야에 관해 합리적 관리제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내부관리제도의 내용

- 내부업무조직의 정비
- 공인회계사등의 채용, 훈련 및 승진

- 감사업무의 감독
 - 감사조서의 검토과정을 설정, 실시
 - 감사업무의 전과정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통제
- 내부심리
 - 회계법인은 자체의 심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내부심리를 실시
 - 내부심리조직의 책임자는 감사인의 명의로 발행되는 모든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업무의 일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 내부심리조직은 감사인의 명의로 발행된 감사보고서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일부에 대하여 관련 감사조서를 사후심리함으로써 감사업무의 질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
 - 내부심리를 함에 있어서 검토대상의 선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인회계사회의 회원관리

공인회계사회의 회원관리내용을 보면 회원등록관리, 회원연수와 같은 것도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회계감사 심리위원회에 의한 심리와 윤리위원회에 의한 각종 규제이다.

- 회계감사심리위원회 : 소속회원이 실시한 회계감사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조서 및 관련 보충자료를 제시케 하여 심리업무를 수행하고, 심리결과에 따라 회원의 징계 및 감사업무의 제한을 윤리위원회에 요청한다.

- 윤리위원회 : 각 심리위원회의 징계요청 및 기타 징계사유등을 포함한 제반 윤리문제를 심의하는 기구로서 회원에 대한 각종 처벌을 결의할 수 있다.

나. 외부규제와 감리제도⁵⁾

외감법 제 15조 및 동 시행령 제 8조에서는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에 의해 제출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 15조의 3에서는 이러한 감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원에 외부감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감사심의위원회는 주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한다.

5) 1998년도 1월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해 감사보고서의 감리 및 관계자 조사권한이 종전의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 바뀌었다. 또한 외부감사심의위원회가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하의 내용은 종전 바뀌기 전의 제도설명임을 양지하기 바란다.

1)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지명 (외감법 4조의 3)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외감법 제4조의 3에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 회사에 대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의한 지명으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감사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한 심의업무를 담당한다.

2) 증권위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의 감리 (외감법 15조 1 항)

- 監査報告書の 監理

외부감사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감리는 감사보고서 감리와 조직감리로 대별된다. 監査報告書監理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및 수시감리로 나눈다. 一般監理란 심의위원회가 표본추출 등에 의하여 선정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이다. 特別監理란 재무부장관 또는 심의위원회위원장의 지시, 기타 중대한 분식회계처리를 한 회사 혹은 부실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감사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실시하는 감리이다. 隨時監理는 기업공개예정회사등 수시로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감리를 뜻한다.

- 組織監理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하여 실시하는 감리를 조직감리라 한다. 이에선 표본추출등에 의해 감리대상이 선정되는 一般監理와 감사인의 업무가 현저히 부당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정보를 기준으로 선정되는 隨時監理로 구분된다.

- 감리결과에의 처리

감리를 실시한 후에는 증권감독원 감리국은 감리결과보고서 및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는 감리결과보고서 및 처리의견서를 심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①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정정 및 필요한 보고의 요구 또는 권고
- ② 회사임원 및 감사인에 대한 징계요구(임원해임권고, 감사업무제한, 주의, 경고등 포함)
- ③ 기타 필요한 조치

3. 외국의 감리제도

가. 각국의 감리기관 및 감리 내용 (한국공인회계사회, 1995, pp.69-70)

A. 영 국

ACCA(The Chartered Association of Certified Accountants) 및 ICAS(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Scotland)등 승인된 감독단체(Recognized Supervisory Board)들은 그들의 주요 의무사항으로 감사인의 심리정책(Quality control policies practices)을 조사한다.

특히, 감사업무를 위해 등록된 법인, 금융서비스법(1986)에 규제된

투자사업을 하도록 승인된 법인, 파산 등에 관한 업무(회계업무중 소위 “지정영역(reserved areas)”)를 수입하도록 허용된 모든 회계법인에 대해 조사방문(Inspection visit)이 이루어진다.

조사내용은 법인의 내부심리절차, 직원과 파트너의 교육 및 성과평가를 위한 절차, “지정영역”에 관해 수행된 업무의 질, 그리고 윤리적 문제를 다룬다. 조사과정은 고객서류중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ICAS의 경우는 “지정영역” 이외의 기타 업무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나, 영국내 기타 회계업무단체(Recognized Supervisory Board)중에는 좀 더 확장된 범위의 조사를 하는 단체도 있다.

일부 법인들은 타법인이 그들의 절차들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이다.

B. 호 주

법인의 질적통제 정책이나 절차에 대한 조사는 ASCPA(Austrians Society of CPAs)의 Quality Assurance Program이나, ICAA(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Australia)의 Quality Control Program에 의하여 진행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이행은 실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모든 회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Quality Assurance Program은 전문가 기술서 APS 4 질적통제기준에 대한 기술에 근거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업회원이 적절한 질적통제정책과 절차를 실행하고 있어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있다.

호주내 감사인이나 회계사의 업무는 주요한 세 개의 규제기관(호주

증권위원회, 보험관 연금위원회, 호주세무관청)의 통제하에 있다. 이 기관들은 감사인 또는 회계사의 행위가 그들의 규제업무의 특정분야에 해당되는 한도내에서, 감사인 또는 회계사의 행위를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기관에 의한 감사는 질적통제제도나 절차가 아니라 법률의 준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

C. 카나다

캐나다에서는 감리를 주(state)의 공인회계사회의 감리위원회(Practice Inspection Committee)에서 맡아하며 감리대상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되 회계법인별로 또는 감사반별로 실시하고 선정과정은 3개년 감리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대체로 3~5년 사이에 1회의 감리를 받게 되는데 감리는 조직감리에서 법인의 내부통제제도를 평가한 후 감리대상 조서 수를 결정하는 등의 절차로 감리한다.

D. 미 국

미국의 감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공인회계사 업계에 의한 자율적 규제기능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기능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계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공감시위원회(Public Oversight Board : POB)와 행정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한 감시 및 평가체제를 이중적으로 갖추고 있다. AICPA는 회계법인 관리 부내에 상장기업 감리과를 두고 그 밑에 상호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상호감리위원회(Peer Review Committee)에서는 감사인간의 상호감리(매 3년)를 통하여 질적관리기준(Quality Control Standards)에 근거한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각 감사인은 자체적인 검사를 통

하여 내부감사를 수행한다. POB는 AICPA의 감리에 대한 감독 및 재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증권거래위원회는 POB의 감독업무를 재감독하며 또한 AICPA에 의한 상호감리실시 사항에 대한 재검사를 수행한다.

E. 독 일

질적 수준 통제 정책과 절차를 감리하는 것은 공인회계사(Wirtschaftsprüferkammer)의 의무이다. 감사인회의 업무는 단지 직업적 의무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를 교육하고 의무의 올바른 수행을 감독하는 것에 있다.

F. 일 본

회계법인 자체의 내부심리 기능 이외의 정부 감독기관, JICPA 및 타 법인의 Quality Control System은 없는 실정이다.

G. 홍 콩

HKSA(the Hong Kong Society of Accountants)에 의한 감리(Practice Review)와 일부 대형법인의 자체 심리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H. 대 만

증권거래위원회는 Check-list에 의해 매년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회에서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심리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나. **감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한국공인회계사회, 1995, pp. 71-72)

A. 영 국

자기규제 제도가 영국에서 운영된다. 이것은 협회(일명: 승인된 감독단체)가 그 회원 및 법인들을 통제하고 징벌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면, 그 발견사항들은 적절한 심사숙고와 조치를 위하여 정부관련의 부서로 보내게 되며, 중징계로는 해당 법인의 감사수행 권리를 취소시킬 수 있다.

B. 호 주

감리 발견사항(지적사항)은 추가적인 행위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그 행동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전문가 단체(ASCPA, ICCS)에 보고되고 사후조치는 질적 통제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 단체에 의해 수행된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뒤따르고 극단적인 경우(후속조치 불이행등), 징계를 수반한다. 특히, 호주내 ASCPA와 ICCA 두 전문단체는 감리(Quality Assurance Program)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Public Oversight Board(공공 감시위원회)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C. 카 나 다

감리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중요성에 따라 경미한 경우에는 익년 감리대상으로 계속 지정하고 중요한 경우에는 주 공인회

계사회 윤리위원회(professional conduct committee)에 조사를 요구한다.

D. 미 국

감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는 AICPA 및 각주의 회계위원회(State Board of Accountancy)에서 실시한다. AICPA 회원인 개인에 대하여는 AICPA내에 설치된 직업윤리부와 합동감시위원회(the Joint Trial Board : JTB)에서 필요한 수정사항을 제안하거나 처벌, 복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직업윤리규정 위반사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ICPA회원인 법인에 대하여는 AICPA내에 설치된 회계법인 관리부 소속 감리과 집행위원회에서 자체적인 결정에 의하여 또는 상호감리위원회의 제안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각주 회계위원회에서는 각 주의 회계법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다.

E. 독 일

공인회계사회는 필요하다면 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또한, 1년에 한 번 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대해 평가하여 공시한다.

F. 싱가포르

각 심리결과 감리보고서(a report for the practice)에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이 기재된다. 통상 PRC(the Practice Review Committee)라 불리는 ICPAS committee는 질적 통제의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한 심리결과에 주목하게 되고, 동 보고서를 회계법인에 송부한다.

G. 대만

증권거래위원회와 공인회계사회에서 정규적으로 사무관리하고 있다.

다. **비교분석요약** (한국공인회계사회, 1995, pp. 72-73)

1)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설문조사국이 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통하여 각 회계법인, 감사반의 직업적 의무와 이행을 평가하고 수행된 감사업무의 질과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다. 또한 감리의 공정성 확보와 감리 목적의 달성을 위해 Quality Control Program을 제정하여 질적관리의 기준을 확보하고, 기준에 근거한 감리의 수행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회계법인 관리부 내에 상장등록법인 감리과 및 일반기업 감리과를 두어 업무를 세분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계 및 공인회계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사로 규정된 POB(Public Oversight Board)를 통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감리를 재감리하는 이중적 감시평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 각 국별 감리의 엄격성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의 빈

VIII. 한국의 감리제도

도에 비례한다.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등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 의한 소송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규정에 의한 감리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은 물론, 감사인간의 상호감리(미국의 경우)가 매 3년간 1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감사인에 대한 소송이 생소한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의 감리기능이 제도적으로 엄격하지는 않고 감리의 중요성을 공인회계사의 직업적 의무로서 강조하고 있다.

3) 감리의 내용은 조직 감리에 의한 질적 통제기능의 평가와 조서감리를 통한 감사업무의 평가로 대별된다. 질적통제기능의 평가에는 내부심리절차 및 소속 공인회계사와 파트너의 교육이 포함된다.

4) 각국의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감리가 강제적인 경우, 이들 단체의 감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해당 국가에서는 감리결과와 주목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수정사항이 제안되며 이에 대응하는 회계법인의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다양한 제재가 이루어진다. 제재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익년의 계속 감리대상으로 지정
- 감사인에 대한 감사 의견 공시
- 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 회부에 의한 처벌
-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 정부 관련기관에 위반 사항 통지
- 감사수행 권리의 취소등

4. 과거의 증권감독원 감리결과분석

1996년 10월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총회사수는 7,873개사에 달하고 있다. 이중 상장법인수가 702사, 등록법인수가 2,197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1> 년도별 외부감사대상회사 현황

(단위:사)

구분 연도	외 부 감 사 대 상 회 사				연결재무 제표작성 회사	비 고
	계	상장법인	등록법인	기타법인		
1982	2,092	334	350	1,408	—	자본금 5억원, 자산총액 30억원 이상
1983	2,402	328	275	1,799	—	
1984	2,797	336	491	1,970	—	
1985	2,989	337	726	1,926	—	
1986	3,263	338	823	2,102	—	
1987	3,808	373	1,054	2,381	—	자산총액 30억원 이상
1988	4,083	489	1,155	2,439	—	자산총액 40억원 이상
1989	4,915	504	1,141	3,270	—	
1990	4,982	655	1,423	2,904	—	
1991	6,114	663	1,526	3,925	—	자산총액 60억원 이상
1992	7,098	647	2,152	4,299	—	
1993	5,972	651	2,015	3,306	—	
1994	6,261	667	2,053	3,541	337	
1995	7,053	681	2,076	4,296	419	
1996	7,857	704	2,198	4,955	482	
1977	8,540	710	506	7,324	미상	

(자료: 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 20년사, 1997, p. 395; 기타 증권감독원자료)

VIII. 한국의 감리제도

<표 VIII-2>, <표 VIII-3> 그리고 <표 VIII-4>는 1982년도부터 1989년도까지의 기간동안 행해진 증권감독원 감리위원회의 감리실적, 감리지적현황 및 감리결과조치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표 VIII-2> 감리위원회의 감리실적

(단위: 사)

연도 구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감사	63	63	101	201	282	489	464	414
보	일반감리	63	63	101	201	282	489	464	414	2,077
고	약식감리	678	1,824	2,163	2,381	2,585	—	—	—	9,581
	특별감리	3	14	—	11	6	118	17	—	169
서	수시감리 ¹⁾	—	—	—	—	16	58	123	140	337
감리	계	744	1,901	2,264	2,593	2,839	665	604	554	12,164 ²⁾
조직감리		3	45	—	—	10	—	—	—	58

(주) 1. 1989년까지는 공개예정법인에 대한 특별감리를 수시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임.

2. 감리실적은 감사보고서의 개수임.

(자료) 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 20년사, 1997, p. 397

<표 VIII-3> 감리위원회의 감리지적현황

(단위: 사, 건)

연도 구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일반 감리	58(74)	21(25)	26(31)	27(34)	45(48)	95(121)	57(79)	46(49)
보 고 서	감리 약식	9(10)	54(60)	63(65)	90(94)	82(83)	—	—	—	298(312)
감 리	특별 감리	3(7)	9(12)	—	2(3)	6(8)	53(102)	2(3)	—	75(135)
	수시 감리 ¹⁾	—	—	—	—	3(4)	18(27)	31(37)	20(23)	72(91)
계		70(91)	84(97)	89(96)	119(131)	136(143)	166(250)	90(119)	66(72)	820(999)
조 직 감 리		3	40	—	—	9	—	—	—	52

주 : 1. 공개예정법인에 대한 특별감리로 실시한 것을 수시감리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임.

2. ()는 지적건수임. (자료: 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20년사, 1997, p. 398)

<표 VIII-4> 감리위원회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단위 : 사, 건, 명)

연도 구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감 리 지 적 회 사 수		70	84	89	119	136	166	90	66	820
재 무 부 징 계 요청 등		2(5)	4(10)	8(11)	1(1)	—	6(8)	—	—	21(35)
감 사 보고서 정 정 요 구		19	70	73	59	41	—	—	—	262
재 무 제 표 정 정 요 구		2	—	—	—	—	—	—	—	2
회 계 사 회 자 체 처 리 요 구		70	83	88	59	70	145	70	28	613
주 의 촉 구 및 각 서 징 구		—	—	—	60	66	17	20	38	201

주: ()는 인원수임

(자료: 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 20년사, 1997, p. 399)

VIII. 한국의 감리제도

<표 VIII-5>, <표 VIII-6> 그리고 <표 VIII-7>는 1990년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동안 행해진 증권감독원 감리위원회의 감리실적, 감리지적현황 및 감리결과조치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표 VIII-5>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리실시현황

(단위:회, 사)

구분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감사보고서 감리	일반감리	62	104	81	93	74	76	43	94
	비상감리	126	12	—	8	—	—	—	—
	수시감리	120(73)	61(36)	14(12)	20(11)	53(26)	66(33)	92(46)	39(20)
	특별감리	2	11(8)	21	4	9	6	2	8
	위탁감리	—	—	—	—	15	13	11	1
	계	310(263)	188(160)	116(114)	125(116)	151(124)	161(128)	148(101)	142(123)
조직감리	20	20	31	31	27	11	—	—	

주: 1. 실지조사는 1991년도에 일반감리 1회, 수시감리 27회, 특별감리 9회를 실시함.

2. ()는 회사수임.

(자료: 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 20년사, 1997, p. 400; 증권감독원의 최근자료)

<표 VIII-6>증권관리위원회의 감리지적현황

(단위 : 회, 건)

구분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일반	상 장								
감 사 보 고 서 감 리	일반	상 장	14(16)	32(39)	17(20)	17(22)	10(10)	16(21)	6(6)	24(38)	
	감리	비상장	17(20)	6(9)	—	—	—	—	—	—	
	수시감리 【회사수】		32(42) 【29】	22(28) 【18】	1(1) 【 1】	9(13) 【 6】	11(13) 【 8】	14(20) 【11】	11(14) 【 8】	6(7) 【4】	
	특 별 감 리		2(4)	5(12)	21(36)	1(1)	7(7)	6(6)	2 ⁽³)	8(9)	
	위 탁 감 리		—	—	—	—	11(13)	12(15)	11(19)	1(1)	
	계		65(82)	65(88)	39(57)	27(36)	39(43)	48(62)	30(42)	39(55)	
조 직 감 리		10(31)	17(22)	5(5)	21(27)	3(3)	5(5)	—	—		

(자료: 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 20년사, 1997, p. 401; 증권감독원의
최근자료)

VIII. 한국의 감리제도

<표 VIII-7> 증권위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단위 : 건, 사)

구분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총 지적 회 수		65	65	39	27	39	48	30	39	
감사인(회) (사)	감사인지정 제 외	—	3	—	—	—	—	—	—	
	감사업무제한	15	19	15	6	—	9	2	11	
	경 고	—	2	—	1	—	—	—	3	
	주 의	2	1	10	5	—	2	—	6	
	각 서 정 구	18	7	—	—	—	—	—	—	
	계	35(20) 【 9】	32(19) 【 12】	25(16) 【 12】	12(7) 【 6】	—	11(9) 【 7】	2(2) 【 2】	20(11) 【 8】	
공인회 계사 (명)	고 발	—	—	3	—	—	—	—	—	
	직무정지건의	—	—	15	6	—	—	—	4	
	감사업무제한	—	3	—	—	—	—	—	10	
	경 고	23	49	24	10	12	19	4	12	
	주 의	65	53	24	17	28	33	20	20	
	계	88(88)	105(102)	66(63)	33(33)	40(40)	52(51)	24(24)	65(53)	
회 사 (사)	고 발	—	—	1	—	—	—	—	1	
	유가증권발행 제한	—	1	—	1	—	—	—	1	
	임원해임권고	1	3	12	5	—	—	—	2	
	감사인지정	15	19	12	6	—	11	4	9	
	경고·주의	—	—	—	—	6	38	25	23	
	시정요구등	39	58	36	19	28	24	18	20	
	계	55(32)	81(58)	61(37)	31(19)	34(29)	73(39)	47(25)	56(28)	

(자료: 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 20년사, 1997, p. 402; 증권감독원의 최근자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3년도 12월 외감법의 개정으로 상장법인과
 공개예정법인을 제외한 기타 법인에 대한 감리는 공인회계사회로 이전
 하게 되었다. 94년도 이후 증권감독원에 의해 행해진 감리결과를 분
 석해 보면 <표 VIII-8>과 같다.

<표 VIII-8>연도별 감사보고서 감리지적비율
(감리실시사, 감리지적사, 지적비율(%))

	94	95	96	97
상장회사 수	667	681	702	763
일반감리	74, 10, 13.5%	76, 16, 21.1%	43, 6, 14%	94, 24, 25.5%
특별감리	9, 7, 77.8%	6, 6, 100.0%	2, 2, 100.0%	8, 8, 100.0%
위탁감리	15, 11, 73.3%	13, 12, 92.3%	11, 11, 100.0%	1, 1, 100.0%
수시감리	26, 8, 30.8%	33, 11, 33.3%	46, 8, 17.4%	20, 4, 20%

위탁감리는 공인회계사회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회계처리등에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특별감리도 회계처리등에 대한 분석회계정보가 있거나 부도가 발생한 회사, 그리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에 대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지적비율이 당연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감리와 수시감리 결과 지적비율이 여전히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회계처리에는 여전히 상당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들의 감사에도 많은 개선을 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의 기간중에는 전체상장회사중 년평균 10.2%(287개사/2,813사)정도의 상장회사들이 일반감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략 15-25%에 이르는 높은 감리지적비율을 고려해 볼 때 감사보고서 감리를 좀더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현실적으로 감리를 강화하기 어렵다면 감리결과 중요한 사항이 적발된 기업이나 감사인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최종적으로는 전체 상장사중 다만 2%(56사/2,813사)만이 일반감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므로 현재의 일반감리수준은 상장사들에게 경감심을 불러 일으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감리제도 개선방안

가. 감리의 강화

○ 예전에는 일반감리는 표본추출등의 방법에 의해 선정된 감사보고서에 대해 실시하는 감리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표본추출방식에 의할 경우 꼭 감리를 받아야 할 회사가 뜻하지 않게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어 개선을 요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점이 지난 1997년 3월 26일의 감리업무규정 개정시 반영되었다. 즉 부채비율이 동업종에서 가장 높은 회사 또는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 감리를 거치지 않고 상장된 회사등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회사는 표본추출에 관계없이 감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필수감리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회사들(장기간 감리를 받지 아니한 회사등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회사)은 따로 묶어 표본추출을 함으로써 우선 감리의 대상으로 삼았고, 기타 나머지 회사들은 예전과 같이 표본추출에 의해 선정된 회사에 대해 일반감리를 실시키로 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모든 감사보고서를 감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회사들이 보다 감리를 자주 받을 수 있도록 체제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최근 증권감독원에 의한 감리결과를 보면 감리 지적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로서 당분간 감리의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증권감독원에 의한 감사보고서 감리(특히 실제조사)의 강화를 위한 예산증액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현재 상장기업의 감사보고서 감리시 서면감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감사보고서 감리시 서면감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존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 자료요청 등 - 보다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새롭고 보다 효율적인 감리기법의 개발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감사보고서 감리시 실지감리를 확대강화하고, 회사 및 관련회사 등에 대한 실지조사도 대폭 늘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인과 관련기업에 대해 얼마나 또 언제까지 실지감리와 실지조사의 비중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은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의 정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만약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의 정도가 우리 사회가 용인할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굳이 감사보고서 감리에 실지감리와 실지조사 강화라는 값비싼 방법을 대폭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예전에는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등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지난 1997년 3월 26일에 개정된 감리업무규정 내용을 보면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의 구체적인 사실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지한 회사와, 검찰등 공공기관과 주거래 은행등 주요 이해관계인이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를 이유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리를 요청한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특별감리의 실시를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특별감리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만큼 투명성이 제고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한편 외부로부터 중대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제보 내지 정보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특별감리를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실시해서는 안되겠지만 때로는 특별감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의 존재나 관련 증빙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주어진 정보나 주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SEC는 일반적으로 사기를 포함한 재무공시 위반에 대한 검사를 행하는데, 이러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원의 하나로서 『사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를 들고 있으며 이러한 사적정보가 전체 정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부록: 『SEC의 회계 및 감사관련 강제조치』를 참조할 것).

○ 부정적발에 대한 감리강화: 미래의 회계감사분야로서 주목받는 분야중의 하나는 부정이나 변칙거래를 적발할 수 있는 감사기법의 개발이다. 감사인이나 관련 전문직단체들은 비록 부정적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각국의 관련법규들은 오히려 이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이 감사인의 책임을 묻는 소송도 증가하는 경향이다(이효익, 67-68).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회제도나 내부감사제도, 소액주주의 권한등이 제대로 주어진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대부분의 기업경영의사결정이 사장 단독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하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정을 저지르기가 쉽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감사가 특별히 중요성을 띄우게 된다. 한편 부정적발을 위하여는 공인회계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공인회계사들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된 시간내에 감사를 마쳐야 하는 등의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부정적발과 관련하여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과도기적으로 증권감독원에서 주도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향후 증권감독원 감리국에서는 경영자에 의한 부정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리시 적극적으로 부정적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이사회제도, 내부감사제도, 소액주주의 견제력등이 충분히 강화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부정적발을 위하여는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부정적발을 위해 외부로부터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든지, 감사국이나 국세청, 그리고 여타 금융기관등과 효율적인 공조체제를 확립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다.

○ 현재 신규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부실기업이 상장되지 않도록 엄격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상장 직전년도에 증권감독원에서 감사인을 지정하고 특별감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관과 김문철(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익조종이 상장전년도가 아닌 상장연도와 상장직후 연도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감독정책은 상장전보다 상장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거나 아니면 상장전부터 상장후까지 연장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Kosdaq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배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공인회계사회 자율감리에 대한 감독강화:

현재 증권감독원의 인원으로는 감리능력에 한계가 있어 종전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는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자율적으로 감리토록 하였으나, 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함에 따라 그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인회계사 감리위원회에 교수등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감리위원회의 의결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으며 감리위원회위원은 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

써 자율감리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이와함께 자율감리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증권위가 징수하던 감리수수료를 공인회계사회에서 징수토록 하였다.

그러나 자율감리 자체는 좋으나 이에선 상당한 감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공인회계사 감리결과에 대해 증권감독원의 적절한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증권감독원의 감독은 모든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범위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Kosdaq 시장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회사들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감원 감리부의 감독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상호감리제도 도입의 검토

○ 증권감독원의 제한된 인원으로 감리를 폭넓게 실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식의 상호감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상호감리제도를 채택할 경우 현업공인회계사들의 전문성을 활용 할 수 있으며, 자율규제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증권감독원은 현재와 같이 직접 조직감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회계사회의 자율감리기구에 의한 감리활동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한편 증권감독원에서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강화를 통해 경영자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에 대한 적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점은 상호감리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예를 보면 상호

감리제도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제도의 도입전에 그 유용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미국의 상호감리제도는 (부록: 미국의 상호감리제도)를 참조.

○ 만약 중장기적으로 미국식의 상호감리제도(peer review)가 도입되어야 한다면, 단기적으로 우선 미국의 POB(public oversight board)와 유사한 의결기구를 만들고, 그 밑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현재의 공인회계사회내의 상임감리역들과 감독원 감리국요원들이 임용 또는 파견되는 형식으로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감리기능의 집중강화를 피하며 감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향후 감리제도가 공적감리에서 민간감리위주로 넘어갈 때까지 임시적으로 감리강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나중에 민간감리체제로 넘어갈 때 하나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이혜영(1991, p.54)도 이와 비슷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1)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리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감리경험이 많은 소수 정예로 편성한 후 감리계획 및 지침작성의무와 감리업무전반에 대한 감독기능만을 수행하고 2) 증권관리위원회, 공인회계사 업계, 학계, 기업계 등을 망라한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설감리업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미국의 POB감리제도 참조) 이기구가 제반 감사업무에 관련된 실무지침을 제정(중요한 사항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 하도록 하고, 3) 동 기구는 현재 감리국이 수행중인 감사결과에 대한 감리와 조직감리업무 등 모든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되, 감사결과(감사보고서 및 조서)에 대한 감리와 감사인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아울러 상호감리제도를 권장하며, 4) 동기구에 참여하는 각계 대표들은 유급상임위원으로 재임하되, 증권위의 인사권이 배제되고 공인회계사업계와 기업계의 대표는 신분상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재임기간동안 겸업을 금지하며, 아울러 모든 소속 감리 실무요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동기구가 보유함과 동시에

신분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5)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폐지하고 동기구는 감사인 자체감리제도를 강화 감독하며, 6) 증권감리위원회는 동기구의 감리업무에 관한 감사권과 정보등에 의한 부실감사 사례에 대한 특별감리권만 부여하도록 한다.

라. 감리결과에 대한 처벌 강화

지난 1997년 3월 26일의 감리업무규정 개정시 감리결과 사후적으로 부실감사가 적발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수단을 다양화하였다. 분식회계 정도에 따라 감사인 지정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하고, 흑자분식회사 감사인에게는 업무정지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납부등의 조치를 신설하였다. 특히 감리결과에 따라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 피감사회사에 대한 고발조치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감사인의 공정한 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4년 이하, 3천만원 이하로 강화하였다.

따라서 규정상으로는 처벌내용이 명문화를 통해 더욱 명료화되고 강화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한편 예전에도 나름대로 강한 처벌이 전연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처벌 관련 규정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에는 감사인은 물론 피감사인의 부실 회계 및 감사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의 제정 및 집행을 통해 회계부정의 사전예방이라는 감리의 예방적기능이 보다 강화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현시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피감사인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적발당시 유가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기업에게는 제재의 의미가 없고, 관련임원을 해임 건의할 수 있으나 해임된 임원이 임원대우를 받는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 따라서 유가증권발행제한기간을 늘리는 방안(예 2년)이나, 관련임직원이 당해 회사는 물론 일정기간(예, 향후 5년 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영구히) 같은 계열회사 및 하청회사 등에서도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이중 유가증권 발행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경영자의 잘못에 대해 회사를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효과가 기타 주주나 채권자에게도 미치므로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보다는 부정 내지 부식회계라는 잘못을 저지른 직접적인 관계자와 이에 대해 직간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는 이사나 감사에 대한 처벌을 실효성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책임자들의 개인재산에 대한 민사벌을 강화하고, 형사고발을 강화하는 방안, 공공법인으로올 구체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⁶⁾.

6) Pincus등은 『사기적 재무보고에 대한 전국위원회』의 부탁으로 사기적 재무보고를 방지하기 위한 SEC의 역할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며, 이 연구보고서는 1987년에 발간되었다. 이 연구는 기존문헌조사는 물론 1150명을 대상으로 한 썬데이, 그리고 20명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도 포함한다. 썬데이와 인터뷰 결과중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은 첫째, 사기방지, 발견, 그리고 감시 및 처벌과 관련된 SEC의 현재의 정책과 업무수행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효과적이라는 것, 둘째, 사기적 재무보고와 관련된 경영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관련자의 공개기업취업의 영원한 금지포함)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주식이 공중에 분산된 회사들(all publicly held companies)은 모두 외부이사수가 과반수인 감사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둘째, 감리결과 드러난 회계분식사실을 주총에서 보고토록 조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셋째, 회계법인의 평가시 『감리결과』에 대한 평가배점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 전문감리심의기구의 필요

현재 감리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감리제도 운영체제를 보면 외부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체계 개편후에는 감리지적 및 조치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종결짓게 되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인적구성이나 방대한 업무량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이전에 외부감사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기능이 제대로 행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감리지적 사항의 타당성 심사는 감사인, 회사의 이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회계기준의 전문적 해석과 적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하다.

따라서 어려운 사안이나 분쟁의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상임 외부전문가가 상당수 참여하는 전문심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IX.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회계감사산업도 다른 여타 산업과 같이 건전한 경쟁은 도모하되, 시장실패를 야기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감시감독체제의 정립은 필요하다고 말할수 있다. 한편 회계감사품질이란 결국 이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감사품질 수준으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때, 회계감사업계에서의 경쟁의 중요성은 다른 업계에서의 경쟁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감사인간에 감사품질의 차이가 없다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 산업에 비해 볼 때 품질에 의한 차별화에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경쟁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수 있지만 회계감사업은 감사품질이 쉽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독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잘 발달된 소송문화, SEC에 의한 회계 및 감사에 대한 규제, 회계법인에 의한 자체심리와 미국공인회계사회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상호감리제도등이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인 감독체제를 이루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기업경영투명성이 낮고 이에 따라 회계부정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감독체제는 아직 잘 갖추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일정기간동안은 감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체제는 부족하지만 한편 각종 회계감사관련 규제는 외국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감사보수에 대한 규제, 감사업무 수입한도에 대한 규제, 감사인 지정에 대한 규제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게 규제가 많으면서도 여전히 한국의 회계감사

품질이 제대로 신뢰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은 규제가 적절치 않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하며 중복적인 의미의 규제는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감사보수상한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수임한도에 대한 규제도 없애는 것이 좋다고 본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당분간의 존속시키되 중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줄여나가야 함을 물론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하면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과제들이 많이 있는바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조만간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첫째, 우리나라 감사시간이나 감사보수가 외국과 비교하여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최창규(1996)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의 감사시간을 상호비교하였는데 상장중소기업을 놓고 볼 때, 한국이 평균 400시간, 미국이 600시간, 일본이 600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 대기업에 대한 분석은 상장기업 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분석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감사시간은 물론 감사보수에 대한 좀더 자세한 비교자료와 자료의 분석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수는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적고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좀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감사보수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국내 감사시장규모에 비해 감사인이 과다하게 많기 때문인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공인회계사수가 절대적으로 현재보다 많이 늘어나야 한다면 과연 최소한 어느정도 더 늘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본 논문에서는 회계감사인들이 향후 수익원 다변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현재 회계감사인들의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단순히 감사수수료를 인상하는 것 외에도 회계감사업무의 다변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Sundem과 Elliott(1996)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참조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 · · 감사인들은 회계사들이 만드는 새로운 정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확장은 다음의 하나로부터 일어나는 상대적인 비교우위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 (1) 표본감사기술; (2) 보고와 관련된 기준이나 규제에 관한 지식; (3) 많은 회사들의 실무에 관한 지식; (4)평판; (5)어느 특정 고객에 관한 상세한 정보.

이러한 비교우위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1) 보고서가 아니라 씨시스템의 감사; (2)비재무적 정보의 감사; (3)필요하기는 하지만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의 감사.

감사인들은 이미 일정한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이 비교우위를 갖고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실적감사(Performance Audit), 벤치마킹(benchmarking), M & A 서비스등이다(p. 13). 여기서 벤치마킹이란 경영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한다는 것이다. 즉 감사인은 많은 고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자들이 그들의 운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수 있다.

한편 감사인의 평판에 해를 끼칠 위험이 크므로 아예 피하거나 신중해야 할 분야로는 광고업, 인사관련서비스, 투자서비스, 체제개발등이다(p. 13). 고급직원의 소개등 인사관련서비스는 비교우위가 있지만 감사인평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투자서비스나 체제개발분야는 감사인들이 업무를 확장해 나갈수 있는 다른 영역들을 고려해 볼 때, 비교우위가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pp. 60-61) · · ·

(부록 1) 일본의 표준보수규정

1. 법정감사보수

(1) 감사보수는 원칙으로서 기본보수와 집행보수로 나뉘어진다.

(2) 기본보수는 1사업년도마다 감사보고서 작성료를 포함한다.

- 증권거래소 제1부 상장회사 890만엔
- 증권거래소 제2부 상장회사 610만엔
- 기타 510만엔

을 기준으로 한다. 단 요금금액의 상하 15%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3) 집행보수는

① 감사책임자

1사업년도마다 220만엔

감사책임자가 복수일 경우 1인분을 220만엔으로하며 해당 책임자의 집무일수가 1사업년도마다 2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집무일수는 하루마다 79,500엔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타 감사책임자는 집행일수에 하루마다 79,500엔을 더한 금액임.

② 감사보조자

감사를 위해 조사한 일수에 대응하여
1일마다

공인회계사 79,500엔

회계사보 49,000엔

을 기준으로 한다.

(4)기타

① 감사보수지불방법은 당사자 협의하에 정한다.

② 출장의 경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일수로부터 집행일 수를 공제한 일수에 상응하여 일당을 받는 것으로 한다. 하루를 채우지 않은

경우 1일로 하고 일당금액은 집행보수의 50%이상으로한다.

③ 출장시 요구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사료는 회사가 부담한다.

(주 1-1) I-2의 기본보수는 반년결산회사에 있어서는 1사업년도 마다 감사보고서 작성료를 포함하는데 있어서

- 증권거래소 제1부상장회사 500만엔
- 증권거래소 제2부상장회사 345만엔
- 기타 295만엔을 기준으로한다.

(주 1-2) 연결재무제표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협의상 I-2의 기본보수의 기준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주 1-3) 기타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 그 규모등이 상장회사에 상당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I-2의 기본보수는 상장회사의 금액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주2) I-3 (1)의 감사책임자의 감사보수는 반년결산에 있어서는 1사업년도마다 134만엔이다. 감사책임자가 복수의 경우 1인분을 134만엔으로하고 해당책임자의 집행일수가 1 사업년도마다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1일마다, 79,500엔을 곱하여 가산하며 기타감사책임자는 집행일수에 1일마다 79,500엔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한다.

(주3) II-2 및 3의 출장은 피감사회사의 본점소재지(주로 감사를 받는 장소가 본점 이외의 경우에 그 소재지)외에 주실사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감사인의 사무소가 본점소재지보다 원격지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에 의해 감사인의 사무소소재지외에 주로 조사한 장소를 출장으로 취급할 수 있다.

(주4) 집행일수중에는 회계사무소에 의한 사무처리일수(往査일수의 15%범위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공인회계사보수규정

제1조(목적)

1. 일본공인회계사회칙 제82조의 규정에 근거 회원이 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보수에 관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다.

2. 본규정은 보수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것을 그 액의 결정원칙으로 본다.

제2조(보수의 종류)

1. 보수는 기본보수, 집행보수, 상담료 및 고문료로 구성된다.
2. 전항의 보수이외에 출장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제3조(착수금)

착수금은 계약에 의한 보수액의 1/2이내에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제4조(해약의 경우 착수금 및 보수액)

1. 착수전 위약자에 의한 해약의 경우 전항에 의해 수령한 착수금은 그것을 반환하지 않는다.
2. 착수후에 위와 동일한 사항에 의한 해약의 경우 계약한 보수액 전액을 청구하여 받는다.

제5조(보수액)

1. 제2조의 보수액은 별표의 공인회계사보수기준이 통용된다.
2. 계약수령자가 받을 보수액은 수령자가 행한업무와 관련된 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공인회계사보수기준

3.1 기본보수(별도로 직무보수를 받음)

(1) 재무서류감사증명

1사업년도마다

총자산액	보수액
1억엔미만	310만엔이상
1억엔이상	425만엔이상
3억엔이상	485만엔이상
5억엔이상	605만엔이상

20억엔이상	730만엔이상
50억엔이상	885만엔이상
100억엔이상	1,135만엔이상
300억엔이상	1,435만엔이상
500억엔이상	1,925만엔이상

(주) 증자 등의 재무계산관련서류 감사증명에 관해서는 별도로 상기보 수액을 참조하여 협의결정한다.

(2) 재무서류작성

1건마다	총자산액	보수액
	1억엔미만	85만엔이상
	1억엔이상	125만엔이상
	3억엔이상	145만엔이상
	5억엔이상	165만엔이상
	10억엔이상	210만엔이상
	50억엔이상	265만엔이상

(3) 재무관련조사

① 개별조사

조사대상의 자산 또는 할인액	보수액
5천만엔미만	70만엔이상
5천만엔이상	85만엔이상
1억엔이상	125만엔이상
3억엔이상	165만엔이상
5억엔이상	200만엔이상
10억엔이상	210만엔이상
30억엔이상	225만엔이상
50억엔이상	310만엔이상
100억엔이상	375만엔이상

② 總合조사

(재판소 및 이해관계인의 위임에 의한 기업재정 및 수익상황의 조사의 조사 등을 칭한다.) 재무서류 감사증명있에서 기준이 된다.

(4) 재무관련입안

자본금	보수액
5천만엔미만	165만엔이상
5천만엔이상	200만엔이상
1억엔이상	225만엔이상
3억엔이상	310만엔이상
5억엔이상	395만엔이상
10억엔이상	515만엔이상
50억엔이상	780만엔이상

사업종류 또는 공장, 사무소등이 많은 경우 및 입안효과에 관한 지도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협의결정한 사항으로 한다.

(5) 전각항에 언급된 업무이외의 업무(전자계산기회계업무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결정한다.

3.2 집행업무

책임자	집행일수 1일마다	10만5천5백엔이상
보조자인 공인회계사	집행일수 1일마다	8만8천엔이상
회계사보	집행일수 1일마다	5만8천엔이상

집행일수에는 회계사무소에 있어서의 해당사무처리를 포함한다.

기본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5할부터 10할까지의 범위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3.3 상담료

1. 구두에 의한 것	1건마다	8만7천엔이상
2. 서면에 의한 것	1건마다	35만엔이상

서면에 의한 것은 타이핑료와 기타 상담료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상담의 내용에 관해서는 집행일수에 의한 보수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3.4 고문료

계약기간은 1년이상시 월액은

자본금	보수액
1천만엔미만	29만엔이상
1천만엔이상	33만엔이상
5천만엔이상	40만엔이상
1억엔이상	48만엔이상
3억엔이상	53만엔이상
5억엔이상	62만엔이상
10억엔이상	71만엔이상

3.5 출장료

교통비, 숙박비 및 식사료

실비

일당

집행보수의 50%이상

일당계산의 일수는 집행일수 이외에 시행 및 체재일수를 포함하며 하루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 하루로 본다.

(주1)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재무서류의 감사증명관련 보수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보수에 있어서 별도로 정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주2) 학교법인,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의 투자를 받은 회사, 상품거래원, 노동조합 및 재단법인일본체육협회가맹단체등의 재무서류의 감사증명에 관해서는 다음의 표(‘생략하였음’)를 참조

(부록 2) SEC의 회계와 감사에 관한 조사

SEC는 등록법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회계 및 관련 회계감사에 대한 조사를 행하며, 조사결과 재무공시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Pincus, Holder, and Mock (1988, p. 45)에 의하면 SEC는 이러한 조사를 위해 여러 분야로부터 조사의 실마리를 부여하는 정보를 얻는다: (1) AMEX, NYSE, NASD의 시장조사 프로그램; (2) 공중의 불만, 다른 법률시행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언론기관에 의해 보도되는 재무정보; (3) 1933년과 1934년 증권법에 의해 제출되는 서류의 검토. SEC는 공식적인 조사에 이르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정보의 근원에 대해 언급하는 법이 거의 없다. 그런데 로버트 색(Former Chief Accountant of the Enforcement Division of the SEC)은 1991년 8월 Nashville에서 열린 미국회계학회 SEC 계속교육분과에서 이러한 정보의 근원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SEC가 50%의 정보를 재무제표와 유가증권 관련서류의 검토(review of financial statements and securities offerings)로부터 얻고, 1/3정도는 재무에 관한 언론보도로부터 얻으며, 나머지는 사적으로 주어지는 정보(tips)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보에 의해 조사를 행한 결과 공시위반사항이 드러나면 SEC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SEC는 회계 및 감사관련 강제조치의 내용을 ‘회계 및 감사 강제조치(AAERs: Accounting and Auditing Enforcement Releases)’에 공시를 한다. Feroz등(1991)은 1982년 4월에서 1989년 4월사이에 발표된 224개의 AAERs를 조사하였는데 여기에는 총 188개 회사의 재무공시 위반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재무공시위반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사기(Fraud)의 경우, 사기는 아니지만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Reckless Disclosure), 그리고 사기에 해당하거나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회계적인 논쟁(Accounting Dispute)의 여지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진다.

SEC가 취하는 조치의 내용은 공시위반사항이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즉 회계나 공시와 관련하여 부정이 개입되었을 경우, SEC는 대상 회사나 개인을 대상으로 민사적인 행동(civil action)을 취하게 된다. 이 경우 경영자들은 비록 공식적으로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사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금지명령에 따를 것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보도한다. 또한 SEC가 이러한 일들을 민사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수집하게 된 각종 정보는 나중에 형사적인 재판에 있어서 사용되기도 한다.

사기외에, SEC는 기업이 보고나 회계기록과 관련된 증권법상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다. Sack(1988)에 의하면 SEC는 기업의 행위가 부정(fraud)은 아니지만 무모(recklessness)하다고 판단될 때 민사소송을 통한 법원의 금지명령을 추구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영자에 의한 무모함(recklessness) 또는 상당한 주의의무위반(gross negligence)은 연방증권법에 따라 제3자에게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SEC의 조사결과 부정이나 무모함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공시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SEC는 회사로 하여금 공시위반사항을 수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는 등의 행정적인 조치(Administrative Proceedings)를 취하거나, 회사의 회계 및 공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료(Exchange Act Releases)를 발표한다.

SEC에 의해 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 먼저 시장주가반응을 보면 보고기준 위반을 공시한 날과 다음날에 걸쳐 2일간 -13%의 비정상수익율을 나타내었으며, 뒤이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는 공시에도 추가적으로 -6%의 비정상수익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재무보고위반사실이 공시되면 기업이이익예측자들은 당해기업의 미래이익예상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다른 효과도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계 및 공시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일차적으로 SEC는 위반회사의 경영자로 하여금 향후에는 증권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금지명령에 동의토록 유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뒤이어 72%의 경우 경영자가 해고되었으며, 81%의 경우 주주들로부터의 소송이 뒤따랐다. 그리고 42%의 경우 SEC는 위반회사를 감사한 감사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였다. 회계감사와 관련된 SEC의 강제행위는, 감사인들로 하여금 GAAP나 GAAS를 보다 신중하게 적용토록 요구하는 경고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감사인이 보고위반을 드러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SEC는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SEC Practice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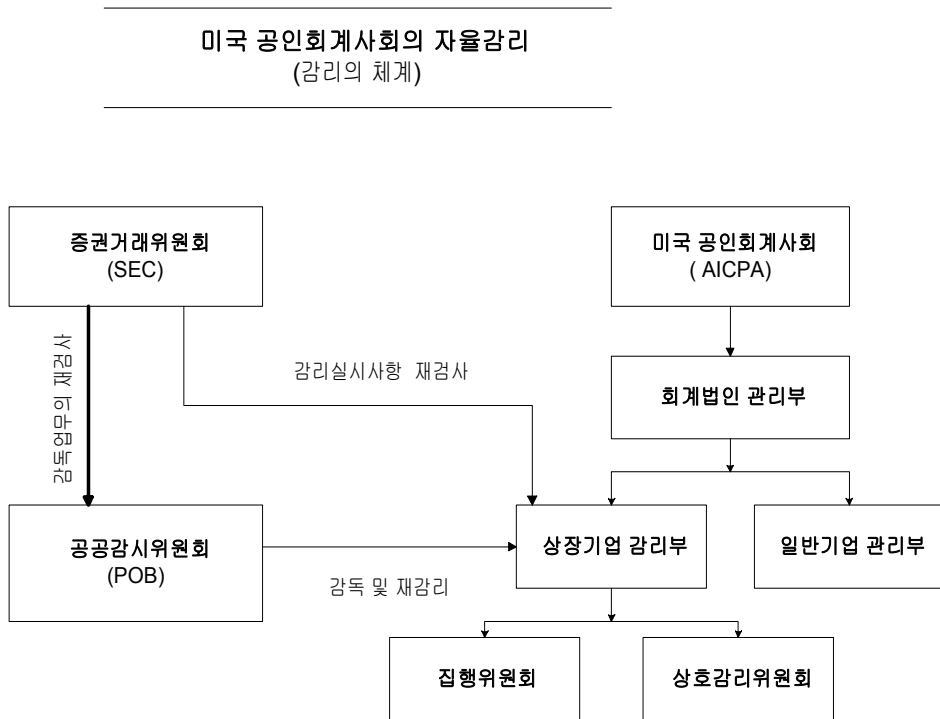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경영자들은 SEC의 조사를 모면하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를 갖게 된다.

(부록 3) 美國의 監理制度

미국의 감리체계는 상호감리(Peer Review), 공공감독위원회감리(POB Review), 증권거래위원회감리(SEC Review)등의 외부감리가 있고, 이밖에도 회계법인내부의 자체감리가 있다.

I. 美國 公認會計士會의 自律監理

1. 상호감리체제



2. 監理實施 方法

- 監理는 회원제에 의해 운영되며 미국 공인회계사회의 회원가입 여부는 자유이나 가입후에는 3년에 1회이상 반드시 감리를 받아야 함.
- 피감리법인은 다음 3가지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수감
 - ① 상호감리위원회가 감리요원을 선정하여 감리팀 지명
 - ② 회계법인간 계열에 의해 감리팀 구성
 - ③ 상호감리위원회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감리연합회에 의한 감리 (감리연합회: 여러 회계법인이 모여서 조직한 연합회)

3. 監理實施 內容

- 감사인이 수립하고 있는 질적관리 정책 및 절차가 공인회계사회 내의 질적관리기준위원회가 정한 “質的管理基準” 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검토
 - ※ 質的管理基準 (Quality Control Standards)의 重要 要素
 - 신규감사의 수락 및 계속감시여부
 - 채용 및 교육
 - 감독체계
 - 독립성 유지
 - 업무의 할당
- 규정된 질적관리제도를 준수하여 감사업무가 실시되는지 여부검토
 - 試査에 의하여 피감사회사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

4. 監理結果 處理

- 감리팀은 감리실시 결과의 평가에 따라 意見(適正, 限定, 不適正)을 표명한 “監理報告書” 와 의견표명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서한” (Letter of comment)를 작성하여 피감리법인과 상호감리위원회에 제출함.

- 동 “건의서한” 에 대하여 피감리법인은 향후의 처리방침을 감리팀에게 통보하여야 함.
- 相互監理委員會는 감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함
 - 감리보고서에 대한 상호감리위원회의 심의
 - 감리보고서를 POB 및 SEC에 통보
 - 감리관계자료의 공시
- 執行委員會는 회계법인이 회원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제재를 함.

○ 시정조치	○ 경고, 견책, 징계
○ 전문교육 부과	○ 벌과금 부과
○ 특별상호감리	○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II. 公共監理委員會(POB)에 의한 감리

POB는 전직 공무원, 변호사, 은행가, 증권회사직원, 대학교수, 회사중역등 학식과 명성을 갖춘 인사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수명의 스태프가 있다. 스태프는 주로 공인회계사로 구성되며,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임시로 고용할 수도 있다. POB는 감리과에 설치되지만 회계업계와는 관련이 없는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감리과와 동 집행위원회 및 상호감리위원회의 모든 업무실시사항을 감독하며, 감리실시에 대한 재검토를 담당함으로써 자율감리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POB의 감독기능은 사전적인 감독기능과 사후적인 감독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적인 감독기능은 POB의 스태프, SEC와 감리과 직원들과의 회의를 비롯하여 SEC감리과 및 집행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각종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진행사항을 참관하고, 그 결과를 월 1회 개최되는 POB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한편, 사후적 감독기능은 POB가 감리실시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감리

결과중 일부를 추출하여 감리과정의 적정성 및 감리팀의 감리의견표명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POB의 재검토과정은 감리보고서 및 감리개요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피감리법인의 규모가 크거나 감리결과가 일정수준이하의 많은 결함을 갖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감리조서 및 기타 관련 문서를 재검토할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이 피감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한 후에 POB는 검토결과에 대한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다. 또한 POB는 감사인의 활동을 재검토(현장감리, 감사조서 감리, 감사보고서 감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년 1회 美國議會에 보고함.

III. 證券去來委員會의 公的監理

1. 自律監理에 대한 재검토

- SEC는 AICPA에 의한 자율규제기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서, 회계 감사인에 대한 규제는 공익의 관점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회계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특정기구에 전적인 규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자율규제기구의 운영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혜영, 1991.11. pp. 23-25).
 - 감리실시를 위하여 통일적인 기준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 기준은 회계법인의 질적 통제의 검증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감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할수 있어야 하며 대중의 신뢰를 확보할수 있어야 한다.
 - 감리기준은 감리실시결과가 POB 및 SEC에 보고되어 계획의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SEC는 이러한 방침에 의거 자율기구에 의해 수행된 감리실시사항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동 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적인 감리, 감독기능을 담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 SEC수석공인회계사실(Office of Chief Accountant)에서는 공인회

계사회로부터 제출받은 (組織)監理報告書を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再檢査를 실시함.

- 또한 SEC는 POB가 제출한 POB의 재감리 결과중 일부를 추출하여 監理狀況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함.

2. 公示資料에 대한 直接監理

- SEC에 제출된 재무서류나 감사보고서를 직접감리하여 하자나 문제점이 있는 경우 당해 회사 및 감사인을 조사함.
 - 상장기업의 년차보고서, 감사보고서 검토·조사
 - 상장신청서 재무서류 검토·조사

3. 違反事項에 대한 措置

- 회사에 대한 조치
 - 신고서 효력발생 중지
 - 상장신청 중지
 - 증권거래 중지
 - 공시명령
- 감사인에 대한 조치
 - SEC관련 업무제한
 - 회계사회에 대한 징계요구
 - 자격정지 또는 박탈
 - 명령, 경고

참고문헌

- 권수영·최창규, “한·미·일 감사실무 차이에 관한 연구”, 고대 경영연구소, 1998.1
- 김경호, “시장경제체제의 튼튼한 하부구조 구축을 위해”, 『상장협』, 1997 춘계호
- 김일섭,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88. 11), pp. 84-100
- 원정연, “증권감독원 감리제도 운영방향”, 『월간공인회계사』, 1996. 11
- 윤계섭, “우리나라공인회계사제도의개선방안연구”, 『월간공인회계사』, 1995. 1
- 윤종안, “외부감사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운영방안”, 『상장협』, 1988.
- 이강수, “공인회계사제도의 발전방향”, 『회계』 제 27호, 한국공인회계사회(1991), pp. 10-29
- 이대선, “현행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감사환경과 감사인의 역할에 관한 국제학술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2
- 이만우, 『회계감사의 사회적 기능』, 1992, 고대출판부
- 이혜영, 『감리실태분석을 통한 회계감사업무의 질 향상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11. pp. 23-25
- 장지인·김정국, 『한국회계기준의 개선』, 한국증권연구원, 1998

- 정규언, “감사수입제도와 감사품질”, 『회계』 제 29호, 1993, pp. 43-50
- 정문중·이재맹, “회계감사 품직대용치와 산업별 전문감사인: 우리 회계감사시장의 현황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1996.12
- 조익순, “외부감사등의 효율화를 위한 감사인조직 개선방안”, 『상장협』, 1988
- 조장연, “감사수입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미발표논문, 1997, 12
- 주인기·최관, “외부감사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미발표논문, 1997, 12
- 최관.김문철,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22권 제2호, 1997년 6월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계주요국가의 회계감사 관련제도에 관한 조사보고서』, 1995. 1
- 한봉희, “국내자본시장에서 회계이익정보의 유용성 향상 여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 February 1997”, Working Paper(Research Paper No. 97-3-8)
- 한일, 『감사인지정제도가 회계감사의 질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Ball, R. and P. Brown, 1968, "An Empirical Evaluation of Accounting Income Number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6(Autumn): 159-178
- Feroz, Ehsan H., Kyungjoo Park and Victor S. Pastena, "The

- Financial and Market Effects of the SEC's Accounting and Auditing Enforcement Releas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29 Supplement, 1991
- Francis, J. and K. Schipper, 1996, "Have Financial Statements Lost Their Relevance?",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hicago(February)
- Pincus, K., W. H. Holder, and T. J. Mock, *Reducing the incidence of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The Role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and Financial Reporting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88
- Sack, R. J., "Policing the Erosion of Accounting Principles.", in Proceedings of the Third De Paul University School of Accountancy Research Symposium, pp. 175-94, Chicago: De Paul University, 1988
- Sundem, G. L., Roland E. Dukes, and John A. Elliott, *The Value of Information and Audits*, December, 1996
- Walker, K. B. and Eric N. Johnson, "A Review and Synthesis of Research on Supplier Concentration, Quality and Fee Structure in Non-U.S. Markets for Auditor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Vol. 31, No. 1, 1996

제 3부

회계기준 설정체제에 관한 연구

1998. 3

I. 서 론

그동안 회계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회계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본시장과 기타 여러 산업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를 포함한 많은 변화, 발전에 걸맞게 정비된 회계정보체제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회계관련 연구기관을 만드는 경우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다. 가장 중요한 요인들중의 하나는 회계연구원과 회계기준의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간의 관계정립이다. 두 기관간의 관계는 예를 들어 일본에서와 같이 상대적으로 서로 독립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와는 달리 미국에서와 같이 두 기관이 하나의 실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회계연구원을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먼저 회계연구원과 회계기준 제·개정 기관간의 상호관계 정립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관계는 궁극적으로는 회계기준 제·개정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회계기준이 민간주도로 만들어지느냐 또는 정부주도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회계기준제정기관의 운용형태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회계연구원의 형태나 기대역할이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회계연구원설립이라는 문제는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제개정 관련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좁게는 회계연구원설립과 관련하여 회계연구원과 회계기준 제개정 기관과의 관계는 어떠한 해야 하고, 회계연구원은 어떠한 형태로 조직되며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과연 회계기준을 올바로 설정키 위해서는 여러 관련 기관들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회계기준설정체제에 대한 문제의 검토도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우선 제 II장에서는 회계기준 설정환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회계의 목적이라든지 회계기준설정기구의 운영체제 등 회계기준설정환경은 나라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영미형과 대륙형의 두가지 부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회계기준설정에 관한 국제적 환경의 이해는 향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설정환경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성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회계기준설정에 민간부문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회계기준설정환경을 결정짓는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므로 이 문제는 좀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제 III장에서는 외국 회계기준설정기구의 현황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미계 3개국(미국, 영국, 호주)과 대륙계 3개국(프랑스, 독일, 일본)등 6개국에 있어서 회계기준 설정기구의 운용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IV장에서는 한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에 대한 설명 및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연이어 제 V장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설정체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기타 회계연구원의 설립목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안 등도 본장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 VI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검토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회계기준 설정환경의 이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회계기준설정체제(회계연구원 포함)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계기준설정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회계기준 설정기관이라는 것도 결국 넓은 의미에서 회계기준설정환경에 포함되는 것이며, 기타의 환경요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 먼저 회계환경의 국제적 차이를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본 후, 우리의 회계환경은 향후 대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지에 대한 예상을 해 보기로 한다.

1. 국가간 회계기준 설정환경의 차이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하게 되는 중요한 준거기준이나 회계기준 설정기관의 운용형태 등 회계기준 설정환경은 국가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설정환경은 대체적으로 나라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대륙형』과 『영·미형』이다. Clark(1997, pp. 7-8)은 두 부류간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대륙형』 부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직접금융보다는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국가들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회계기준은 조세적인 측면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며, 세수와 관련이 되므로 관습적으로 회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법 체계내에 포함되어 있다. 조세시스템은 특히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종 조세시스템은, 동일한 측정방법이 일반적인 회계보고 목적상으로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업들에게 조세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의 관대한 측정방법을 허용하기도 한다. 기업들은 조세시스템이 정한 회계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조세상의 특혜를 이용하고자 하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되는데 조세는 실제로 현금의 유출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회계처리는 종종 소액주식투자자들에게 투명한 기업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대주주는 별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기업자금의 주요제공자는 사적계약을 통해 정보도 제공받고 경영에도 참여하는 등 투자를 한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긴밀한 관계속에서는 회계투명성의 결여는 그리 중요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정이 변해 가고 있다. 현대의 기업들은 거대한 자금의 조달, 보다 효율적으로 분산된 운영, 자금조달의 헛지등을 위해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륙형』 부류의 주요국가들로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있다.

『영·미형』 부류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주식을 통한 자본조달이 더욱 중요시되며, 세계상의 혜택은 꼭 회계처리방법을 건드리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처리방법은 조세에 좌우되지 않으며, 관습법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의 설정권한이 민간부문에 이양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법정되어 있기도 하다. 주식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질을 높히려는 압력을 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계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이러한 시장압력에 대해 보다

II. 회계기준 설정환경의 이해

유연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등이 이러한 부류의 국가들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송인만과 황인태(1997, p. 14)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다소 위의 내용과 중복되는 점도 있으나 양 부류간의 차이를 매우 함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으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대륙모형**하에서는 회계제도가 법률지향적이고, 회계실무는 매우 보수적이다. 회계가 소득세액의 계산과 국가의 거시경제계획에 부응하고 있으며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에 해당하는 나라의 경우를 보면 상법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과 증권거래법의 트라이앵글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 회계는 법의 종사자라는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은 법규정 내에서 정해져 있으며 그 목적은 자본유지와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에 있다. 또한 과세소득의 계산이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명시적인 개념적 체계가 필요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미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증권시장이 잘 발달해 있으며, 그 규모도 크다. 또한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회계의 주요목적은 투자자와 채권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의사결정 유용성이 회계정보의 질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회계원칙의 설정에서의 합의주의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명백히 하고 회계가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념적 체계를 필요로 한다. 개념적 체계를 통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회피할 수 있고, 사적인 회계규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통상 사적기관이 회계기

준을 정하고 있다.

이어서 송인만과 황인태(1997, p. 14)는 우리나라의 회계제도는 이제 까지 대륙모형에 가까웠다고 볼수 있으나, 최근 증권시장의 발달로 기업의 자금조달 행태가 바뀜에 따라 영미모형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설정환경

위의 Clark와 송인만·황인태의 회계환경설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대륙형의 경우 회계의 목적이 과세이익의 계산에 있다면 영·미형의 경우에는 주식 및 채권투자자들에게 대한 정보의 제공에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의 회계환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계목적이다. 왜냐하면 회계의 목적에 따라 기타 회계환경이 결정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재무회계의 목적은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의 제공』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재무회계의 목적은 투자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의 제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회계의 목적에 관한 한 영미모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타 회계환경을 보면 대륙형에 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계규정이 법규정화 되어 있으며 회계기준의 설정이 정부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것 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회계의 목적과 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회계환경의 관계를 볼 때, 회계의 목적은 영미형

II. 회계기준 설정환경의 이해

에 속하고 회계환경은 대륙형에 속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송인만과 황인태도 지적하였지만, 향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설정환경은 점차적으로 영미모형으로 접근해 갈 것이 예상된다. 이 경우 예상되는 주요 환경변화는 다음과 같다. 즉, 회계기준설정에 있어서 투자자와 채권자의 정보요구에 보다 많은 배려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정보요구에 보다 섬세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회계개념 체계수립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의 범규정화 대신에 스테이트먼트화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또한, 보다 전문화되어 가고 복잡다단해져 가는 정보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설정에 민간부문이 현재보다는 훨씬 많이 참여하게 되며, 다양한 정보요구에 따른 이해집단간의 대립을 완화하고, 회계기준 설정이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과도하게 영향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주의나 적정 절차를 따르는 것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이상으로 회계기준 설정환경을 논의하여 보았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회계환경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회계목적과 회계환경의 관계라든지, 회계환경의 유형별 분류와 관련하여 정교한 이론적·실증적 자료의 뒷받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기존연구가 부족했다는 점도 있겠으나, 한편 회계환경이 많은 부분 관습이라든지 문화, 전통 등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환경문제를 거론해 본 이유는 회계환경의 국제적 차이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회계환경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한 향후 회계기준설정기관의 형태 등 우리의 회계환경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갈 지에 대한 방향감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설정기구(회계연구원 포함)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위의 환경에 대한 논의는 대략의 방향감을 갖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겠으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회계기준설정기구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회계기준설정기구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와 성격을 지녀야 하는가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주요국의 회계기준설정기구의 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나라가 독특한 회계체제 (Accounting System)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나라마다 회계체제가 다른 이유는 근본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Radebaugh and Gray, 1997). 이하 몇 개 주요국에 있어서의 회계기준 설정기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국가별 회계기준설정체제의 성격비교는 < 표 V-1>에 요약되어 있다. 또한 위의 국가별 회계기준설정체제를 본 보고서 맨 뒷부분에 그림으로 요약하여 놓았다<그림 V-1 - 그림 V-6>. 독일과 프랑스는 본문중에서는 설명하였으나 우리나라 회계기준 설정기관의 개선에 큰 참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표나 그림에 넣지 않았다.

1. 미국

가. 회계기준 설정기관의 발달과정

1) 1929년의 대공황 이전

1930년 이전의 미국 회계는 규제되지 않았다. 그 결과 동종 산업내에서조차도 기업간의 회계실무와 연도별 회계실무에 대한 통일성이

매우 결여된 결과를 보여왔다. 사실상 재무보고의 주된 이용자들인 은행과 채권자들에 의해 설정된 회계실무가 유일한 회계실무상의 지침이었다 (정기영, 1997).

2) 형성시기 (1930-1946)

1929년의 증권시장 붕괴 후 주식투자자들은 회계와 보고실무가 투자평가에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AICPA의 특별위원회는 증권거래소의 모든 상장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회계원칙에 대한 규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NYSE 위원회와 긴밀히 작업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AICPA 위원회의 ‘다섯개의 광범위한 회계원칙’이라는 공식적인 초안이 마련되어 1932년 9월에 NYSE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리고 1933년에 AICPA는 회계절차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 : CAP)를 창설하였다. CAP은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938년까지 이 위원회는 비교적 활동이 미약했었다.

그러다가 (1934년도에 미국국회에 의해 창설되었던) SEC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1938년 4월에 발표하였다. 즉, 만약 회계전문가가 회계기준의 수립을 위하여 어떤 권위 있는 단체를 설립하지 못한다면, SEC 자신이 SEC에 제출되는 보고서에 적용되어야 할 인정된 회계실무와 규제방법을 직접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SEC는 밝히었다 (SEC, 1938).

이러한 발표에 영향을 받아 AICPA의 회계절차위원회(CAP)는 1939년에 명백하게 ‘실질적으로 권위 있는 지지’를 지닌 회계원칙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대충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기 전까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지의 1938-1939년 사이의 2년 동안에 CAP는 12개의 회계연구공보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 ARB)를 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戰前의 활동에 대해서는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 다만 이 시기에 CAP은 매우 중요한 2가지의 공헌을 했다. 즉 첫째, 회계실무에 있어서의 통일성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둘째, 미국회계정책결정은 민간 부문에 의하여 확고하게 세워졌다는 점이다.

3) 戰後 時期 (1946-1959)

CAP은 1946년에서 1953년까지의 기간동안에 18개의 ARB를 발행하는 등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기초가 되는 회계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CAP와 SEC사이에 대립을 가져왔고, CAP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1957년에서 1959년까지가 미국회계기준의 발전에 있어서 과도기였다. CAP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반대의견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받았다. 또한 협의의 이론인 재무회계의 기본적 원칙을 발전시키지 않았고, 단편적인 접근법에 의해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특수문제해결에 주력하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AICPA의 Jennings는 1957년에 열린 정기회의 연설을 통해 회계원칙의 발전을 위해 CAP에 의해 행해진 단편적인 방법대신 개념적 접근법을 요구했다. 또 연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AICPA의 개편을 제안하였다. 비록 CAP은 이러한 비판을 받았으나 존속기간동안에 발행한 ARB는 권위 있는 원칙으로 인정되었고 회계실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4) 현대 (1959년 - 현재)

1959년에 CAP의 뒤를 이어 창설된 APB(Accounting Principles Board)는 CAP와 매우 유사하며, 18-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들은 모두 AICPA의 구성원들이었다. 위원들은 크고 작은 공인회계사 사무실, 학자, 개별기업의 대표들이었다. 의견서의 발표를 위하여 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었으며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도 수록되었다.

APB는 설립시부터 계속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비판의 근저에는 APB가 적어도 구속력 있고 수미 일관된 방법으로 기초적 공준과 광범위한 회계원칙을 설정하려는 원래 의무수행에 실패했다는 일반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APB 의견서 시안의 공개가 너무 제한되어 있고 너무 늦게 처리되고 있으며, 기준설정과정이 너무 길고 의견형성과정에 많은 외부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난의 결과로 독립성을 갖춘 FASB가 1973년도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나. 최근의 회계기준 설정 관련기관

오늘날 미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구인 FASB를 중심으로 재무회계재단(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 FAF), 재무회계기준자문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Council ; FASAC)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V-1 참조>.

1) FASB

FASB는 미국의 재무회계 및 보고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부문기관으로서 자금과 인사의 양면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조직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다. 또한 재무보고를 위한 회계기준의 설정에 있어서는 그 기본적 관점을 투자자보호에 두고 특정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정규의 절차에 기초를 둔 공개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FASB가 만드는 회계원칙과 회계기준이 기업이나 회계감사업계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권위의 근원은 SEC에 의해 부여되고 있다. SEC는 회계기준 설정권한을 부여받은 이래, 민간부문에서 실질적인 회계원칙(GAAP)을 발전시키도록 했다. 이러한 최초의 결정은 1938년 Accounting Series Release #4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ASR #4 상의 결정에 대해서, 1973년부터 1983년까지 SEC 위원으로 일했던 John R. Evans는 다음과 같은 평을 하고 있다.

· · ·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회계원칙을 발전시키도록 한 ASR No.4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능하면 언제든지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한다는 원칙의 실현인 동시에, 또한 만들어진 회계기준이 투자자보호에 적합하도록 SEC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인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과 비용으로,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회계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 .

1973년에 회계기준설정을 민간부문에 맡기기로 한 SEC의 결정은 ASR #150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FASB의 조직은 FAF 이사회에서 임명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고, 2번까지 재임이 가능하며, 상근이고 보수를 지급받는다. FASB는 이상의 7명의 위원이외에도 이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 11명의 행정요원(administrative staff)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외에 FASB는 약 50명의 FAF(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요원들의 도움을 받는다. 또한 FASB에는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약 40명의 연구요원(research staff)들이 있다.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근직원이다. 이들중 4명은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있으며, 박사학위소지자들중 2명은 CPA 자격증도 갖고 있다. 다른 모든 연구요원들은 현재 CPA 시험준비중인 4명을 제외하면 모두 CPA 자격증을 갖고 있다.

지난 1996년도중의 FASB의 연간 예산은 약 \$17 million(1998.2.20일 현재 환율 달러당 1650원 적용시 약 281억원)이었다. 한편 1984년 이래 FASB는 긴급과제대책반(EITF: Emerging Issues Task Force)을 이용하여 회계기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긴급한 회계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만들어 오고 있다. EITF는 회계법인과 대기업으로부터의 약 15명의 기술적 전문요원들로서 구성된다. 6주에 한번정도 만나서 주요 회계관련 현안들을 논의하는데 이 회의에는 SEC와 AICPA에서도 참관인을 파견하고 있다. SEC의 수석회계사(Chief Accountant)는 EITF가 채택한 동의안을 지지하며, 이에 어긋나게 회계처리 할 경우에는 문제시할 것임을 밝혔다. EITF의 동의안은 2-3명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며, 만약 동의안이 형성되지 않으면 SEC의 수석회계사가 결정을 내린다(Choi, 1977, p.2.5).

2) FAF

FAF는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 미국회계학회(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 AAA), 투자관리연구협회 (Association for Investment Management and Research ; AIMR), 재무담당중역협회 (Financial Executive Institute ; FEI), 관리회계사협회 (Institute of Management Accountants ; IMA), 증권업협회 (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 SIA), 정부재정담당자 협회(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 ; GFOA), 전미각주의 감사인, 검사인, 재무인 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uditors, Comptrollers and Treasurers ; NASACT) 등 8개의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FAF의 기능은 FASB 활동의 감시, FASB·FASAC·정부회계기준 심의회(GASB)·정부회계기준자문위원회 (GASAC) 멤버의 임명, FASB·FASAC·GASB·GASAC에의 자금조달의 준비업무등이며, 임기 3년의 무급인 16명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FAF기금의 반정도가 기업들(industry)과 금융업계(financial community)등으로부터 나오고 나머지 반의 대부분은 공인회계사업계로부터 나온다. FAF가 FASB와 GASB에 대한 예산관리를 하는데, 주된 자금원은 기부금과 자료판매수입이다. 1995년의 경우를 보면 기부금이 US\$8.5 million이고 자료판매수입이 US\$13 million이었다. 1994년과 1995년도 FAF 년차보고서에 의해 대략적인 기부비율을 계산해보면 회계업계가 50%, 산업계에서 30%, 정부와 정부관련기구에서 15%(이것은 아마도 FASB가 아니라 GASB와 관련된 기부금일것으로 추정됨), 은행과 투자회사들이 5%를 낸 것으로 되어있다.

3) FASAC

FASAC는 유가증권 발행기관, CPA, 투자자나 채권자등의 재무제표의 이용자, 연구자, 정부공무원등 재무회계 및 재무보고 문제에 정통한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FASAC의 멤버는 모두 FAF 이사회에서 임명되고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임기는 1년(4년까지 재임도 가능)인 무급의 비상근위원이다. FASAC의 기본적인 임무는 재무회계 및 재무보고기준의 설정 및 개선절차에 있어 조언을 하는 것이다. 즉 FASAC는 중요한 전문적 문제, FASB의 프로젝트의 제안 및 그 우선심의 순위의 결정, FASB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사항, Task Force의 선정 및 편성, FASB 또는 그 회장으로부터 요청된 자문사항에 대해서 FASB와 협의하는 것이다.

4)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

AICPA는 재무회계와 보고문제에 대하여 고급기술위원회를 창설하였다. 회계기준집행위원회(AcSEC)는 입장보고서(Statement of Position ; SOP)와 산업회계지침(Industry Accounting Guides ; Guides)이라는 두 개의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SOP와 Guide는 강행성을 지닌 규제적인 회계기준은 아니다. FASB는 FASB에 SOP와 Guide의 대부분을 수용하는 프로그램에 착수하였다. 한편 AICPA는 민간부문에서는 감사규칙을 공포하는 배타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다.

5) 미국증권관리위원회(SEC)

SEC는 회계기준제정에 관한 한 FASB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나 한편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민간부문에 대한 감독을 통해 회계제정과정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SEC 위원장인 John Shad가 국회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SEC는 완전공시(Full Disclosure)라는 재무보고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네가지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 회계 및 감사기준을 만드는 민간부문에 대한 감시; 필요시 기준제정에 있어 서 주도적인 역할의 수행; 리뷰 및 코멘트 절차; 각종 조치의 시행 (enforcement program).

첫째, 감시절차는 기준설정절차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다. 예를 들어 SEC 스텝은 FASB로부터 정기적으로 상태보고서(status report)를 받으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진전상황을 검토조정한다. 즉, SEC 스텝은 FASB 스텝을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이나 관심을 교환 한다. FASB가 행하는 모든 과제에는 SEC 스텝이 배정된다. 그 스텝 은 FASB 과제가 진행되면서 FASB가 외부로부터 받는 코멘트를 검토 하기도 하고 각종 회의나 공정회등에 참석하며, FASB 스텝과 의견을 나눈다. 또한 SEC 수석회계사실의 증견요원은 통상 FASB가 주관하는 각종 테스크포스팀에 참관인으로 봉사한다. 이러한 절차의 결과로서 SEC는 회계기준제정의 모든 과정에 상당부분 관여하게 된다.

둘째, SEC는 또한 민간부문에서 만든 기준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 단할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기준제정에 나서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회계문제에 대해 FASB가 대응할 수 있는 것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SEC는 통상 FASB가 문제에 대 해 대처할 시간을 갖을 때까지 회계보고상 기업들간에 통일성이나 비

교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한다. SEC에 의한 이러한 조치는 물론 민간부문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다. 예로서는, 리스회계문제를 다룬 ASR no. 147, 인플레이션 회계, 부문별 회계, 경영자보상과 같은 경영자 관련 정보공시의 강화, ASR No. 190 (replacement cost accounting)이나 ASR No. 19(oil and gas accounting)등이 있다.

셋째, SEC는 어떠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발견키 위해, 새로운 회계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SEC에 대한 보고를 향상시키기 위해 등록서류 및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서류들을 검토한다.

넷째, 다양한 조치를 통해, SEC는 증권법의 위반을 바로 잡고, 위반 사항에 대해 취한 조치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증권법의 준수를 도모해 나간다.

다. 시사점

오늘날 미국의 FASB는 민간부문에 의한 회계기준설정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주요국들의 회계기준설정기구 개선방향이 미국을 상당부분 참조하며 결정되어지고 있다. 미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구를 살펴볼 때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참조할만한 사항이 있다.

1) SEC와 FASB의 관계

SEC는 1933년과 1934년의 증권법에 의하여 회계기준을 만들 권한을 부여받았다. APB가 실패로 돌아가고 FASB가 만들어지자 SEC는 ASR No.150을 통해서, 연방증권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는 회계기준의 유일한 제정기관으로서 FASB를 인정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즉 SEC는 FASB가 만든 회계기준을 인가함으로써 그 기준에 공식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SEC가 회계기준을 직접 제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설립 초창기부터 SEC는 그 역할을 대체적으로 감독자로서의 역할에 한정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편 SEC는 제정 권한자체를 위임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 회계기준을 만듦으로써 FASB가 만든 회계기준을 부인하거나, 개정하거나, 승계시킬 수 있다는 미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SEC의 이러한 역할설정으로 인해, 회계기준제정을 민간부문에서 맡아 함으로써 예산상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민간주도형 회계기준설정체제의 각종 장점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민간의 회계기준설정기구의 의사결정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는 지속적인 견제세력으로 존재하고, 필요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SEC는 등록기업들로 하여금 회계기준의 준수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주도형 회계기준 설정체제이면서도,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감시감독은 물론 필요시 정부가 기준제정의 주도권도 행사해 나가는, 즉 민간주도형의 장점과 정부주도형의 장점이 나뉠대로 섞여 있는 것이 미국의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제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회계기준을 가능한 한 스스로 효율적으로 마련해 보고자 했던 민간부문의 노력과,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민간부문이 만든 회계기준을 가능한 한 포용하려한 SEC의 노력이 조화를 잘 이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미국의 체제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설정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참조할 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어차피 회계기준의 제정을 예산상의 문제등으로 정부부문에서 주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회계기준의 제정을 민간부문에서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부문에서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토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¹⁾ 이렇게 함으로써 관련 정부부문에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한편으로는 민간 회계기준설정기구가 만드는 회계기준이 투자자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견제세력으로 존재하고, 필요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도 있게 되는, 효율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2) 예산

미국의 회계기준 설정체제는 상당히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체제라고 볼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난 1996년도중의 FASB의 연간 예산은 약 \$17 million(약 282억원)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만한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므로 미국의 회계기준설정체제를 참조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훨씬 줄일수 있는 체제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 그러나 미국의 SEC가 FASB에 대해 행하는 감독업무의 성격은 상당히 포괄적인 것으로서, 제 3자적인 감독업무만이 아니라 FASB의 회계기준설정 업무에 상당히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영국

가. 회계기준 설정기관 발달과정

영국의 회계기준은 미국의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70년에서 1990년 사이에 ASC가 발표한 SSAPS(Statements of Standard Accounting Practice)와 1990년 이후에 ASB가 발표한 FRSs(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미국의 SFASs, APBs, 그리고 ARBs들에 비견할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회계원칙 중에는 또한 유럽공동체 지시사항(제 2, 4, 7, 8차 지시)의 실행을 위해 제정된 회사법조항들에 근거한 것도 있다. 이 회사법들은 회계 및 재무관련 보고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형식도 정하고 있다. 회계기준제정과 관련된 기관들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1)제 1기

제1기(1942 - 1969)는 각 회계단체가 독자적인 회계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했던 시기로서, 이 단계에서는 영국의 직업회계사 단체로서 가장 큰 잉글랜드·웨일즈 면허회계사협회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 ICAEW)가 1960년대까지 영국의 회계실무를 지도해 왔다.

2) 제 2기

제2기(1970 - 1990)는 영국의 주요회계사 단체가 협력하여 회계기준 설정에 관여했던 시기였다. 1970년도에 영국의 회계업계는 정부의 개입과 미국식 SEC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업계자신이 자율규제기관인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ASC)를 설립하였다. 즉 영국의 주요 6개의 회계단체가 협력하여 회계단체합동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of Accounting Bodies : CCAB)를 조직하고 CCAB관리하에 있는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 ASC)를 만들었다.

ASC의 목적은 관련된 6개의 전문집단이 채택과 시행에 책임을 지는 회계기준서(Statements of Standard Accounting Practice : SSAPs)를 만드는 것이었다. ASC는 1990년까지 약 20년간의 존립기간동안에 총 25개의 SSAPs를 만들었는데 이 기구는 존립기간 내내 규제성을 지닌 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험받았다. 그 주된 이유는 회계기준을 만드는 ASC의 권한이 결국은 기업경영자, 증권거래소, 회계법인, 기타 업종단체 등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지원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SC의 회계제정권한이 시험받은 좋은 예로는 ASC가 1980년에 발표한 시가회계 (current cost accounting)기준이다. ASC는 이 기준을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철회해 버렸다. 그 이유는 발표된 기준이 기술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회계정보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기준을 기업이나 회계법인들이 시행하기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즉 우선 기업들이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시가회계정보(supplementary current cost accounting information)는 만들기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주관적인 판단을 많이 요하므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로 ASC가 만든 기준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준 불이행에 대해 영국증권거래소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회계감사법인들이 기업들이 이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한정 의견을 주지 않기로 결의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SC는 결국 자신이 만든 기준을 강행할 어떠한 힘이나 권위도 갖지 못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 기준을 철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준을 철회하는 과정도 평탄치 못했고 회계기준설정구조상의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기본적으로 ASC는 회계기준안을 마련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 있었다. 회계기준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거나 철회하는 권한은 ASC에 자금을 대는 6개의 단체대표들로서 이루어진 위원회에 있었다. 이번 기준의 철회안을 놓고 영국공인회계사회(the Chartered Association of Certified Accountants : CACA)는 처음에 반대하였다가 수개월간의 타협 끝에 철회안에 동의하였다. 예로든 이러한 사건을 통해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할수 있을 것이다. 첫째, ASC가 높은 수준의 재무보고를 위해 여러 업종을 폭넓게 대표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충분히 갖춘 기관이 되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너무 회계감사업종만을 대표하는 기구였다는 것이다. 즉 ASC가 회계기준안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기관이었으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영국 회계업계의 분열된 성격으로 인해서 회계기준설정이 여러 집단간의 내부적인 정치와 경쟁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웠다는 것이다. 기타 거의 모든 민간 회계기준설정기구가 받는 비판을 똑같이 받았다. 즉 기준마련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적 물적 가용자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한 Dearing Committee Report가 1988년 말에 나왔는데 이 보고서는 1990년도에 도입된 새로운 규제구조 설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보고서는 ASC의 가장 근본적

인 문제로서, 만들어진 회계기준을 시행시켜 나갈 수 있는 ‘권위의 결여’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 뒤에는 그 동안 ASC가 시도해 보았던 많은 마케팅 활동, 상담과 자문, 회계기준설정 과정에 있어서 적절절차의 준수(due process)등이 회계기준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나 권위를 부여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결국 영국의 회계기준설정조직은 급진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였고 Dearing 보고서는 이러한 방향의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Dearing Committee Report의 주요골자는 회계기준설정기구를 회계업계로부터 보다 독립된 기구로 만들고, 회계기준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기준제정에 있어서 행정적인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다. ①회계기준제정기구는 감사인들만이 아니고 기타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자나 만드는 자 등 보다 넓은 분야의 단체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제안의 영향으로 뒤에서 설명될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 FRC)의 구성에 전보다 훨씬 넓은 분야의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②보다 중요한 것으로는 회계기준설정기구는 그 자신의 고유권한에 따라 회계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의 시행을 위해 단순히 종전과 같이 자발적인 지지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어 회계기준의 법적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시행성을 높혀 나간다는 것이다.²⁾ 그리고 실제 준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

2) Dearing Report는 회계기준의 법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지만 한편 이러한 제안이 회계기준의 법규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 We do not recommend a general move towards incorporating accounting standards into law because this inescapably requires a legalistic approach and a reduction in the ability of the financial community to respond quickly to new developments. So far as possible, we recommend that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the responsibility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위반사례를 조사하는 일종의 감시기관(a monitoring review panel)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③기타 회계기준마련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적은 기구의 설립, 보다 많은 자원지원, 긴급과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기구의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3) 제3기

제3기(1990년 8월 이후)는 회계단체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기준설정 기구가 탄생하여 활동하는 시기이다.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SC는 그 효율성이 비판을 받아, 결국 미국의 FASB에 유사한 독립된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 ASB)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광범위한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 FRC)의 지도를 받는다. 즉 1970년 이래 20년간에 걸쳐서 활동해 온 CCAB-ASC체제는 붕괴되고, 1990년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계사단체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기준설정기구인 재무보고평의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 FRC)가 조직되고 FRC내의 회계기준심의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 ASB)가 회계기준 설정기구로서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하였다. 밑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으나 FRC는 ASB외에도 산하에 긴급과제대책반(Urgent Issues Task Force: UITF)과 재무보고검사회(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 : FRRP)를 두고 있다.

of auditors, preparers, and users of accounts...(Dearing, 1988: para. 10.2)....

나. 회계기준 설정기관의 특성

1989년 개정된 회사법은 기업경영자들에게 회계보고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한 사실을 보고서에 기술토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회사법에서 말하는 '회계기준'이란 법규에서 정하는 기관이 만든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기관으로서 ASB를 지정하였다 <그림 V-2 참조>. 또한 국무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기업의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에 어긋날 경우 조사를 거쳐 법원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재무보고검사회(FRRP)를 지정하였다. 따라서 FRC, ASB, FRRP의 법적지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회사법과 같이 준수를 강제하는 명문규정은 둘 수 없었지만, 회계기준의 규범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간접적인 법적지지는 얻은 셈이다.

FRC는 종래의 CCAB와는 달리 회계사단체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단체로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평의회는 새로 만들어진 ASB와 재무보고검사회(FRRP: 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의 회장, 광범위한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위원 21명, Observer 3명 및 사무총장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년에 2회 공식적인 회의가 소집된다.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ASB와 Review Panel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나 향후 수행할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고, 그것을 검토하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지 살핀다. FRC의 주된 기능은 재정지원 및 위에서 언급한 지도와 후원을 하는 것이지만 개별적 회계기준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결정과 관련하여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 세기관(FRC, ASB, FRRP)의 전반적인 운영은 FRC의 회장과 3명의 부회장이 맡아한다.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FRC의 초대회장은 Dearing 자신이 맡아서 했지만 현재(96년 12월말)는 산업계출신이 하고 있다. 그 밑에 있는 3명의 부회장 중 한명은 직업회계사 단체장들 중 하나이고, 한명은 증권거래소이사장, 그리고 다른 한명은 경영자협회장이다. 회장과 부회장들은 통산부장관과 영국은행장에 의해 지명된다. 정부와 은행은 각각 또 하나의 다른 FRC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갖지만, 나머지 기타의 FRC위원들은 회장과 부회장들이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 ASB나 재무보고감사회(FRRP), 긴급자문위원회(Urgent Issues Task Force ; UITF)등 기타 기구에 대한 위원의 임명은 FRC 회장, 부회장들, 그리고 세명의 다른 FRC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한다.

지난 1996년 3월에 끝난 회계연도중의 예산은 약 2.3 million 파운드 (약 62억원:1998.2.20일 현재 파운드당 2700원 적용)가 소요되었다.

. FRC	212,000 파운드 (약 5.7억원)
. ASB	1,809,000 파운드 (약 48.9억원)
. FRRP	226,000 파운드 (약 6.1억원)

이러한 규모의 예산은 과거 ASC의 예산 0.44 million에 비하면 대폭적인 증가라고 할수 있다. 이 예산은 정부가 약 1/3을(거의 대부분이 통상부로부터 나오지만 National Audit Office와 Northern Ireland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도 일부 부담), 공인회계사협회(CCAB)가 약 1/3을, 그리고 나머지는 1/3은 민간부문(런던증권거래소가 이중 6/8을, 은행부문이 영국은행을 통해서 1/8을, 그리고 보험협회, 연금기금, 투신협회 등에서 나머지 1/8을)에서 부담하고 있다.

새로운 회계기준설정기구로 설립된 ASB는 기존의 ASC에 비하면

몇가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① 1989년 회사법의 개정에 따라서 새로운 기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 한 법적 근거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ASB는 그 자신의 고유 권한으로 회계기준을 만든다. 더 이상 ASB는 회계기준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기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ASB가 다른 회계 단체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인사, 자금의 양 면에 있어서도 ASB는 다른 단체(특히 회계사단체)의 지배로부터 독립 되어 있다. 회계기준설정을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들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ASB는 ASC보다는 작은 조직이지만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에 쓰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회장, 부회장 1명, 조사부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외에 학술 고문 1명, 법률 고문 1명, Observer 2명이 심의회 멤버지만 의결권은 없다. 위원은 모두 회계전문가이고 회장과 조사부장이 전임이며, 부회장과 그 밖의 위원은 비전임이지만 모두 급료를 지급받는다. 7명의 비상근중에서 3명은 대형회계법인 파트너, 2명은 산업계 이사, 1명은 금융업계 이사이며, 1명은 대학교수이다.

③ CCAB-ASC 체제하에서 ASB는 민간부문의 기구이었으나, 현재의 ASB는 회사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고 정부도 인사의 영향력을 통해 회계기준의 설정에 정부의 의향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게 되었다. 현재 정부부처인 통상부와 영국은행장(the Secretary of State of Trade and Industry and the Governor of the Bank of England)은 회장과 3명의 부회장 임명권이 있으며(그들이 당연직의 성격이므로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으나),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FRC의 위원중 2명을 실질적으로 임명할수 있다.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또한 ASB의 회계기준제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observer로 통산 성직원 1명이 ASB회의에 참석한다. 정부에 의한 이러한 인사에의 영향력행사는 회계기준제정에 정부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측면도 물론 있겠으나, 또한 회계기준설정과정에 정부가 참여함으로써 권위를 높이고, 회계기준설정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어느 집단의 의사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즉 독립성을 제고시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④ 회계기준에 중대한 위반을 한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회계기준의 규범성(강제력)이 확보되어진다.

ASB에 속하는 소위원회로서 긴급과제대책반(Urgent Issues Task Force ; UITF)이 있다. 이는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미국의 긴급과제대처기구(Emerging Issues Task Force)와 유사하다. 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회계기준 또는 회사법의 회계규정에 대한 해석 및 대립되는 해석이 발생한 경우(또 그러한 사태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ASB의 활동에 협력하는 일, 회계기준 또는 회사법의 회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ASB의 자문에 응하고 기본방침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표명하는 일등이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ASB의 회장이 위원장을 맡으나 의결권은 없다. 위원구성을 보면 회계법인으로부터의 9명(이중 8명은 8대회계법인으로부터), 산업계로부터의 4명, 은행으로부터의 1명, 전문회계단체로부터의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ASB의 위원은 심의에 참가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UITF의 결정에 대해서 ASB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FRC의 하부기관으로서 재무보고의 위반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재무보고검사회(FRRP)가 구성되어 있다. 회사법의 회계규정의 위반을

조사해 사례에 따라서는 위반회사에 대해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 재판에 제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RRP가 조사대상으로 하는 회사는 공개회사와 대규모회사에 한정한다. 그 조직은 회장, 부회장과 복수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위원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현재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해 22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FRRP는 FRC설립초기에 후원자들로부터 2백만파운드(약 54억원: 1998.2.20일 현재 파운드당 2700원 적용)를 기금으로 조성해 놓았는데 이는 설립목적에 맞게 필요시 소송비용으로도 사용하고 일반에게 FRRP가 다만 법적인 권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소송을 수행할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설립초기에 FRRP는 스스로 위반사항을 조사해 나가기 보다는 신문보도등을 통해 직접.간접으로 FRRP에게 알려지게 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주로 조사할 의향을 밝혔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먼저 위반기업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고 소송은 이러한 노력이 실패할 경우 시도할 의향임을 밝혔다.

다. 시사점

영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구에 대한 고찰은 몇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나타낸다.

1)시행력의 문제

영국의 ASC는 회계기준시행에 관한 적절한 장치없이 회계기준제정을 민간부문이 맡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다. 즉 법적인 근거없이 관련업체들의 자발적인 회계기준준수에 대한 기대만으로는 제정된 회계기준의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회계기준의 시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무보고감사회(FRRP)와 같은 특별기구를 만든 것은, 아마도 민간기구에서 자발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해 왔으나, 그렇게 만들어진 회계기준이 기업과 감사인들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시행되지 못한 뼈아픈 역사가 있었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SEC와 같이 회계기준의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기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이 강력한 규제감독기관인 SEC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보고감사회(FRRP)같은 특별한 기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기준의 시행력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는 이제까지 제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최근 증권감독원에 의한 감리결과를 보면 기업에 의한 회계기준 위반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 될 경우 우리나라도 회계기준의 시행력을 보다 확실해 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2) 법적 회계기준 설정권한의 문제

ASB는 미국의 FASB와 유사하지만 법으로 회계기준설정권한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회계기준설정권한이 부여된 기관은 SEC이다. 그러나 SEC는 ASR No. 150을 통해 FASB를 유일한 회계기준설정기구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회계기준설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SEC가 FASB가 만든 기준을 철폐해 버릴 수도 있고 스스로 다른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이 실제

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와는 달리 영국의 ASB는 배타적인 회계 기준제정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실질적인 회계기준 설정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결국 민간부문이다. 또한 SEC나 영국의 정부 모두 민간부문의 회계기준설정에 어느 정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두 나라의 역사적인 차이가 회계기준설정 민간기구의 조직이나 운영형태에 다소의 차이를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어떤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사료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영국과 미국의 회계기준 설정체제중 어느 국가의 체제가 보다 우리 현실에 참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놓고 볼 때, 이미 미국과 유사한 자본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SEC가 설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회계기준설정체제가 미국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게 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사료된다. 이는 우리가 미국의 경우를 단순모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자본시장구조도 비슷하고 SEC도 설립되어 있다면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이 민간부문에서 주도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해 나가되 SEC가 감독자 및 견제자의 역할을 해 나가는 식의 체제를 갖추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미이다.

3. 호주

가. 회계기준설정기관 발전과정

호주에서 GAAP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준수의무가 있는 회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계기준 및 긴급과제대처그룹의 동의안(UIG Consensus Views), 그리고 준수 의무는 없는 회계개념 및 회계지도 보고서(Statement of Accounting Concept and Accounting Guide Release)를 포함한다. 호주 회계위원회(AASB: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공공 부문 회계기준위원회(PSASB: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회계기준, 회계개념서(Statement of Accounting Concepts), 그리고 회계지침서(Accounting Guidance Release)를 만든다. 긴급과제 팀(UIG: Urgent Issues Group)에서는 Consensus Views를 UIG Abstracts에 발표한다.

호주의 회계기준 설정기관의 변천과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 1기 : AARF설립과 그 아래에서의 통일적 회계기준의 설정

1966년에 호주면허회계사협회(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Australia ; ICAA)와 호주공인실무회계사협회(Australian Society of Certified Practising Accountants ; ASCPA)등 2개의 회계사협회에 의해 호주회계연구재단 (Australian Accounting Research Foundation ; AARF)이 설립되었다. AARF는 민간부문기관으로서 회계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그 내부에 회계기준심의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 AcSB)와 공공부문 회계기준심의회(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 PSASB)를 포함한 3개의 심의회와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제2기 : 회계기준 인가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한 ASRB의 설치

호주회계연구재단(AARF)에 의해 설정된 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자에 대해 어떠한 구속력 및 강제력을 갖지 못하여 회사의 사기적 행위 및 도산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회계기준에 대한 시행력(준수) 확보를 위해 회계단체(ASCPA와 ICAA)들은 Miscellaneous Professional Statement APS1 "Conformity with Statements of Accounting Standards"를 채택하고 있었다. APS1의 주요 특색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사나 기업임원인 회원은 회계기준과 어긋난 처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서에 그 사실을 밝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감사인인 회원들은 중요한 회계기준의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한정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셋째, 만약 APS1이 회원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을 경우 ASCPA와 ICAA의 평의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 회원들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기준시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러한 장치는 다음과 같은 약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강제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기업임원들은 회사가 공표한 재무제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원들은 직업회계단체들의 회원이 아니다. 둘째, 회원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러한 시행강제장치는 회계기준의 준수자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그러한 사실의 공시를 강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설사 회원들이 APS1을 준수하고자 한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기업임원들로 하여금 APS1을 준수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취약한 회계기준 준수강제력에 대한 대책으로서 호주회계연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구재단(AARF)이 설정한 회계기준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기준인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위해 회계기준검토위원회(Accounting Standard Review Board ; ASRB)를 설치하였다. 즉 회사법에 따라 AARF는 회계단체를 대신하여 회계기준의 승인을 위하여 ASRB에 제출토록 되었다.

회계기준검토위원회(ASRB)가 설립된 이유로는 이러한 제도상의 약점 이외에도, The New South Wales Corporate Affairs Commission이 기업의 부정과 불건전한 경영, 그리고 회계기준의 낮은 준수수준 등과 관련하여 제기한 강한 비판도 있다. 회계기준검토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각료회의(Ministerial Council)의 결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것의 권한이나 의무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료회의의 결정에 의해 주어졌다. 최종적으로는 1984년 1월에 세워졌으나, 한편 1983년 국회를 통과한 기업 및 증권법(the Companies and Securities Legislation Act)에 의해 설립이 부분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었다. 즉 이 법에서는 기업들이 보고서를 만들에 있어서 승인된 회계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승인된 회계기준은 회계기준검토위원회(ASRB)와 같이 공인된 기관에 의해 승인된 회계기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임원들은 보고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보고서에 밝혀야 했으며, 만약 회계기준에 어긋나게 처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왜 그러한 처리가 필요했는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했을 왜곡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적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감사인들은 보고서가 회사법이나 회계기준 등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를 보고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계기준에 어긋난 처리가 있을 경우 감사인은 이와 관련하여 기업임원이 공시한 구체적인 수량적 정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회계기준검토위원회(ASRB)는 증권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공공부문기관이었으나 호주회계연구재단(AARF)이 신청한 회계기준의 검토만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그때까지는 민간부문에서 회계기준이 설정되었다고 볼수 있다.

3) 제 3기 : AcSB와 ASRB의 합병 및 AASB(현재의 회계기준 설정기구)설치

회계기준의 인가제 도입을 위해 회계기준검토위원회(ASRB)를 설치하여 회계기준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고 회계기준의 준수강화를 통한 재무보고의 신뢰성 향상에 노력했지만 1987년 초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명백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첫째, 호주회계연구재단(AARF)이 만든 회계기준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그리고 기업들과 비기업부문에도 모두 적용되는데 비해, 회계기준검토위원회(ASRB)는 기업회계기준만을 승인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승인작업과 관련하여 함께 고려해야 할 공공부문이나 비기업부문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회계기준검토위원회(ASRB)는 단순히 review board로만 기능한 것이 아니라 한편 회계기준제정자로서도 기능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심의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 AcSB)와 회계기준검토위원회(ASRB)는 서로의 일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드러내었다.

셋째, 회계기준검토위원회(ASRB)는 자신에게 승인을 위해 제출된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기준을 검토할뿐더러 나아가 어떠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가를 결정하고, 새로운 회계기준마련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정하며 기존 회계기준의 검토도 행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기능은 설립당시에 각료회의 결정에 의하여 주어진 기능이였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심의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 AcSB)와 회계기준검토위원회(ASRB) 사이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의견의 차이가 나타나고 두 위원회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넷째, 호주회계연구재단(AARF)의 직원들은 ASRB의 일을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었다. 즉 동일한 직원들이 두 개의 기관을 섬긴 셈이었다. 이러한 체제는 두 개의 기관사이에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는 직원들에게 많은 고충을 안겨주게 되었다. 또 상당히 일이 지연되게 되었다. 다섯째, AcSB는 자신의 일정을 ASRB의 상당히 빠른 일정에 맞추다 보니, 보다 나은 회계기준설정을 위해 마련해 놓은 질적 통제들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8년에 회계기준심의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 AcSB)와 회계기준검토위원회(ASRB)가 합병되어 호주회계기준심의회(AASB)가 설립됨으로써 기준설정기관과 기준인가기관이 일원화 되었고, 회계기준설정주체도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전환되었다<그림 V-3 참조>. AASB는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들의 재무보고 및 감사와 관련된 의무사항들을 규정한 기업법에 따라서 회계기준제정권한을 가진 법적기관으로서 설립된 것이다. 이 합병의 결과로 AcSB는 해체되고 ASRB는 멤버수가 7에서 9로 늘어나게 되었다. 늘어난 2명의 멤버는 ICAA와 ASCPA가 각각 1명씩 추천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최근 AASB는 10명의 파트타임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10명의 멤버는 재무장관이 임명한다. 재무장관은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임의로 지명할 수도 있지만, 관례적으로

로 여러 이해집단대표자 회의를 소집한 후 추천을 받아 이중에서 지명한다. 그러나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PSASB는 호주회계연구재단(AARF)내의 하나의 위원회로 존재한다. 호주회계연구재단(AARF)의 스태프진은 호주회계기준심의회(AASB)와 호주공공부문회계기준심의회(PSASB)의 연구 및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일단 만들어진 호주회계기준심의회(AASB)의 회계기준은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나 연방재무성(the Federal Treasurer's Department)과 같은 회계단체에 코멘트를 받기 위해 제출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단체는 AASB가 만든 회계기준안을 거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호주회계기준심의회(AASB)는 재무장관(Treasurer)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독립된 법정기관이기 때문이다. 호주의 회계기준은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통과되기 위하여는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국회 상하양원중 어느쪽에서든 부결되면 회계기준은 부결된다 (Colins Parker and Bruce Porter, 1996).

이러한 변천과정을 보면 호주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회계기준이 설정되는 것처럼 보이나, 호주회계연구재단(AARF)의 인적, 물적지원이 없이는 호주회계기준심의회(AASB)의 회계기준 설정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다. 상기의 합병은 사실상 정부와 회계업계의 공동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회계단체들과 정부는 합병이전에 회계기준설정을 위하여 제공하였던 물적 인적 자원과 동일한 수준의 자원을 계속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 ASRB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회계단체들은 ASRB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AARF를 종전과 다름없이 지원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호주의 회계기준 설정권이 전적으로 공공부문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호주의 회계기준 설정기구인 공공부문인 호주회계기준심의회(AASB)와 민간부문인

호주회계연구재단(AARF)의 상호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 호주회계기준설정기관 개선안들

90년대에 들어서서 호주에서는 회계기준설정기관에 관한 두 개의 중요한 개선안이 나왔다. 하나는 호주회계연구재단(AARF)의 위탁을 받아 Peirson 교수가 1990년도에 공표한 호주의 회계기준설정기구에 관한 개혁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1997년도 9월에 호주재무장관이 발표한 회계기준설정기구에 관한 개선안이다. 이 두 개의 안은 상당한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가장 최근의 개선안을 소개한다<그림 V-4 참조>. Peirson 교수의 개혁안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동안 회계기준을 제정해온 호주증권위원회 산하기관인 AASB는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면 자금원이 좁고 명백치 않으며, 회계기준설정에 광범위한 이해집단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독립적인 연구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이다.

1997년 9월 8일, 호주 재무장관은 관심있는 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998년도 국회에 상정할 회계기준설정기구 개선에 관한 기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선안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Peirson report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선안은 단지 회계기준설정기구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제고등 다른 내용도 담고 있으나 회계기준설정기구와 관련된 주요내용만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회계보고평의회설치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회계기준설정과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보고평의회(FRC : the Financial Reporting Council)를 설치한다. FRC는 (a)종전의 AASB를 대체할 AASC의 회원들(회장제 외)을 지명한다. 또한 AASC의 사업계획과 우선순위를 승인하고 이행 여부를 지켜본다. (b)AASC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폭넓은 전략적 방향설정과 피드백을 제공하며 관심을 끄는 과제와 관련하여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AASC에 대한 행정 및 연구기술지원의 제공을 감독한다. (c)AASC의 기금조성을 감독하고 예산을 승인한다. (d)AASC와 UIG(Urgent Issues Group)의 실적을 검토하고 매년 FRC, AASC, UIG의 활동에 대한 년차보고서를 작성한다.

재무장관은 FRC를 대표할 단체들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단체들이 지정한 지정된 대표들로부터 FRC 회원들을 지명한다. FRC회원은 재무제표의 사용자와 분석자, 재무제표작성자, 정부 및 공공부문, 전문회계단체들, 그리고 호주증권거래소와 호주증권위원회(the Australia Stock Exchange(ASX) and Australian Securities Commission (ASC))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 재무장관은 FRC회장을 임명하며, 부회장은 FRC회원들 자신이 선출한다.

2) 법적기구로서의 AASC

AASC는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기구로서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The AASC should be established under legislation and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have the powers of a body corporate). AASC의 기능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위한 회계기준을 만들고 승인하는 것이다. 회원들은 AASC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단체의 대표자로서 AASC에 참여하여서는 안된다. 초기에는 AASC는 8명의 회원(부회장을 포함한 7명의 파트타임 회원들과 1명의 풀타임 회장)으로 구성된다. 회장은 재무장관이 지명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회계보고평의회(FRC)가 선출한다. 회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3) 전문가 프로젝트자문단

전문가 프로젝트자문단(Project Advisory Panels of experts on particular subjects being considered by the AASC)은 회계기준설정 전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UIG는 현재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되 AASC와 동일한 회장실에서 일한다. AASC와 UIG의 회의들은 공개적으로 열려야 한다. AASC 의사결정은 단순과반수룰에 의해 움직인다. UIG에 대한 현재의 투표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4) 지원기구의 설립

중요 행정 및 연구보조를 위해 AASC에 의해 선출되고 AASC에 대해 책임을 지는 풀타임 비서기구가 신설된다. AASC에 대해 비서 및 연구지원을 위한 제반 조치는 FRC에 의해 결정되고 매기간마다 재평가되어야 한다. 비서실장은 AASC, UIG, 그리고 특별과제와 관련하

여 설치된 자문단체들이나 소위원회에 대해 연구/기술지원의 공여를 또한 관리해야 한다. 회계보고평의회(FRC)에 대한 일정의 마련이나 회의를 위한 자료의 마련등 비서적 지원은 연방재무부 (the Commonwealth Treasury)에 의해 제공된다. 회계보고평의회(FRC)에 대한 회의소집등 행정적인 지원은 AASC의 비서실에서 제공한다.

5) 예산

1996년도중에 회계기준설정작업과 관련연구를 위해 모금된 기금은 총 \$3.7 million(약 42억원:1998.2.20일 현재 호주 1 달러당 1115원의 환율적용)에 달하였다. 이중 회계업계(ASCPA와 ICAA)가 52%를 냈으며, 정부가 26%, 자료판매가 15%, 호주증권거래소와 기타가 7%를 냈다. 총 기금 \$3.7 million중 \$2.6 million이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 AASB가 \$1.4 million, PSASB가 \$0.8 million, UIG가 \$0.3 million, AARF가 \$0.1 million을 각기 사용하였다. 한편 현재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인 AASB의 예산은 주로 호주증권위원회(ASC)가 관리하는 호주연방 정부예산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1996년도 7월부터 1997년도 6월말까지의 기간동안 AASB가 사용한 운영비용은 총 \$1.3 million(약 15억원:1998.2.20일 현재 호주 1 달러당 1115원의 환율적용)에 달했다. 조달 내역을 보면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885,000에 달하고, AARF가 \$177,000을 지원하였으며, 호주증권거래소가 회계기준의 국제화와 연계하여 \$177,000을 제공하였다. 이번에 새로이 개선안을 제시한 호주재무 장관은 보다 효율적인 회계기준설정작업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 약 \$10 million(약 112억원:1998.2.20일 현재 호주 1 달러당 1115원의 환율적용)97년 9월말 현재 약 66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정부와 민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간부문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금액외에도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특별기금수입이나 자료판매수입등도 전체예산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³⁾

6) 법적 지원

현재 기업들이 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주증권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당해 기업들은 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AASB가 설정한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법에 의하여 회계기준의 준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다만 호주증권위원회의 엄격한 감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당해 기업들의 주주들에 의해서도 회계기준이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즉 기업법내에 기업의 이사들로 하여금 회계기준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주주/기업들도 비록 사적이기는 해도 나름대로 준수를 강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법하에서 회계기준에 대한 준

3) 미국의 경우를 보면 FAF가 FASB와 GASB에 대한 예산관리를 한다. 주된 자금원은 기부금과 자료판매수입이다. 1995년의 경우를 보면 기부금이 US\$8.5 million이고 자료판매수입이 US\$13 million이었다. 1994년과 1995년도 FAF 년차보고서에 의해 대략적인 기부비율을 계산해보면 회계업계가 50%, 산업계에서 30%, 정부와 정부관련기구에서 15%(이것은 아마도 FASB가 아니라 GASB와 관련된 기부금일것임), 은행과 투자회사들이 5%를 낸 것으로 되어있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영국 FRC가 ASB와 FRRP(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의 예산을 관리한다. 1995년 4월부터 1996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에 영국 FRC의 예산은 약 2.2million 파운드였는데 자료판매수입은 0.3million에 달하였다. 최초 3년간의 기금은 회계업계, 정부, 산업계에서 동일하게 각각 1/3씩 부담하였다.)

수를 요구하는 규정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규정의 존재로 인하여 회계기준은 법적인 서류로 간주될 것이며 일단 만들어진 회계기준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철저한 수익 비용분석과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AASC는 회계기준을 만들며, 성격이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걸맞는 회계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종류의 기업이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러한 기업이나 산업을 규제하는 법규의 영역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AASC는 법정기관으로서 재무제표를 만들도록 법에 의해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회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법적 권한은 있지만, 어느 기업들이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후자에 관한 결정은 법적 기관(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들이 내리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식으로 권한배분을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따를 준수 의무가 정해지지 않은 단체들에게 회계기준을 부과할 수 있는 AASC의 권한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호주증권위원회(ASC : the Australian Securities Commission)는 계속하여 회계기준의 준수를 감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회계보고평의회(FRC)는 회계기준이 적절하며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고 감시해야 한다.

7) 기타

AASC는 공공부문, 비기업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관한 회계기준을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만드는 책임을 진다. 당연히 공공부문의 이해를 대표하는 자들이 회계 보고평의회(FRC)에도 참여하여야 한다. AASC 회원은 반드시 공공부문 출신일 필요는 없으나 공공부문에 관한 특별한 경험과 지식을 가져야 한다. AASC가 만든 공공부문에 관한 회계기준이 어떤 법적인 효과를 갖느냐는 각각의 정부(잉글랜드공화국, 주 또는 아직 주가 되지 못한 지역)에 결정에 달려있다.

다. 시사점

1) 호주에서 현재의 회계기준 설정기구인 AASB를 개선하게 된 주된 동기는 회계기준설정에 광범위한 이해집단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원이 좁고, 독립적인 연구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대로 개선을 요하는 문제점으로서 지적될 수 있는 것들이다.

2) 개선안에 의하면 호주의 회계기준 설정기구는 영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구인 FRC와 ASB를 모형으로 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흡사하다. 주된 차이점은 호주의 회계기준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규정화 되어 있으나 영국의 ASB가 만드는 회계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기타 차이점은 무시할만하다. 결국 호주나 영국 모두 회계기준 설정기구가 정부조직으로부터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정부가 인사와 예산에의 영향력행사를 통해 회계기준설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어차피 회계기준설정에 어느 정도 정부의 관여는 불가피하다면, 과연 영국이나 호주형의 정부개입이 좋을지 아니면 미국형의 개입이 좋을지는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다.

3) 개선안에서는 AASC의 멤버수를 7인으로 줄였다. 미국의 FASB를 참조로 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면서도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트타임회원이다.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보다 유연성있게 받자는 의도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파트타임 멤버에게도 시장가격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겠다는 것이 개선안에 밝혀져 있다.

4) 호주의 경우 회계기준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이며, 이러한 점에서 영국이나 미국의 체제와 상당히 다르다. 회계기준을 법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제·개정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좋은 참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회계기준을 만들게 되어있다.

5) 개선안을 보면 하나의 위원회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게 적용될수 있는 회계기준의 설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FAF산하에 두 개의 위원회가 있고 각각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연관된 회계기준을 제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기구에서 어디 부문까지를 커버하는 회계기준을 제정할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 개선안에 의하면 회계보고평의회(FRC)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회계기준위원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독립성의 제고와 연구행정기능의 보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참조할 점이라고 볼 수 있다.

4. 일 본

가. 회계기준설정기관

일본의 증권행정체제를 보면 대장성 증권국산하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투자신탁협회, 투자고문협회의 4개 자율규제기관이 있고 대장성 증권국 심의자문기구로서 증권거래심의회, 기업회계심의회, 공인회계사심의회가 있다 <그림 V-5 참조>. 따라서 일본은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은 증권관리위원회는 없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여러개의 심의자문기구의 형태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증권감독원과 같이 각 심의자문구에 딸린 사무국이 없으므로 사실상 많은 행정감독권의 행사가 대장성 증권국이나 그 산하의 자율규제기관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회계기준을 살펴보면 재무부의 자문기구인 기업회계심의회(BADC : Business Accounting Deliberation Council)가 정하는 일반회계기준이 있다. 기업회계심의회(BADC)는 감사기준도 제정한다. 또한 증권거래법에 따라 재무부가 정하는 보고규정이 있다. 한편 상법내에 회계원칙과 관련되는 기본규정과 법무부가 정한 범정보고에 관한 규정이 있다. 광의로 보았을 때 일본의 회계기준은 상법, 증권거래법 및 법인세법의 각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협의로 보았을 때는 회계기준은 증권거래법하에서 기업회계심의회에 의해 설정되는 회계기준이다. 따라서 기업회계심의회가 기준설정기관의 중심이 되며 일본공인회계사협회와 재단법인 기업재무제도연구회가 심의회와 협력하여 회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1) 기업회계심의회

기업회계심의회는 대장성조직령 제 87조에 기초하여 설치되며, 그 임무는 대장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감사기준의 설정, 원가계산의 통일, 기업회계제도의 정비개선 및 기타 기업회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 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장대신 또는 관계 각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건의하는 것이다. 기업회계심의회령에 의하면 심의회는 40인 이내의 회장 및 위원으로 조직되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20인 이내의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심의회 의 회장, 위원, 임시위원 및 간사는 모두 대장대신에 의해 임명되며 모두 비상근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심의회에는 특별부회, 제 1부회, 제 2부회, 제 3부회 및 제 4부회를 두고 있다. 특별부회는 기업회계 및 감사의 운용, 그 외의 부회에 속하지 않은 기업회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 심의한다. 제 1부회는 기업회계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및 기업회계제도의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해 조사심의한다. 제 2부회는 기업회계의 교육 및 보급계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에 관해 조사심의한다. 제 3부회는 기업회계에 대한 감사기준의 설정에 관한 조사심의를 행한다. 제 4부회는 원가계산기준의 설정에 관해 조사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회 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심의회 의 서무는 대장성증권국 기업재무과에서 처리한다.

2) 기업재무제도연구회

기업재무관계자와 협력하여 공시제도,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조언 및 홍보, 연수사업등을 행하고 좀더 나아가 국가에 있어서 기업재무에 관한 제반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0년 7월에 설립된 법인이다<그림 V-6 참조>. 회원수는 1994년 9월 현재에 506으로 일반회사가 264(52%), 은행 74(15%), 감사법인/공인회계사 50(10%), 증권회사 50(10%), 보험회사 36(7%), 증권거래소 8(2%), 연구기관 24(5%)가 된다. 회원수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 1996년 말 현재 약 540에 달한다. 출자금은 약 10억엔이고, 1997년도의 연간 예산은 약 2억 1천만엔(1998.2.20일 현재 환율 13.1원 적용시 약 28억 원)이고. 출자회사수는 약 340개사에 달한다.

이사회는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무이사 1인 등 총 10-15인으로 구성되고 평의원회는 16-25인의 범위내에서 구성된다. 감사는 2인 이내에서 둘수 있다. 94년 9월말 현재 평의원수는 20인, 이사수는 12인, 감사수는 2인이다. 이사는 무보수이고 상근이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사장은 비상근이다. 평의회의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평의원은 이사를 겸할수 없다. 평의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평의원회는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조언을 한다. 사무국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기업재무제도연구회는 연구성과를 기업회계심의회에 의한 회계기준 설정을 위한 검토자료로서 제출하고 있다.

나. 시사점

1)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증권관리위원회 내지 증권감독원이 없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기업회계심의회가 우리나라의 증관위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중의 하나인 회계기준설정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볼수 있다. 일본에서 회계기준을 설정하는 기업회계심의회는 대장성조직령 제 87조에 기초하여 설치된 법정기관이고 그 서무를 대장성증권국 기업재무과에서 처리한다. 따라서 전형적인 정부주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심의회의 멤버구성을 살펴보면 한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현재 기업회계심의위에는 회장을 포함하여 총 24명의 위원이 있다. 위원 구성을 보면 기업회계심의위 회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대학교수이다. 기업대표가 3명, 공인회계사회장을 포함 공인회계사가 3명, 그리고 기타 각계기관을 대표하는 7인이다. 이 7인의 위원은 일본기업재무제도연구회, 일본증권경제연구원, 증권업협회, 동경증권거래소, 세리사협회, 경제단체연합회, 일본경제신문사가 임명하는 자이다. 이러한 구성을 살펴보면 학계인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그리고 官界의 人士는 하나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일본의 회계기준 설정이 철저히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상 그러할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민간이 회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심의회의 위원구성을 보면 증권당국쪽의 인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학계등 직능분야별 대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회계기준설정이 민간부문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정부부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 모두 회계기준설정이 정부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기업회계심의회 위원은 비상임이므로 사실상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일본에서 기업재무제도연구회가 만들어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 기업재무제도연구회에서는 1인을 기업회계심의회에 파견함으로써 업무적인 연계고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

3) 일본의 기업회계심의회는 법정기관이면서도 대장성증권국 인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연 정부주도형이 갖을 수 있는 리더쉽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주도형에 정부주도형을 가미하였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주도형에 민간주도형의 형태를 대폭적으로 가미해서 이름만 정부주도형이지 실질적으로는 민간주도형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기업재무제도연구회에서 행한 주요 연구 결과가 기업회계심의회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4) 근자에 일본에서는 회계기준설정기구인 기업회계심의회의 역할을 민간부문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민간부문의 기준설정이 회계기준의 설정절차에서 심의의 공개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적 영향 등을 배제할 수 있으며, 또한 심의회의 임무의 경감 및 행정당국의 사무적 부담의 삭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5. 프랑스

한나라의 법적인 체제는 회사법의 회계에 대한 규제정도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문법체계하의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불문법 체계에 비하면 회계규제는 보다 세부적이고 광범위한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그러한 나라에 있어서는 회계기준설정에 있어서 회계업계의 영향이, 회사법이 업계의 자율 규제에 의해 보충되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 비하면 훨씬 적다 (Radebaugh와 Gray, 1997, p. 49).

가. 회계규정

프랑스 재무회계와 보고에 관한 규정은 PCG라고 불리우는 전국회계규정에 정해져 있다. 원래 PCG규정은 국유기업과 공적지원을 받는 기업들에게만 강행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는데 추후에는 사적분야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PCG는 4차 EC Directive와 7차 EC Directive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PCG의 주된 목적은 첫째, 재무거래의 종류와 재무거래가 재무상태에 미치는 효과라는 두가지 측면으로부터 개별기업 회계체제의 표준화를 기하는 것이며, 둘째, 기업들에 의한 재무사항공시의 표준화를 기하는 것이다. 첫째 목적은 표준화된 계정과목(standardized chart of accounts)들을 채택하고 또한 표준화된 회계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달성하게 된다. 둘째 목적은 기업들이 정기적인 재무보고시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재무제표양식 및 표준부속명세서양식을 채택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PCG 규정은 ‘enterprise’라고 정의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PCG의 적용에는 두가지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 첫째, 기업들은 PCG 계정과목표(chart of accounts)에 나와 있는 모든 계정과목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크기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과목의 종류가 다르고 또 일부계정은 경영자가 원할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둘째, 비록 전국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PCG 계정과목표가 있기는 하나 산업별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줄 수는 없다. 이런 경우 개별산업들은 프랑스국립회계평의회(CNC)의 승인을 받아 PCG계정과목의 변형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PCG 계정과목의 일반적인 구조라든지 또는 평가 및 공시관련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PCG는 프랑스국립회계평의회(CNC)라는 재무부부설 정부기관의 권위에 의해 제정된다. 비록 PCG는 프랑스 상법의 구조에 정확하게 들어 맞지만 그 자체가 법의 형태로 표현된 것은 아니다. 즉 영국의 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영국회사법상의 항이나 부대조항과 같이 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PCG는 상세한 회계메뉴얼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프랑스에는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제정위원회등이 만드는 그러한 회계기준서(statement of accounting standard)가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계정과목체제는 일단 결정되어 사용되면 새로 바꾸기도 힘들고, 다른 계정분류를 시도하고자 하는 개별기업들의 자유를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편 전국적인 통일을 기함으로써 사용자나 작성자들간의 의사소통을 상당히 원활히 한다는 측면을 무시할수 없으며 나아가 회계처리의 전산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기업이나 회계사업계로부터도 심각한 문제의 제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나. 회계기준설정 관련기관

프랑스는 영어권국가 특히 영국과 비교해 보면 재무보고에 이해관계를 지닌 단체들간의 권한이나 영향력의 배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 프랑스 회계업계는 그 구성원의 수도 영국보다 적고 조직도 다르게 되어있다. 이러한 원인은 프랑스의 과거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프랑스는 미국이나 영국등 선진국가에 비하면 근대산업혁명의 영향을 그다지 깊이 받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일찍 받은 것도 아니다. 최근까지도 소유분산이 잘되지 않은 중소기업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에 비하면 위험자본조달시장인 증권거래소가 훨씬 덜 중요하게 여겨졌고, 회사 수나 상장기업들의 자본금총액도 훨씬 적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대규모 상업 및 산업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었으나, 정부자체가 직접투자나 국유화 등을 통해 이러한 개혁에 방해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1980년대 초에 좌익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다가 1986-1987년도의 기간중에 약간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1993년부터는 훨씬 많은 수의 국유기업들이 민영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거를 살펴보면 프랑스에 있어서 왜 주식시장과 회계산업의 발전이 영국과 같은 나라에 비해 뒤떨어졌는가를 알 수 있다.

1) 프랑스 국립회계위원회(CNC)

CNC는 재무부 부설기관으로 1947년에 설립되었다. 1993년도에 발표된 CNC의 목적을 보면, 회계연구수행 및 연구결과의 실제적용을 도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모하고, 회계교육과 회계정보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자료의 제공 및 연구를 수행하며, 주(State)에서 직간접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기관들에 의해 검토된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예비적인 의견을 부여하고, 회계계정의 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조치를 제안하는 것이다.

CNC의 구성을 보면 회장과 부회장들(Director of State accounting, President of OECCA, A senior enterprise manager, A representative of the teaching profession), 국무장관, 정부 각부처와 공공기관의 대표자들, 회계관련단체들의 대표자들, 회계업계의 유명인사들, 계정의 작성이나 사용에 관련된 기관들이 지명한 회계전문가들등이다. 1992년 9월 말 현재 약 103명에 달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회계기준설정위원회가 10명이내의 위원만으로 유지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가 된다. CNC는 규제력 또는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CNC의 PCG에 관한 결정은 재무부를 통해 정부에 승인을 위해 제안서로 제출된다. 회원들은 정부가 임명하며 3년임기로서 재임가능하다.

CNC의 작업을 보조하는 것은 35명가량으로 구성된 비서실이다. CNC의 스태프들은 오랜 전통에 따라 공공부문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회계법인들이나 민간상업부문으로부터의 출신들은 없다. CNC의 운영 및 재무보고에 대한 공헌 중 몇가지 중요한 점을 든다면 다음과 같다.

- 회원구성의 다양성 때문에 각 이해단체들간에 타협과 의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CNC의 작업에 어떤 이해단체는 다른 이해단체보다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초창기에는 PCG는 보다 나은 경제적 통계와 전국 경제계획을 도모한다는 공공정책목표와 연계되어 있었다. 나중에는 조세법의 준수를 위한 도구로서 조세당국의 상당한 관심을

끝게 되었다. 즉 조세당국과 대형사기업부문이 특히 전국회계규정과 적용방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단체들이며 따라서 종종 이두단체들의 이해문제가 CNC가 내리는 회계관련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여진다.

2) 증권거래소 운영위원회(COB)

미국의 SEC와 유사한 목적으로 세워진 COB는 1967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프랑스내의 파리거래소, 지방거래소, 그리고 이차시장의 감독에 책임이 있다. 비록 COB는 CNC에 대표를 파견하지만, 여러 해 동안 회계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중에 알려왔다. COB는 PCG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변화된 환경에 여전히 잘 맞는지에 계속 관심을 기울인다. COB의 일반적인 입장은 영미계 국가들에 있어서 상장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회계관습정도는 프랑스 상장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3) 회계사단체(OECCA)

프랑스에 있어서 회계업(the practice of public accounting)은 OECCA회원들만이 할수 있다. 1994년도말 현재 14,844명에 이른다. OECCA의 설립은 1942년도에 이루어졌다. 회계사의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회계처리방법의 전국적인 통일화 및 중소기업위주의 산업체제 등으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4) 회계감사인단체(CNCC)

프랑스에 있어서 회계감사기능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매우 늦었다. 1966년도 회사법이전에 회계감사인은 회사의 연차보고서에 'truth and fairness'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1969년도에 설립된 CNCC의 회원들은 법적으로 감사기능을 수행할수 있었다. 1966년도 회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CNCC의 감독을 책임지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CNCC와 OECCA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다.

다. 회계규정을 밑받침하는 권위와 지침의 근원

1) 상법규정

프랑스에서 계정의 유지와 연차보고서의 발표에 관한 일반법은 상법(Code de Commerce)에 나타나고 있다. 회계관련법규는 EC 제4차 지시를 도입하기 위해 실시된 1983년도 관련법의 개정과 1982년도 PCG를 수행토록 한 장관지시에 의해 확충되었다. 이러한 법들은 모두 상법이 적용되는 행위, 사람들, 비법인기업들, 그리고 회사들에 적용되는 것이다. 재무회계와 보고에 관한 최근의 규정(1983년도 회계관련법)들은 EC의 제4차 지시 및 제7차 지시를 받아들이면서 많이 개정되었다.

2) 조세법

프랑스 회계법은 재정법에 대한 정책적인 목표에 의해 형성되고 재강화되어왔다. 그 이유는 비용은 오직 연간 보고서에서 비용으로 처리될 때만이 세금공제혜택이 주어진다라는 일반적인 규정 때문이다.

3) 증권거래소 운영위원회(COB)

COB가 지고 있는 책임중의 하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들(주로 상장회사들)이 재무보고기준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것이다. 회계기준의 제정에 관한 COB는 CNC가 이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COB는 증권시장의 운영과 관련한 막강한 규제력을 지니고 있지만, 상장기업들의 재무보고에 관한 COB의 일반적인 입장은 강제력의 행사보다는 기업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준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COB는 회사들이 행하는 재무측정이나 공시와 관련하여 개선이나 보다 지속적인 적용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것을 COB가 발행하는 년차보고서에서 거론한다.

4) 회계업계의 재무회계 및 재무보고 관련 권고

OECCA는 재무회계 및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많은 권고안을 내기도 하고 업계의 관행에 대한 설명이나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한다. 회계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CNCC에서 맡아서 한다.

라. 시사점

프랑스는 독특한 체제를 취하고 있다. 회계업계는 회계기준설정에 있어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프랑스에서는 산업의 발전이 비교적 늦게 시작했고, 중소가족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좌익정권에 의한 국유재산 소유확대 등 제반 여건이 회계산업의 발전을 비교적 뒤늦게 만든 것으로 사료된다. 프랑스 체제에서 참조할 것은 비록 미국의 SEC와 유사한 COB는 증권시장의 운영과 관련한 막강한 규제력을 지니고 있지만, 상장기업들의 재무보고에 관한 COB의 일반적인 입장은 강제력의 행사보다는 기업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준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 회계기준의 발전이 조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쉽게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계정과목이나 회계용어의 표준화등을 통해 관련당사자간의 의사소통을 보다 쉽고 원활하게 한다는 장점도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체제가 매우 달라서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참조하기에 어렵다.

6. 독일

대부분의 회계, 감사 그리고 공시원칙들이 이제는 상법규정 (Commercial Code)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몇몇 회계규정들은 공시 법이나 또는 보험회사나 기타 금융기관에 관한 특별법속에 산재하고 있다. 독일의 회계원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세법조항의 큰 영향력 ②대차대조표항목의 포함과 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이 존재 ③사적회사와 조합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이 존재 ④개별법의 준수가 'true and fair view'보다 우선함 ⑤회계원칙의 계속적인 발전은 주로 세법규정에 의해 이루어짐 ⑥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볼 때, 독일의 회계업계는 회계기준제정에 별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⑦순소득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대차대조표 독자들을 속일수 있는 여지가 있음.

독일회계는 다소 보수적이고 회계처리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중의 하나는 주식시장의 낙후성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세법이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 이유는 상법에서 요구되는 회계원칙들은 세금의 계산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세법조항 때문이다. 상법조항이 세금계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회계원칙에 관한 논쟁은 주로 조세법정에서 해결된다.

회계기준제정에 있어서 회계업계(accounting profession)의 영향력은 비록 최근에 이르러 다소 커졌지만, 조세법이나 조세규정의 영향력,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의 회계업계의 영향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다. 회계업계는 주로 제안이나 비강제적인 내용의 발표, 법제정과정에서의 참여등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회계원칙의 발전이 상당부분 연방조세법정에서의 결정에 의해 이루

어지며, 영어권국가에서 발견되는 유형의 자율적인 회계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체제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수 있다.

7.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 IASB)는 국제회계기준(IAS)의 설정기구로서, 1973년 6월에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9개국의 직업회계단체에 의해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약 20년간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 특히 증권감독자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IOSCO)가 1987년에 IASB의 자문그룹의 멤버가 되어 IASB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이 어느정도 강제 적용의 가능성을 보이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와 있다. IASB 구성원(회원)은 국제회계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 IFAC)의 회원인 각국의 직업회계사단체로서, 그 수는 1992년 7월 현재 78개국 105개 단체이다. 관련기구로는 IASB 구성국회의, IASB이사회, 기초위원회(Steering Committee), 조직·계획위원회 및 사무국이 있다. 이 중 국제 회계기준을 승인하는 IASB의 활동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IASB이사회이다. 그 정원은 17명이고 이중 13석까지는 IFAC이사회가 지명하고 나머지 4석은 IASB이사회가 지명한다. IASB이사회는 책임과 권한으로서의 채택할 주제의 결정, 기초위원회멤버의 결정, 원칙서의 승인, 공개초안의 승인, 국제회계기준의 승인 등이다. 또한 IASB이사회는 년 2회 내지 3회 개최되며 의결방법은 1국 또는 1단체가 1표의 결의권을 가지며 과

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기초위원회는 개별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초안작성작업을 한다. IASC 이사회가 새로운 주제를 채택하지만 기초위원회가 범위를 지시하게 된다. 기초위원회는 주제마다 다르지만 통상 3개국(단체)내지 5개국(단체)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진다.

IV. 한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1. 현행 기준설정 기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설정기관에 관련된 제도변화를 간략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업회계기준을 설정해 왔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유가증권의 발행, 관리 및 공정한 거래와 증권관계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직이었다. 이 위원회는 한국은행총재,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재무부차관 등 3명의 당연직과 유가증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재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6명(3명은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증권관리위원회는 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생기기 전에는 기업회계기준 설정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회계제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다. 회계제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증권위원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자문위원은 당연직 6명(재경원 증권업무과장, 증권감독원 심의위원보, 외부감사위원회 상임위원, KICPA의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 증권거래소 전무이사 혹은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등)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8인 이내로 구성되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학계(대학교수)대표 9인, 실무계 대표 9인(공인회계사 6인과 기업대표 3인) 등 18인이 위촉위원이었다. 회계기준의 체계

정시 실무작업은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내의 기업회계제도과 직원들이 맡아 하며, 보통 초안, 중간안, 최종안을 마련할 때마다 회계제도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았다. 회계제도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장이 맡아 하였다. 자문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증권감독원이 부담하고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참석시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증권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마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계제도자문위원들의 일부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7년 9월 5일부로 증권관리위원회산하에 기존의 회계제도자문위원회 대신에 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예전의 자문위원회는 증권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구이나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외감법 시행령 제 4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였다. 예전의 자문위원회는 사실상 자문업무에 주력하였으나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에서 작성한 회계기준안을 심의할수 있으며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할 안건을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종전에는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 실무진에서 만든 회계안건이 증권위에 부의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자문위자체가 부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직접 안건을 증권위에 부의할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외감법 제 4조의 규정에 근거한 법적기구이기는 하지만 회계기준의 제정권은 여전히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었다.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증권위위원장의 위촉에 의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연직이 5명(재경원 증권업무담당관, 재경원 법인세과장, 외부감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 1인, 증권감독원심의위원보 1인, 증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중 1인(위원장겸임))이고 기타 12인은 각직능단

IV. 한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체를 대표하는 6명(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추천 2명, 상장회사협의회 추천 1명, 은행연합회 추천 1명, 증권거래소 이사장 추천 1명, 회계학회 회장 추천 1명)과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6명으로 되어 있다. 6명의 위촉위원들은 1997년말 현재 학계 4명, 투자자문사 1명, 공인회계사 1명이었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고 재임이 가능하였으며,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설립에 의해 회계기준제정에 있어서 심의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12월 31일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선물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다. 한편 1998년 1월 8일에 공포되었으며,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종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승인 하던 회계감사기준·회계처리기준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 (제5조 및 제13조).

2. 문제점

아직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의 회계기준설정체제를 주로 염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연구의 전문성 부족

기업회계기준의 설정은 충분한 조사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현행 기구하에서는 ①주무부서인 회계관리국의 자체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필요한 연구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며 기준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대선,장지인,나인철,이창우,1994), ② 연구인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구는 단편적으로 외부의 자문위원이나 학계에 일부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 부서의 인력으로는 기준설정 실무작업을 수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나, ③ 또한 부서 직원의 이직율이 높고, 부서간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④ 자문기구를 활용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된 예산으로 비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나. 조직구조상 기준제/개정의 탄력성 부족

회계기준은 기업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개정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국제기업환경의 변화추세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와 증권감독자국제기구(IOSCO)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기업회계기준의 설정기구는 어느 때보다도 신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조직 속의 한 개의 과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기준설정 기구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전문성과 대처능력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기준설정의 공개성과 투명성 부족

기업회계기준의 설정작업 시 그리고 발의 시 학계, 공인회계사회, 기업계 및 유관단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그리고, 질의 응답식으로 운영되는 예규제정과정은 제한된 시간내에 답변을 해야한다는 제약조건 때문에 심도있는 연구와 토의를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따라서 기준설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낮아지고, 나아가 기준설정 후의 실무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됐다.

라. 인력과 예산의 비독립성으로 인한 회계기준제정에 정치적 영향 초래

인력과 예산이 정부기구에 100% 소속되어 있어 사실상 회계기준의 제/개정에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사가 반영되기 쉽지 않고, 정부 또는 정부에 대한 Lobby력이 강한 이해집단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앞서서 이미 주요 외국의 회계기준설정기구에 관한 제도를 검토하여 보았다. 현재 영·미계의 주요 외국에서는 회계기준설정기구가 민간부문에 설치되어 있거나, 관민협작의 형태로 민간부문에 설치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추세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비교적 회계제도가 뒤쳐져 있다고 평가되는 일본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회계기준설정에 있어서 다양한 민간부문의 의사반영, 그리고

독립성제고에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 일본의 경우에는 앞서도 설명하였으나 한국과 같이 증권관리위원회가 없고, 대신 대장성산하의 여러 기관에서 그 기능을 맡아서 한다. 그 기관들중 회계기준을 설정하는 기관이 바로 기업회계심의회이며 이 기관을 여러 민간단체들의 출연기관인 재무제도연구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기업회계심의회와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심의회를 구성원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일본의 기업회계심의위에는 현재 회장을 포함하여 총 24명의 위원이 있다. 위원 구성을 보면 기업회계심의위 회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대학교수이다. 기업대표가 3명, 공인회계사회장을 포함 공인회계사가 3명, 그리고 기타 각계기관을 대표하는 7인이다. 이 7인의 위원은 일본기업재무제도연구회, 일본증권경제연구원, 증권업협회, 동경증권거래소, 세리사협회, 경제단체연합회, 일본경제신문사가 임명하는 자이다. 한편 얼마전 한국증권관리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진 회계기준심의회의 구성안을 보면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증권위원회장의 위촉에 의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이 5명(재경원 증권업무담당관, 법인세과장, 외부감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 1인, 증권감독원심의위원보 1인, 증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중 1인(위원장겸임))이고 기타 12인은 각직능단체를 대표하는 6명(한국공인회계사회 2명, 상장회사협의회 1명, 은행연합회 1명, 증권거래소 1명, 회계학회 1명)과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6명으로 되어있다. 위촉위원들은 학계 4명, 투자자문사 1명, 공인회계사 1명이다. 두기관 구성원들간의 주된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교수가 전체구성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45.8%에 달하였다. 한편 증권관계당국으로부터의 구성원은 한국이 35.3%, 일본은 증권업협회와 증권거래소 두 개 기관으로서 전체의 8.3%에 그쳤다. 즉 일본의 경우에는 비록 회계기준제정기관이 대장성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객관성과 민간부문주도라는 점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

우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주도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설정기구는 향후 좀더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이다. 한편 새로이 설립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체제하에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정부주도형의 형태로 나아 갔다고 볼수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회계기준을 설정하여 재정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향후에는 예전의 증권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새로 설립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강화와 집중, 그리고 그 동안 한국의 회계업계와 회계정보에 대해 주어지고 있었던 비판이 암묵간에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마. 회계기준심의회 위원구성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심의회와 같은 기구의 경우 10명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명이 넘으면 의견을 효율적으로 모은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심의회는 17명(이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파트타임위원이라고는 해도 너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회계기준심의회와 같은 전문적인 심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가능한 한 회계 실무와 회계이론 모두에 밝은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원들 중 비교적 객관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계인사들중 대부분(5명중 4명)이 증권당국에 의해 추천되므로 그만큼 독립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V. 한국회계기준 설정기관의 개선방향

본 장에서는 한국의 회계기준설정기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우선 앞서 설명된 한국회계기준설정기구의 문제점 해결을 염두에 두면서 과연 회계기준설정기구는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해 본 후, 향후 회계기준설정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할지의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문제는 회계기준설정기구의 전반적인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이 문제를 정리해 보면 전체적인 개선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1. 개선방향 설정시 고려사항

가. 주요기본개념들

앞서 한국의 회계기준설정구조를 설명하면서 문제점으로서 조사연구의 전문성 부족, 조직구조상 기준제/개정 의 탄력성 부족, 기준설정의 공개성과 투명성 부족, 인력과 예산의 비독립성으로 인한 회계기준제정에 정치적 영향초래등이 거론되었다. 이는 결국 회계기준설정기구의 연구조사기능문제, 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독립성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외국에 있어서 회계

V. 한국 회계기준 설정기관의 개선방향

기준설정기관의 발전사를 보면 바로 이러한 세가지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였는데 이러한 독립성 주장의 근거에는 결국 독립성이 있어야 모든 구성그룹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에서 1973년에 FASB를 세울 때도 있었으며, 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관에 대한 개선안을 취급한 Dearing Committee Report와 이를 반영한 ASB 설립시에, 그리고 호주가 AASC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독립된 회계재단과 회계기준위원회같은 조직이 만들어 진 것이다.

한편 독립성문제에 못지 않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시행력의 확보문제이다. 일단 회계기준이 만들어지면 이 기준의 준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SEC와 같은 막강한 규제기관이 존재할 경우 별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회계기준을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초기에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경우 회계기준의 준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나라의 기관이건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외국의 예를 볼 때 미국과 같은 나라를 제외하면 전문적인 연구조사기능을 포함하는 『효율성』의 문제보다는 그 동안 『시행력』이나 『독립성』의 제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온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업내의 경제적 문제들이 점점 복잡해져 가고 이에 따라 회계기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커져감에 따라 전문적인 연구조사기능의 강화나 효율적인 합의의 도출등을 통한 효율성제

고 문제가 향후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회계기준설정기관의 개선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개념들이 - 독립성, 효율성, 시행력 - 중요한 주춧돌이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표 V-1>은 이러한 점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 회계정보의 주요목적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는 것이며, 나아가 투자자와 채권자들을 주된 회계정보사용자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의 제정에 있어서도 넓은 의미의 투자자 보호를 주된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계설정기구가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나아가 만들어진 기준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시행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회계기준설정기구의 독립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조직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계기준설정 기구의 설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을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냄으로써 참가집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서로 견제함으로써 독립성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이해집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계기준설정기구의 설립은 독립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만들어진 회계기준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 다양한 이해집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계기준설정기구는 잘못하면 의견의 분열이 초래되기 쉽고, 회계기준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효율성을 잃지 않도록, 회계기준설정기구가 리더쉽을 지니며 속도면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V. 한국 회계기준 설정기관의 개선방향

소모하지 않고,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회계기준설정기구의 의결기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의 추세를 보면 대략 10명 이내의 인원이 의결기관에 참여하고 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연구조사능력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자문기구의 설치는 효율성 전반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편 아무리 회계기준설정기관이 독립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회계기준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계기준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이미 영국이나 호주등의 예에서 보았듯이 회계기준의 설정을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할 경우 잘못하면 기업들이나 공인회계사들에 의해 준수가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기준이나 이를 제정하는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회계기준설정기관의 소요예산에 정부도 어느 정도 관여하여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갖는다든지, 회계기준준수를 법적의무화하며, 회계기준제정기관을 법정기관화하거나 아예 정부기관화하는 방안등을 고려해 볼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제반 변수들 - 독립성, 효율성, 시행력 - 간에는 상호작용에 따라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이 혼재할 수 있으므로 회계기준설정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기준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범규화하고 회계기준설정기구를 정부기관화 한다면 회계기준의 시행력은 향상되겠으나 독립성이나 환경변화대처능력은 저하되기 쉽상일 것이다.

나. 민간부문의 참여정도 (정부주도형 vs. 민간부문주도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계기준설정기구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회계기준설정에 민간부문이 얼마나 참여토록 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회계기준설정기구의 조직형태는 물론 의사결정이나 합의의 도출절차, 시행력 등 거의 모든 문제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하 회계기준설정이 주로 민간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느냐 또는 정부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기로 한다.

1)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장단점

세계각국은 서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법적, 정치적 환경과 관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회계규제방법도 당연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회계기준이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통일적 적용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회계기준의 설정에는 정부부문의 제도적 개입은 필수적이지만(Bloom and Naciri 1989), 세계각국은 설정과정의 주요부문을 정부부문이 직접 수행하는가 아니면 민간부문이 위임을 받아 주도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대선·장지인·나인철·이창우(1994, p. 381)은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정부주도형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회계기준이 설정되거나(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혹은 정부부서가 주도하여 회계기준의 설정을 시행함으로써(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회계기준이 사실상 법률적 형태를 가지게 되는 설정방식으로서 정부주도하에 政府의 政策意志가 강력하게 반영되는 설정유형이다. 회계기준의 설정시 민간부문 전문가로 구성된 諮問機構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설정권한은 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설정의 전반적인 사항 즉, 회계기준관련 현안의 확인과 발의로부터 시안의 작성등의 절차 뿐만 아니라 기준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정부의 주관하에 수행되는 것이 정부주도형 설정방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정부주도하에 회계기준이 설정되는 경우, 동 회계기준의 수행 및 준수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적 규범에 익숙한 문화권에서는 정부주도의 회계제도가 社會的인 公平性을 제고한다고 간주되므로,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회계기준의 설정에 비하여 설정된 회계기준에 대한 正統性賦與가 강화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하의 회계기준 설정은 경제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實務受容性을 제고시킬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설정권자의 정책의지반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그칠 수 있어 회계정보가 왜곡되고 회계기준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이대선·장지인·나인철·이창우, 1994).

나) 민간주도형

민간주도형 회계기준 설정방식은 법률이나 정부로부터 설정을 주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부문의 단체가 懸案提起부터 실질적 설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방식으로서 회계제도 運營體系의 自律性을 인정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정 민간단체가 회계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정통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바,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특히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실무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Tandy and Wilburn, 1992) 이 과정에서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정부주도형에 비하여 보다 廣範圍한 意見收斂過程을 거치고 설정권한을 민간부문이 보유함으로써 정책의지에 의한 劃一的인 회계기준변경 가능성에 대한 견제기능을 가지고 또한 실무수용성이 높은 회계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정부부문에 의한 설정에 비하여 급속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의 설정이 伸縮的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문화적 배경이 없이는 독점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일부 집단에 의해 좌우되는 회계제도가 배태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회계기준의 설정을 주도하는 경우 그 財源充當問題가 발생하며, 재원의 제공원천에 따라 獨立性和 客觀性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결과적으로 설정된 회계기준의 신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관

V. 한국 회계기준 설정기관의 개선방향

계자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절하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이 매우 클 수 있으며 談合과 集團利己主義 등에 의하여 최적의 기준이 유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한편 Belkaoui, A.(1985)는 미국의 FASB와 SEC를 이용하여 민간주도형과 정부주도형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A. 민간주도형

(장점)

- ㉠ 회계기준제정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게 반영되기 쉽다. 예를 들어 미국의 FASB를 보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또 회계기준설정과정에서 모든 이해집단들의 반응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적절절차조항(duel process procedure)을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재원도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나오므로 자연히 구성집단의 의견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게끔 되어있다.
- ㉡ 기준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만들어지는 회계기준의 현실수용성을 높인다.

(단점)

- ㉠ 민간주도형하에서의 회계기준설정기구는 때때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FASB의 경우에도 회계법인(특히 big 6 firms)이나 상장기업들로부터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민간주도형하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려다 보니 자연 진행속도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는다. FASB의 경우에도 때로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너무 늦게 반응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시간적인 지연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준제정시 요구되는 모든 적절한 절차를 밟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들며, 또한 FASB가 기준제정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B. 정부주도형

(장점)

- ① 정부주도형하에서 회계기준 제정기구는 민간주도형에서 결여되기 쉬운 리더쉽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EC의 경우를 보면, SEC는 안전하고 보수주의적인 회계처리방법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SEC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한편 민간부문이나 시장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리더쉽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 ② 정부주도형하에서의 회계기준설정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필요성이 보다 강조된다.
- ③ 정부주도형하에서의 회계기준제정기구는 보다 높은 법적인 권위나 우월한 집행력을 갖고 있다.

(단점)

- ㉠ 정부의 규제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가하는 정보의 규제를 따라가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 ㉡ 회계기준설정에 점점 더 정치적인 영향이 가해질 수 있다. 즉 특정 이익집단이 특별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일 수 있다.

2) 결론

회계기준설정에 있어서 민간부문이 얼마나 참여토록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보편타당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각 나라가 처한 시대적 환경에 따라 해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회계기준 설정에 있어서 향후 점진적으로 민간부문의 개입을 확대해 나가고, 정부부문에서는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아마도 예산상의 문제일 것이다. 현재 정부부문의 인력으로는 효과적으로 회계기준을 설정해 나가기 어렵다는 점에 모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만약 향후에도 계속 정부주도형으로 회계기준을 만들 경우 심각한 재원 부족의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정부조직은 축소되어 가는 추세인데 회계기준을 보다 잘 만들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법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민간부문에서 회계기준설

정업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해결방법은 일본과 같이 정부 부문에서 그대로 회계기준설정을 주도하되, 민간부문으로부터 인적물적 도움을 받거나,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와 같이 회계기준설정을 위한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되 정부가 인사와 예산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영향력을 여전히 발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회계기준심의회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므로 정부주도형이면서도 민간부문의 도움을 받는 현재의 일본 체제는 결국 민간주도형으로 이전하기 전의 과도기적인 형태가 아닌가 사료된다.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에는 관민협작형태의 독립법인이 설립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회계기준설정기관이 정부조직의 일부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부문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점에서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차이는 미국의 경우 견제 및 감독자로서의 영향력이라면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에는 인사 및 예산을 통한 직접적인 영향력의 행사이므로 그 효과면에서 보다 크고 직접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형태가 보다 우리 현실에 맞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는 『한국의 회계기준설정기관 개선방안』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정부주도형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예산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이 문제 및 기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형으로 바뀌던지 아니면 관민협작형태의 독립법인을 만들어 변화를 꾀하던지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정부주도형으로 회계기준을 만들 경우 전문인력의 도움을 효율적으로 받기 어렵다. 정부당국의 요청이 있다면 민간부문에서는 물론 기꺼이 정부당국에서 하는 회계기준 설정작업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결국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벌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설사 외부민간부문에서 정부의 회계기준설정작업에 도움을 주고자 해도 일을 주도해야 하는 정부부문에서는 진행되

고 있는 모든 작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적절히 내릴 수 있어야 하므로, 결국에는 정부주도형으로 회계기준 설정작업을 할 경우 기존정부인력의 한계를 크게 벗어난 일을 도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부문에서 굳이 회계기준설정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분야는 날이 갈수록 복잡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정부부문에서 소수의 한정된 인력으로 직접적으로 회계기준의 설정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부분을 민간 부문에 맡김으로써 오히려 일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회계기준설정의 주도권을 민간기구에 이양한다고 해서 정부부문이 회계기준설정과 무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정부부문에서는 보유인력에 걸맞는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업무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많은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요하는 회계기준설정작업의 상당부분을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대신, 향후에는 민간부문에서 과연 회계기준을 적절히 설정해 나가느니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설정은 민간과 정부의 어느 쪽에서 주도하더라도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위험성은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일정한 이론이나 개념체계를 수립해 놓고 이에 준거하여 회계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정부부문에서는 이에 대한 견제 및 감독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특정집단의 지나친 영향력행사에서 벗어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회계기준설정에 민간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정부부문에서는 민간부문에서 하는 기준설정작업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독을 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민간주도형하에서는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는 있으나 이는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이것이 정부주도형으로 가야 한다는 주된 이유는 되기 어렵다. 정부주도형하에서는 결정을 손쉽게 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로 인한 보이지 않는 문제는 생각보다는 심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서 금융기관의 보유주식 평가손 반영문제에 대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예외적인 회계처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예외적인 회계처리방법의 허용시에 금융기관의 경영이나, 한국회계정보의 대내외적인 신뢰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과연 깊은 배려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동안 자주 변경되어 왔었던 외화환산손익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제개정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절차를 밟았다더라면 최종적인 결정에 시간은 더 걸렸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이나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친 악영향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 회계기준 제개정은 지나치게 정부주도로, 그리고 충분한 합의없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앞서 향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설정환경은 영미모형에 접근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변모된 회계환경하에서는 분야별 전문요원들의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여 일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합의주의 정신을 보다 잘 살릴 수 있는 체제의 확립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회계기준설정 환경에 민간부문에서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설정환경을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현재의 정부주도형으로부터 향후에는 보다 민간주도형 내지 국민합작의 형태로 점차적으로 전환되어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하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회계기준설정기관 개선방안

가. 개선방안 <그림 V-7 : 그림 V-7-1안에서 그림 V-7-4안>

<그림 V-7-1>에서 <그림 V-7-4>는 한국의 회계기준설정기관에 대한 개선안들을 도표화한 것이다. 이 개선안들은 앞서 설명한 회계기준설정기구 개선과 관련하여 정리한 기본개념들, 회계기준설정시 민간부문참여정도(민간주도형과 정부주도형간의 장단점비교),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며 만든 것이다. 앞서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향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설정체제는 현재의 정부주도형으로부터 점차 관민합작 내지 민간주도형의 형태로 전환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림 V-7-1>에서 <그림 V-7-4>까지의 개선안들은 바로 이러한 전환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중 어느 안을 최종적으로 취할 것인가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용여건에 달려있다. 어차피 회계기준설정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민간의 자율에 맡기어 놓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특히 회계기준설정기구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기준설정을 모두 맡아 하는 경우에 그러할 것이지만, 설사 회계기준설정기구가 민간부문에 관련된 회계기준만을 다룬다고 해도 회계기준이 국민경제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공공적인 성격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의 견제와 감독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제시되어 있는 <그림 V-7-1>에서 <그림 V-7-4>까지의 안들 중에서 어느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짓는데 있

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는 바로 정부의 견제와 감독이 어떠한 형태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하 개선안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그림 V-7-1>

<그림 V-7-1>안은 우선 『회계연구원』을 민간부문에 독립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부족한 연구조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족한 회계기준 심의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회계기준검토위원회』를 증권선물위원회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이다. 회계연구원은 민법이나 상법상의 민간독립기구로 설립할 수도 있겠으나, 증권선물위원회나 회계기준검토위원회의 연구조사기능을 지원하는 특별법상의 독립기구로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만약 『회계기준검토위원회』의 위원들을 전원 민간부문요원들로서 구성한다면 현재의 일본체제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된다.

(장점)

- 현재의 체제에 대한 보완이므로 급격한 변화가 따르지 않고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을수 있다.
- 회계연구원이 설립됨으로써 연구조사기능이 대폭적으로 강화될수 있다.(이 문제는 다른 모든 개선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하 추가적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함).

(단점)

- 정부 조직과 예산이 축소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회계기준검토위원회를 증권선물위원회 산하에 둘 경우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예우등을 개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회계기준 설정관련 작업의 질이나 속도, 양 등에 있어서 현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 회계기준설정이 종전과 같이 정부조직에 의해 주도될 경우 이제까지 한국의 회계기준설정기구가 지녔던 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즉 다양한 이해집단의 견해가 회계기준설정에 균형있게 반영되기 어려우며, 교섭력이 강한 이해집단의 입김이 회계기준설정에 지나치게 반영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회계기준 검토위원회를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민간인 위주로 구성할 경우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원이 회계기준설정기구와 떨어져서 어정쩡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연구원을 법적 기구로 만들고 법규정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또는 산하의 회계기준심의회)와의 연계를 명료화하며 회계연구원장이 증권선물위원회(또는 산하 회계기준심의회)의 회계기준심의회에 직간접적으로 적극 개입토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그림 V-7-2>

<그림 V-7-2>안은 한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림 V-7-1>의 안과

동일하다. 즉 <그림 V-7-2> 안에 의하면 회계기준검토위원회를 증권선물위원회 산하가 아닌 민간부문에 회계연구원과 함께 설립하고 회계기준의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예전과 같이 회계기준의 공식적 심의기능을 담당한다.

<그림 V-7-2>안에 의해 회계기준검토위원회를 민간부문에 설립하게 되면 회계기준 제정과정에 회계정보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회계기준검토위원회가 민간부문에 만들어지면 전보다, 즉 회계기준검토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산하에 있을 때보다 투자자 보호가 오히려 잘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 회계기준검토위원회를 설립할 때, 심의위원들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을 한다면 오히려 전보다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회계기준의 설정과 이에 대한 감독이라는 기능의 전문적인 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회계기준검토위원회에서 회계기준의 실질적인 심의검토를 통해 회계기준 설정의 상당부분을 민간부문에서 담당토록 하고, 증권감독원에서는 이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증권감독원에 의한 견제감독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권감독원에서는 회계기준검토위원회에서 행하는 회계기준의 심의검토시 거의 모든 중요한 회의에 참여하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나아가 회계기준검토위원회의 검토소견이 어느 한 이해집단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받지 않도록 견제감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회계기준검토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친 회계기준안은 공식적인 심의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되는데, 이때 만약 증권감독원이 회계기준검토위원회의 검토소견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의견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며,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모든 정황을 참작하여 심의를 한 후 회계

V. 한국 회계기준 설정기관의 개선방향

기준 제개정안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어떠한 형태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회계기준검토위원회를 민간부문에 설립함으로써 회계기준 심의시 회계정보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두가지 체제 - 즉, 회계기준검토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 독립성과 전문성의 제고, 그리고 증권감독원에 의한 견제와 감독 - 가 균형을 이룰 때 일 것이다.

(장점)

-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회계기준검토위원회를 민간부문에 설립함으로써 회계기준 제정과정에 민간부문의 의사반영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회계정보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증권감독원에서는 회계기준의 제개정 과정에 감독자 내지 견제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 회계기준심의회와 회계연구원을 함께 설립함으로써 연구조사기능과 회계기준설정기능의 효율적인 조화를 꾀할 수 있다.

(단점)

- 실질적인 회계기준심의기능의 상당부분을 민간부문에 맡긴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 아무리 회계기준검토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는 해도, 회계기준검토위원회를 구성위원 및 예산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한 회계기준 제개정에 있어서 여러 이해집단들의 의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놓고도, 그 결과로서 나오는 회계기준검토위원회의 검토소견이 궁극적으로 제 3자, 즉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기준 설정체제는 회계기준설정기능이 향후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으로 이전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나의 과도기적인 형태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 민간부문에 설립할 경우 예산상의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

3) <그림 V-7-3>

<그림 V-7-3>안은 <그림 V-7-2>안에 비하면 민간의 참여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즉 회계기준심의회라는 독립법인을 만들어 법적으로 이 기구에서 회계기준을 설정토록 한다. 그리고 회계연구원은 회계기준심의회의 회계기준설정 실무작업을 맡아서 하게 된다. 즉 일종의 research staff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회계기준설정에 관한 정부의 통제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와 같이 회계기준심의회의 인사 및 예산에 부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계기준설정에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토록 한다. 물론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로 그 영향력은 예전에 비하면 제한된 것이기는 하다.

<그림 V-7-3>안에 대한 대안으로는, 인사 및 예산을 통한 견제 대신에(또는 견제와 함께) 회계기준심의회에서 만든 회계기준에 대한 승인권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갖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절절차에 따라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사반영과정을 밟은 후 독립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회계기준심의회에서 결정한 회계기준에 대해 다시 제 3자의 승인을 일일이 요구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V. 한국 회계기준 설정기관의 개선방향

는 몰라도 실효성 측면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립된 회계기준심의회를 설립한 의미조차도 퇴색해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만약에 굳이 <그림 V-7-3>에 대한 대안을 찾는다면 <그림 V-7-4>안에 나와 있는 미국의 체제와 같이 회계기준설정권한은 정부부문에서 갖되 다만 권위있는 민간부문에서 회계기준을 설정토록 하고 정부부문은 이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에 대한 견제 및 감독자로서 기능하는 형태를 취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사료된다. 즉, 따로 독립된 회계기준설정기구를 만들어 놓고 다시 정부부문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민간부문에서 행해지는 회계기준설정에 대한 통제방법으로서 적절치 못하다.

(장점)

- 회계기준설정을 주로 민간부문에 맡기면서도 인사와 예산에 대한 참여를 통해 여전히 정부부문에서는 회계설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민간부문에서도 정부와 함께 인사 및 예산에 참여함으로써 회계기준설정에 있어서 민간의 영향력을 보다 많이 행사할 수 있고, 예산상의 제약으로부터도 훨씬 더 벗어날 수 있다.
- 회계기준설정이 주로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며, 어느 한 이해집단의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될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
- 회계기준설정기구와 연구원이 결합됨으로써 회계기준설정업무의 효율성제고가 가능하다.

(단점)

- 정부부문에서 지나친 영향력을 발휘하려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4) <그림 V-7-4>

미국의 체제를 참조한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금융감독위원회는 회계기준심의회가 만드는 회계기준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는 회계기준심의회가 만든 회계기준과 다른 내용의 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의 SEC와 같이 여전히 보유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회계기준은 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만든 회계기준에 앞서 적용된다. 회계기준심의회는 비록 금융감독위원회의 견제는 받지만 <그림 V-7-1,2>의 경우와는 달리, 제정한 회계기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사실 막강한 회계기준 시행강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또 일정한 경우에는 회계기준심의회에 대한 거부 및 견제세력으로도 기능할수 있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라는 기관이 존재하는 한 회계기준심의회가 만든 회계기준의 권위를 위하여 그리고 견제를 위하여 굳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회계기준의 설정실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관계직원을 회계기준심의회의 회계기준설정실무에 참여시킴으로써 여전히 실무적인 참여와 견제감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SEC와 FASB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그림 V-7-4>의 안은 미국의 체제와 거의 흡사하지만, 미국

V. 한국 회계기준 설정기관의 개선방향

의 체제중에서 그대로 도입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FASB와 같이 7명의 상근위원을 고용하기도 어렵고 이들을 도와줄 연구스텝을 많이 고용할 수도 없다는 것 등이다. 또한 미국과 우리나라는 문화적인 배경이 상당히 다르므로 합의점에 도달하는 용이성이라든지 합의된 사항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수준등에도 차이가 날수 있다.

(장점)

-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전히 일정한 유보조항에 따라 회계기준심의회가 만든 기준을 개정하거나 실질적으로 폐지시킬 수 있고 나아가 새로운 기준을 제정할 수도 있으므로 필요시 공적기관으로서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
-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행하는 회계기준설정에 대해 하나의 중요한 견제감독 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
- 다양한 이해집단의 견해가 회계기준에 반영될수 있다.
- 민간부문의 전문인력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단점)

- 미국의 경우 FASB는 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한편 그들의 의사결정상의 독립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참가위원들은 다른 직업을 갖을수 없으며 상당한 보수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람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구한다고 해도 많은 보수를 주어야 하는데 예산상 한계가 있을 것을 생각되므로 설립초기에는 부득이 1-2명 정도를 제외한 기타 구성원은 비상근제로 해야 할 것이다.
- 합의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차피 합의주의가 중요한 기준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행착오를 거

치더라도 경험을 쌓으며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 민간부문에서 회계기준을 만들면 시행력이 문제시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막강한 시행력을 갖춘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으므로 별 문제가 안될 것이다.

나. 제언 및 향후 검토과제

회계기준설정기구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서 기준제정에 있어서 독립성, 효율성, 그리고 회계기준의 시행력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설정체제를 보면 시행력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독립성과 효율성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⁴⁾ 본 장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외국의 예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며,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우선적으로는 <그림 V-7-1>에 나와 있듯이 민간부문에 독립적인 관민합작의 또는 민간법인인 회계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현재의 정부주도형 회계기준설정체제에 부족한 연구조사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회계환경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사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으며, 회계기준설정기관과 이를 보조하는 연구기관이 함께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는 체제의 선택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4) 그러나 한편 앞서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최근 증권감독원에 의한 감리결과를 보면 기업에 의한 회계기준 위반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 될 경우 우리나라도 회계기준의 시행력을 보다 확실해 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V. 한국 회계기준 설정기관의 개선방향

렇다면 과도기적으로 <그림 V-7-2>에 나와 있는 방안의 선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 V-7-2>안에 의하면 민간부문에 설립되는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본위원회가 검토심의회 회계기준안을 공식적인 심의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즉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림 V-7-3>안의 채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부문에서는 회계기준심의회(이사회 포함)의 인사와 예산에 대해 일정부분 관여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회계기준설정에 상당부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림 V-7-4>안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설정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Peirson 교수(Commonwealth of Australia, 1997)는 호주의 회계기준 설정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 여러나라의 제도를 비교검토해 본 후, 미국의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본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 앞서 언급한 독립성, 효율성, 시행력, 회계정보 창출목적, 회계기준 설정에 있어서 견제와 감독능력의 구비 등 회계기준의 설정체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미국의 체제가 그 어느 나라의 체제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그림 V-7-4> 안의 채택을 지지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회계기준이 정부부문의 주도하에 설정되어 왔고, 또한 법규정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번에 미국과 같은 체제를 갖추어 나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눈에 띄게 부족한 연구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림 V-7-1>안이나 <그림 V-7-2>안을 택하고, 추후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수용력이 갖추어지는 대로 <그림 V-7-3>안이나 <그림 V-7-4>에 나와 있는 방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대안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여건상 우선적으로 <그림 V-7-1>안이나 <그림 V-7-2>안이 채택된다면, 회계기준심의회의 인원구성을 10명 이내로 하며, 단순한 이해집단대표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은 전문요원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추천절차에 있어서도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학회에서 추천하는 학계요원들을 보다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일본의 회계기준심의회에서와 같이 회계정보이용자집단의 이해를 보다 객관적으로 잘 대변할 수 있는 증권경제연구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위원회 위원들은 가능한 한 거의 모두를 민간요원들로 구성토록 하고 증권당국요원들은 참관자로서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계기준제개정의 실질적인 업무는 회계기준심의회에서 맡아 하도록 하면서도 증권당국에서는 최종승인권자로서, 그리고 견제감독자로서 기능토록 함으로써 민간과 정부의 기능분담이 조화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기준 설정을 어느 부문에서 맡아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기준설정은 연방정부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주 및 지방정부에 적용될 회계기준의 제정은 미국 FAF 산하의 GASB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 독립된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기준을 모두 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로서 거론되는 것은 양부문간에 회계기준이 유사하게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회계기준심의회 및 회계연구원의 조직·운영체계

본장을 마치기 전에 개선방안에 나와 있는 회계연구원이나 회계기준심의회의 조직이나 운영체계에 대해 간단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그림 V-7-1,2,3,4>안에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있는 사항은 회계연구원설립이다. 회계연구원은 자금조달의 형태에 따라 순수민간투자의 형태를 지닐 수도 있고 관민합작의 형태를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그림 V-7-1,2,3,4>중의 어느 안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회계연구원장의 임명권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컨대 <그림 V-7-3>안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 회계기준심의회 회장이 회계연구원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기타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또는 출연자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임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어느 안이 채택되든 연구원 설립초기에는, 연구요원들로서 전문연구요원 3-4명, 연구보조요원 3-4명, 홍보 및 기획행정요원 3-4명 정도가 필요하리라고 예상된다. 이들은 상근으로 한다. 조직형태는 우선적으로 일본의 (재)기업재무제도연구회와 유사한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의(재)기업재무제도연구회는 1997년도 1월 현재 총무부(3명), 기획부(2명), 조사연구 제1부(4명), 조사연구 제2부(5명)로 조직되어 있는데 최근 조사연구부를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계연구원 설립 초기에는 연간 예산을 1997년 12월말 기준으로 미국의 약 5% - 7% 수준인 15 - 17억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한다. 예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다양한 이해집단이 예산조달에 참여하는 제 1안이나 제 2안이 보

다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여러 가지로 민간단체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시점에는 오히려 제 3안에 의한 자금조달 방식이 보다 좋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회계연구원에서 향후 자료판매 등 수익 사업수입이 늘어나면 이를 운영기금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

회계연구원 예산조달방안

	(1안)	(2안)	(3안)
정부	1/4	-	-
기업(상장협,중소기협)	1/4	1/3	-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	1/4	1/3	-
증권거래소 등(*)	1/4	1/3	-
기 타 (**)	-	-	1

(*)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투신협회, 은행협회등.

(**) 제 3안은 여러기관으로부터 기금을 각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증권거래세중의 일부; 증권감독원 등록기업들에게 대한 연부과금의 일부(같은 규모의 등록법인이라면 상장회사에게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부과금을, Kosdaq 등록기업들에게 그다음으로 많은 연부과금을, 그리고 기타 등록법인에게 가장 적은 연부과금을 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협회에 내는 연부과금의 일부등을 각출하는 방식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자금조달의 번거로움은 덜수 있겠으나,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여러 이해집단에서 비용을 상호 부담토록 하고 영향력 행사에 있어서 상호 균형을 기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을 준다는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V. 한국 회계기준 설정기관의 개선방향

한편 <그림 V-7-1,2,3>안에 의할 경우 회계기준검토위원회나 회계기준심의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회계기준심의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이해집단의 지명은 법에서 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회계기준심의회의 구성은 <그림 V-7-3>안에 따를 경우 회장을 포함 9 내지 10명 정도의 위원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를 보아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수는 8-9인 정도로 하고 있다. 설립초기에는 일단 1 - 2명 정도만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근으로 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성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추천하는) 1명, 증권거래소 1명, 공인회계사회 2명, 학계 1명, 상장사협의회 1명, 중소기업중앙회 1명, 회계연구원 1명, 세무협회 1인, 기타 금융감독위원장이 임명하는 회장 1명등 총 10명 정도로 한다. 상근 1명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근 위원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보수를 지급한다. <그림 V-7-3>안에 의할 경우 회계기준심의회 회장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임명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겠으나, <그림 V-7-4>안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재단이사회에서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회계기준심의회에는 자문기구를 두어 회계기준심의회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담당토록 하며 상황에 따라 긴급과제팀등을 수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이사회는 미국의 FAF나 영국의 FRC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한국회계기준위원회와 자문기구, 회계연구원등에 예산을 조달하고 위원들을 임명하며 전체적인 작업의 진행을 보고받고 검토하며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일등이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회계기준제정작업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VI. 결론 및 주요내용 요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회계기준설정체제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보았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첫째, 한국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러한 회계정보를 만드는 회계환경은 어떠하며, 그러한 목적과 환경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을 검토해 보았다. 둘째, 외국의 예를 참조하기 위하여 주요 6개국(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프랑스)의 회계기준 설정체제를 조사하였다. 셋째, 회계기준설정기구는 어떠한 특질을 가져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다.

현행 한국의 회계기준설정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한편으로는 바로 이러한 외국의 예를 참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논리에 기초하여 추출하여 본 개념적인 틀에 바탕을 두고 제안된 것이다. 이하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기로 한다.

1. 한국회계기준설정기구의 문제점

회계기준 제정기구는 회계기준을 적절히 제정하기 위하여는 몇가지 중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독립성이다. 회계기준은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제정하되, 제정과정에서 여러 이해집단들의 영향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효율성이다. 회계기준의 제정작업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회계기준제정기관은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한편 신속하면서도 또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고루 회계기준제정과정에 반

영되어야 한다. 셋째, 시행력의 확보이다. 아무리 독립적인 회계기준 제정기관이 효율적으로 회계기준을 만들더라도 그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세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회계기준 설정기관의 경우 설정된 회계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시행력의 확보 측면에는 볼 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회계기준설정기관의 독립성이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 즉 감독기능에 치중해야 할 증권감독원에서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회계기준의 제개정을 주도하다 보니 회계기준의 제개정업무의 속도가 느리고,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또 회계기준의 제개정에 있어서 관련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이론이나 논리에 바탕을 둔 충분한 사전 논의, 다양한 이해집단들간의 의견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합의절차의 수행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한국회계기준 설정체제 하에서는, 회계기준의 제개정시 한 이해집단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우며, 회계기준의 제개정이 너무 빠르게 충분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없이 처리됨으로써, 나중에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주로 증권감독원의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회계기준 제개정을 하다보니,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전문요원 및 금전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외국의 사례검토로부터의 시사점

첫째, 세계적으로 회계업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

면 정부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공인회계사들로부터 독립된 회계기준설정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독립성은 예산과 인력면에서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의 회계기준설정기관들은 관련이해집단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의사결정기구에 각계의 대표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집단간의 영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체제는 전세계의 회계업계를 선도할뿐더러 자본시장의 구조도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참조가 될 것이다.

둘째,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민간기구에서 자율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다가 회계기준의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회계기준에 공적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회계기준제정을 민간기구에 맡길 경우 제대로 회계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시행력의 문제는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이 막강한 규제기관인 SEC가 존재할 경우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덜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 회계기준설정을 민간부문에 관민합작의 법인을 만들어 놓고 이 기구에서 맡아서 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이 기구의 예산과 인사의 일부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정부조직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설정기구를 보다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 가는데 있어서 과도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형태로서 참조할 만하다.

셋째,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주도형의 형태로 회계기준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대장성 산하의 기업회계기준심의회에서 회계기준설정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기업회계기준심의회를 모두 민간

부문인사들으로써 구성하였는바 이러한 체제를 갖추으로써 일본의 경우에는 회계기준설정이 정부조직내에서 이루어지면서도 민간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편 일본의 경우 (재)기업재무제도연구회가 민간부문에 설립되어 부족한 회계관련 연구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다.

넷째, 기업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낮고 주식시장의 발전도도 낮으며 대륙법계에 속하는 프랑스나 독일의 회계기준설정체제는 우리나라에 비교적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보다는 미국이나 영국의 예가 보다 우리나라의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데 있어서 보다 참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은 현재 EC directives에 의해 각종 체제가 통일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기타 국들은 미국이나 영국의 체제로 수렴해 나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회계기준설정체제를 정비해 나갈에 있어서 미국이나 영국의 체제를 많이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단순한 모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미국이나 영국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들(독립성, 효율성, 특히 투자자위주의 회계정보 제공목적등)이 보다 효율적이고 우리실정에 더 잘 맞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독일 등 유럽국가나 호주의 경우를 보면 회계기준이 법규화되어 있다. 특히 독일이나 호주의 경우 회계기준이 제정되려면 국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그동안 회계기준의 일부가 재정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법규화되어 있었으나 국회통과를 요하는 것은 아니었다. 현대의 급변하는 기업환경하에서 회계기준을 법규화하여 국회통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미 그러한 체제로 출발하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회계기준을 statement화 해야 할 것이다.

3. 회계기준설정기구 개선안 <그림 V-7-1,2,3,4 참조>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만약 현실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면 미국과 같이 회계기준을 민간주도로 해 나가고, 증권감독원에서는 이에 적극 참여하되 주로 감독기능을 맡아하는 미국의 체제와 유사한 방향으로 회계기준 설정체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즉 <그림 V-7-4>안의 채택을 지지). 그러나 만약 이러한 안이 현실적으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적으로는 눈에 띄게 부족한 연구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계연구원을 민간부문에 설립하는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족한 회계기준심의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회계기준검토위원회를 설립하는 <그림 V-7-1>안이나 <그림 V-7-2>안을 택하고, 추후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수용력이 개선되는 대로 관민합작형태의 회계기준설정기구를 만드는 <그림 V-7-3>안이나, 미국의 FASB와 같은 형태를 지니는 <그림 V-7-4>에 나와 있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회계연구원이 설립될 경우, 연구원 설립초기에는, 연구요원들로서 전문연구요원 3-4명, 연구보조요원 3-4명, 홍보 및 기획행정요원 3-4명 정도가 필요하리라고 예상된다. 이들은 상근으로 한다. 조직형태는 우선적으로 일본의 (재)기업재무제도연구회와 유사한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재)기업재무제도연구회는 1997년도 1월 현재 총무부(3명), 기획부(2명), 조사연구제1부(4명), 조사연구제2부(5명)로 조직되어 있는데 최근 조사연구부를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계연구원 설립 초기에는 연간 예산을 1997년 12월말 기준으로 미국의 약 5% - 7% 수준인 15 - 17억원 정도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달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VI. 결론 및 주요내용 요약

이해집단이 예산조달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안으로는 등록수수료나 상장수수료, 증권거래세의 일부를 이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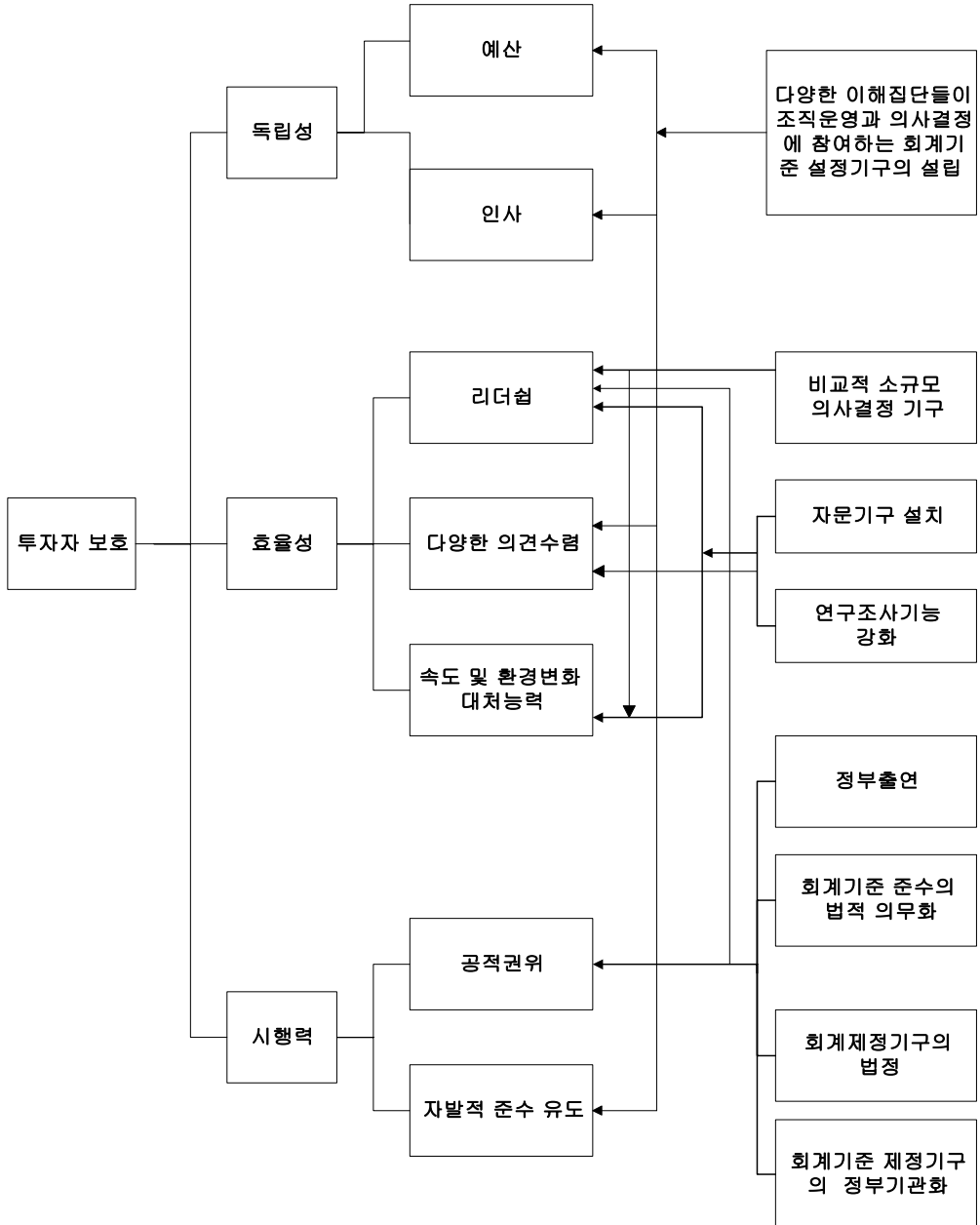
<표 V-1> 국가별 회계기준 설정기구 성격비교

회계기준설정기구성격	미 국	영 국	호 주(註1)	일 본	한 국
(1) 회계기준 형태 (법규또는 회계기준서)	회계기준서	회계기준서	법규	법규	법규
(2)회계기준 설정기구 명칭(멤버수)	FASB(7)	ASB(9)	AASC(8)	기업회계 심의회(24)	기업회계 기준심의회(17)
(3) 기타 회계기준 설정 관련기관	FAF (註2) GASB EITF	FRC(27) UITF(15) FRRP(22)	FRC UIF	기업재무 제도연구 회(12)	증권감독 원 기업회 계제도과
(4) 조직형태	독립된기구	독립된기구	독립된기구	정부산하기 구	정부산하 기구
(5) 공공부문 회계기 준 제정	GASB(5) 기 타 정 부 기관	ASB(9)	AASC(8)	정부기관	정부기관
(6) 의사결정 방법	과반수	2/3이상	과반수	과반수	과반수출석 2/3이상찬성
(7) 연간 예산 규모	\$ 1 7 million (약 153억 원)	1.8million Pound(27억 원)	호 주 \$2.6million (약20억원)	기업회계심 의회(약간 액)기업재무 제도연구회 (약20억원)	(약간액)
(8) 자금지원	정 부 · 민 간	정 부 · 민 간	정 부 · 민 간	기업회계심 의회는정부 지원(기업재 무제도연구 회는민간지 원)	정부지원
(9) 상근여부	상근	회장, 부회 장만 상근	회장과비서 실요원들만 상근	비상근	1-2인을 제 외하고 모 두 비상근
(10) 공식적 자문기구 (명수)	FASAC(33)	UITF(15)	UIG	없음.그러나 수시로임시 자문기구는 만들수있음	없음.그러나 수시로임시 자문기구는 만들수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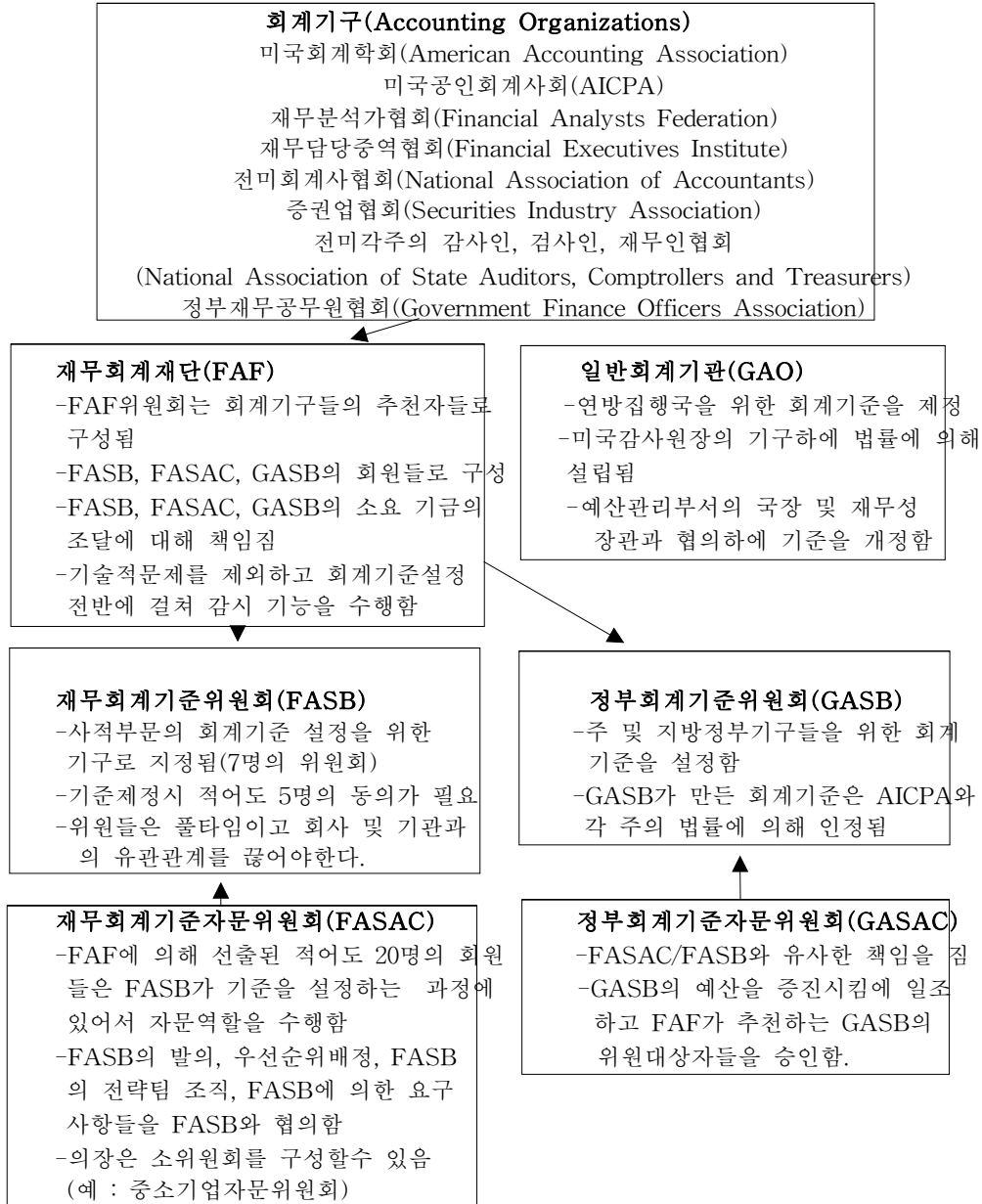
VI. 결론 및 주요내용 요약

- (註1) 호주의 경우 1997년 9월 8일 호주 재무부장관이 발표한 개
선안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음.
- (註2) 기구내의 인원수파악이 어렵거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기입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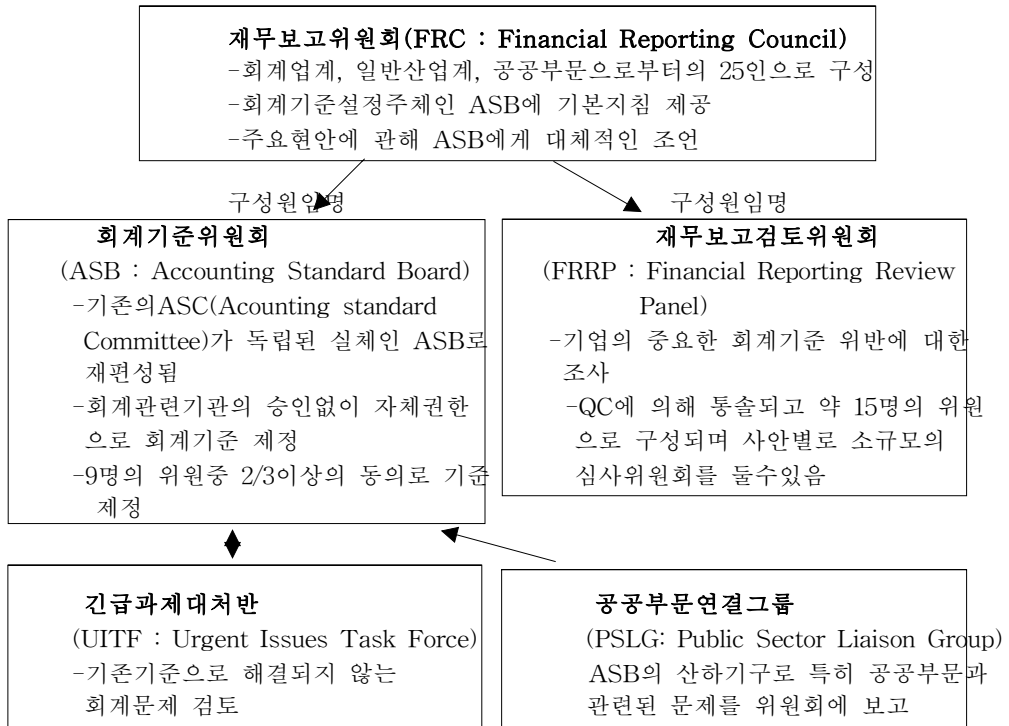
<표 V-2> 회계기준 설정체제 개선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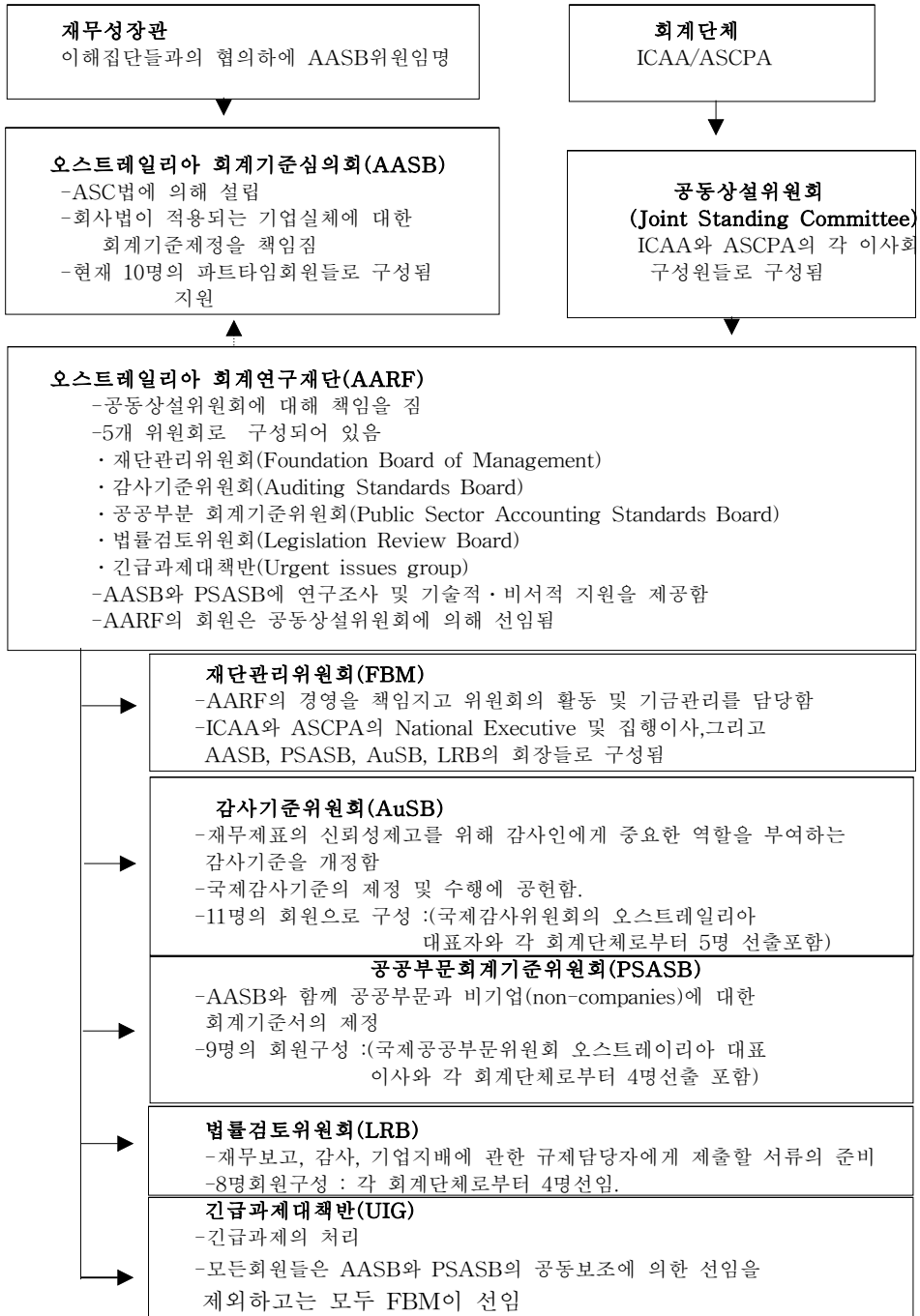
<그림 V-1> 미국의 회계기준설정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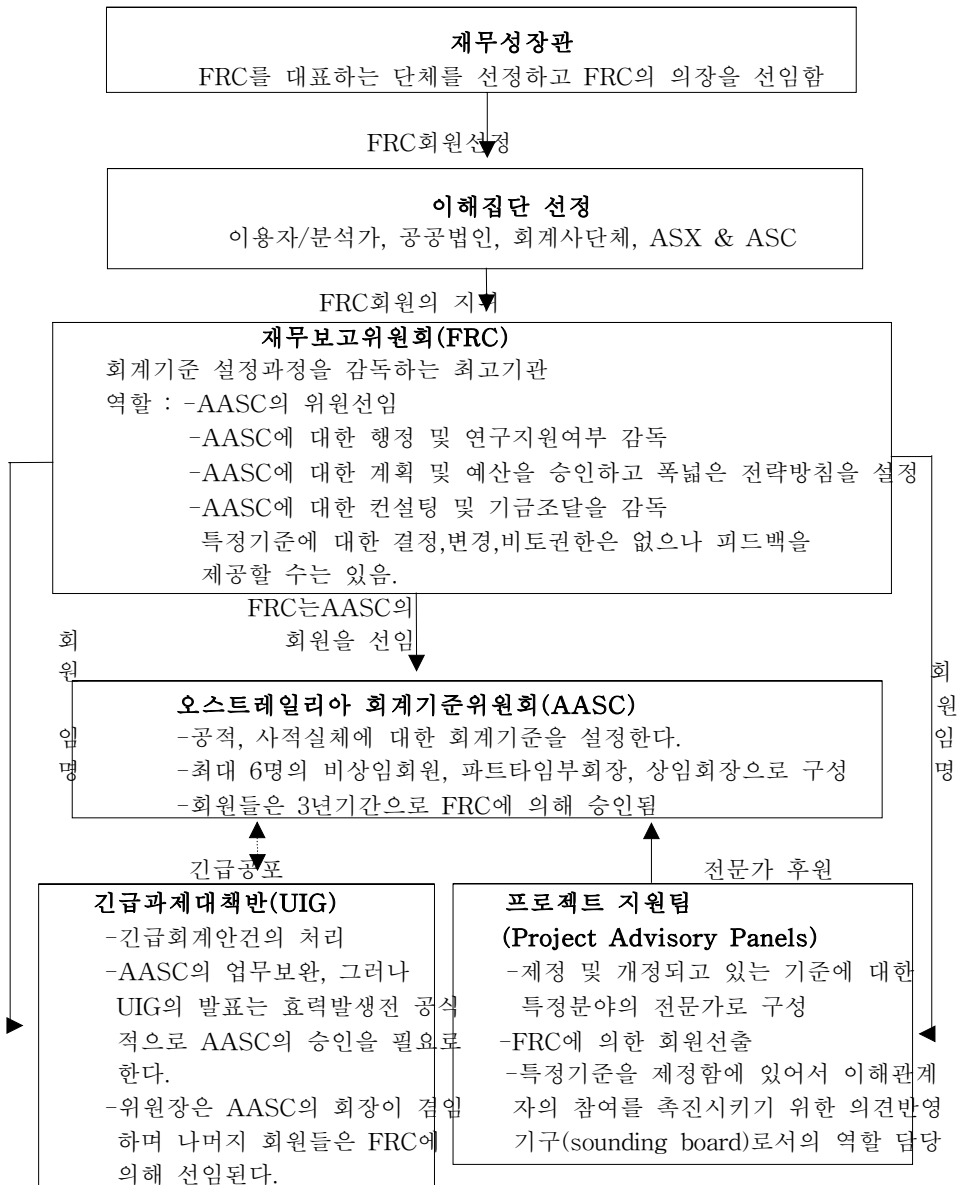
<그림 V-2> 영국의 회계기준 설정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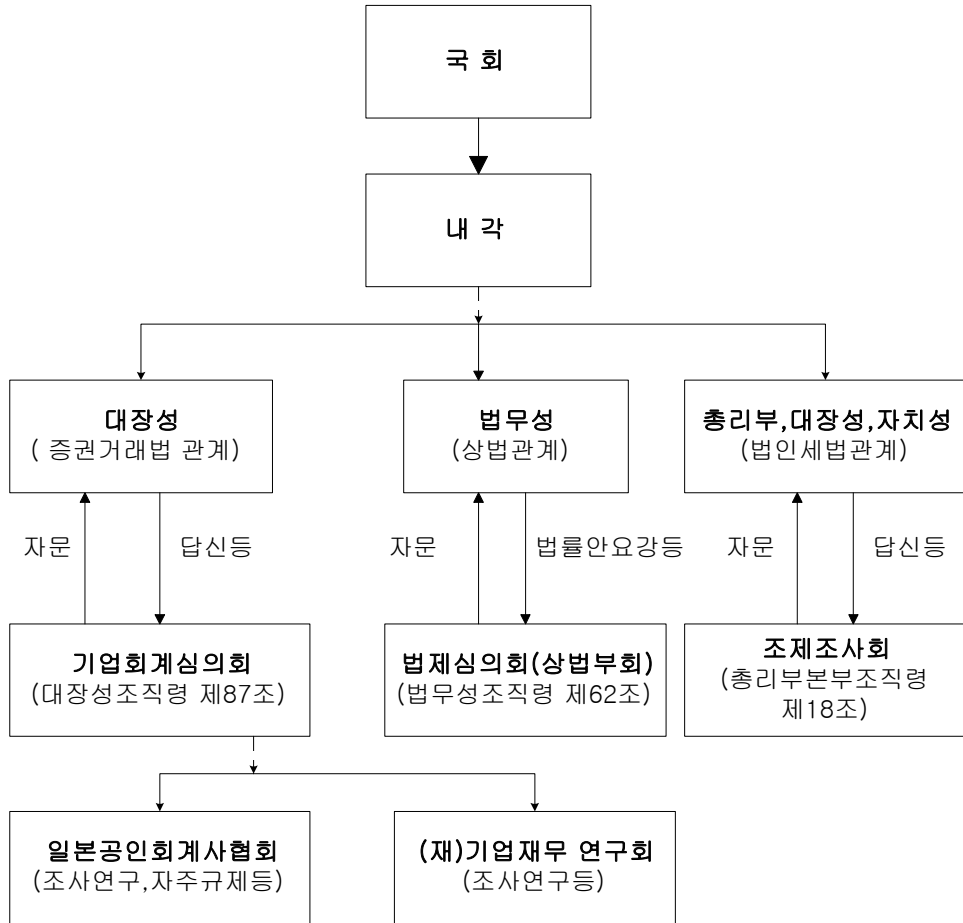
<그림 V-3>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존 회계기준 설정체제



<그림 V-4> 오스트레일리아의 새로운 회계기준설정체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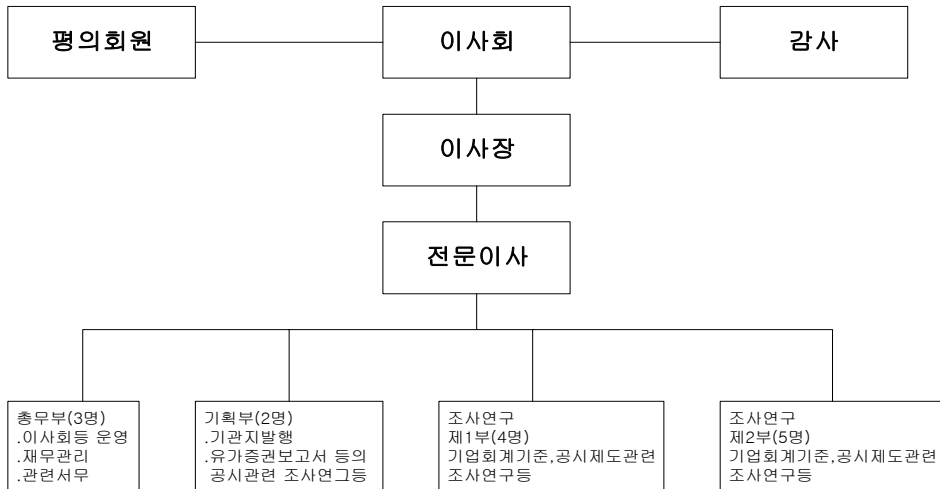
<그림 V-5> 일본의 회계기준 설정체제



<그림 V-6> 일본의 재단법인 기업재무제도연구회

(1) 연간예산규모 1997년도 206,562천엔

(2) 조직도, 직원수



*사무국(각부)에는 부장(3명),주임조사역(4명),조사역(6명),사무직원(1명)

배정

(3) 조사연구사항

— 조사연구는 학자, 공인회계사, 산업계, 아날리스트 등에 의한 조사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결과를 보고서등으로 발표, 정책 제안을 한다.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연구사항과 구성원수

① 연금회계연구위원회

학자(3명), 공인회계사(2명), 산업계(3명), 아날리스트 등(4명), 플러스 사무국

② 감손(減損) 회계연구위원회

학자(3명), 공인회계사(2명), 산업계(1~2명), 플러스사무국

③ 포괄이익연구위원회

학자(3명),공인회계사(2명),산업계(2명),아날리스트(1명),플러스 사무국

<그림 V-7> 한국회계기준 설정체제의 개선방안



(부 록) 호주의 회계기준설정기관에 관한 Peirson 보고서

AARF의 위탁을 받아 호주의 회계기준설정기구의 개혁안이 Peirson 교수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 보고서는 1990년 9월에 AARF의 경영위원회에서 승인되어 각계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하여 일반에 공표된 바 있다. Peirson 교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4개국에 있어서의 회계기준설정기구를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공통점 및 참조가 되는 점들을 지적하였다.

- ①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회계기준설정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서도 원래 APB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그 후 설립된 FASB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전의 ASC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그 후 설립된 ASB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기준설정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각계를 두루 대표할수 있어야 하지만 한편 너무 거치장스러워서도 안된다. 호주에 있어서 과거 회계기준설정위원회의 인원구성을 다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예를 참조해 볼때,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위원수가 10명이 내이어야 한다고 결정내릴 수 있다.
- ② 대부분의 나라에서 위원회는 주로 파트타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풀 타임회원제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a)회계기준설정작업에 몰두할수 있다. (b)위원과 보조스텝간의 상호교류가 늘어나며 이에따라 위원은 다루는 과제에 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갖을수 있고 기준설정작업에 보다 전문적이 될 수 있다. (c)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한다. 풀타임 회원제의 단점

은 다음과 같다. (a)비용이 많이 든다. (b)풀타임회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c)재무보고의 실제분야에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파트타임 회원도 회계기준설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FASB의 7명의 회원이 모두 풀타임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전의 ASC는 모두 파트타임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그 후 설립된 ASB는 9명의 회원중 2명의 회원은 풀타임 회원이다. 이는 미국과 영국에서 풀타임 회원제의 이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나타낸다.

- ③ 일반적으로 풀타임회원만이 보수를 받는다. 영국의 Dearing Committee는 파트타임회원들도 보수를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파트타임회원들도 참석할 때마다 거마비(daily sitting fee)를 받는다. 회원들의 경우 보수를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수 있다.다만 어느정도의 보수를 주느냐는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다.
- ④ 조사한 4개국중 뉴질랜드를 제외한 3개국의 경우 자문그룹이 있다. 비록 많은 이익단체가 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한다고 해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두 회계기준설정과정에 참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자문그룹을 만듦으로써 대표성을 제고시킬수 있으며 나아가 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함께 제고시킬수 있다.
- ⑤ 영국에서만 하나의 위원회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기준을 제정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각기 다른 위원회가 기준을 제정한다. 최근 미국의 회계기준설정기구에 대한 검토 결과는

현재와 같이 두 개의 위원회(FASB, GASB)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달리 영국의 Dearing Committee는 또다른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 Dearing Committee는 민간부문이건 공공부문이건 회계기준설정에는 일관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호주의 PSASB의 견해와 동일한 것이다.

⑥ 회계기준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데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위원들의 단순과반수의 찬성으로 회계기준이 결정된다. 그러나 기타 국가에서는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1/2찬성기준은 업무진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혹자는 1/2찬성기준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해서 반대한다. 그러나 실수의 방지는 적절절차(due process procedure)를 밟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다.

⑦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회계기준설정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고 기타 단체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ASRB가 만들고 승인한 기준은 각료회의에서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위원회로 하여금 회계기준을 만들고 승인하게 하는 것은 회계기준설정에 드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개혁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권위

회계기준의 권위유지를 위하여 회계단체들은 회원들로 하여금

AcSB가 만든 회계기준의 준수를 요구한다. 또한 관련 법규들은 AcSB가 만든 회계기준의 엄수를 요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입법관련기관들은 입법시 관련 회계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② 독립성이 있는 재단의 설치 - AASF의 설립

Peirson교수는 외국 여러나라의 회계기준설정기구를 조사해 본 후 미국의 기구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하에 이와 유사한 기구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즉 1995년까지 호주회계기준 재단(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Foundation ; AASF)을 설립하며 이 재단은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서 공공, 민간 양 분야의 재무보고에 중대한 관심을 가진 개인 및 단체로 구성된 독립성 있는 재단이다. 그 구성원에는 회계사협회, 법무장관, 감사장관, 호주.뉴질랜드회계학회, 호주증권협회 등을 포함한다.AARF가 회계사협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이 재단은 민간, 공공 양부문의 재무보고의 작성자, 감사인 및 재무보고의 사용자로 구성된 것으로 그 만큼 독립성이 높다고 볼수 있다. 또 구성원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재단의 기금 확보도 용이해진다. AASF와 같이 독립성 있는 기구의 설립을 주장한 주요 이유는 첫째, 이러한 기구가 설립되어야 회계기준설정이 여러 관련 이익집단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보이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 회계기준 설정과정은, 민간 및 공공부문을 규제하는 많은 요구사항들을 비켜감으로써 긴급하게 대두되는 과제들에 보다 신속한 반응을 보일수 있다. 회계기준설정기구가 꼭 이와같은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 주장의 근거에는 결국 독립성이 있어야 모든 구성그룹들로부터 지지를 받을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

이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에서 1973년에 FASB를 세울때도 있었으며, 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관에 대한 개선안을 취급한 Dearing Committee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있다.

③ 단일의 기준설정 심의회의 설치 - ASB의 설치

1995년까지 신설되는 AASF내에 회계기준심의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 ASB)를 설치한다.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재단을 구성하는 단체(the accounting profession, the Financial Executives Institute, the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the Australian securities commission, the Australian stock Exchange Ltd., The Securities Institute of Australia, the Commonwealth Department of Finance, State and Territory Treasuries, and Auditors General과 같은)가 제출하는 명단들로부터 AASF 경영위원회가 선임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재임 가능하며 근무형태는 전원을 상근으로 하는 것이 요청되지만 당장은 의장과 부회장만을 상근으로 하고 다른 7인의 위원은 비상근이다. 위원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의해 행해진다. 위원수, 임기, 추천방법은 거의 현재의 AASB의 그것과 동일하고, 사실상 AASB가 ASB에 인계된 형태이다. 그렇게 되면 이 개혁구상은 공공부문으로 이동한 회계기준설정권한을 민간부문으로 되찾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④ 고문단의 결성

회계기준심의회에 조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부문 고문단과 민간부문 고문단을 결성한다. 고문단의 멤버는 15명에서 20명정도로 하고, 주된 전문적 문제, 심의회의 작업계획, 심의회의 우선순위의 결정, 정규절차의 타당성등과 같은 사항들에 관해 ASB에 조언을 한다. 이 2개의 고문단은 1992년까지 결성하

고 AASF의 ASB가 설치되기까지의 사이에는 공공부문 고문단은 현재의 AARF의 PSASB를 보좌하고 민간부문 고문단은 현재의 AASB를 보좌한다. 고문단의 멤버에는 회계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회계사 및 회계학자가 주요 멤버가 된다. 이 측면에서도 회계사협회의 영향력은 유지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이대선 · 장지인 · 나인철 · 이창우, “우리나라 회계기준설정과정의 발전 방향” 『회계학연구 제18호 별책』, 1994. 7
- 송인만, 황인태,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절차”, 『회계학 연구보고서 제 6호』, 1997년 6월, p.5 - p.30
- 정기영, “회계학,” 1997, 율곡출판사
- Clark, Peter, “The Role and Future Plans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국제회계기준의 수용 및 대응방안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심포지엄 발표자료, 증권감독원, 1997. 11
- Commonwealth of Australia, “Accounting Standard, Corporate Law Economic Reform Program (Proposals for Reform : Paper No.1),” 1997
- Dearing, Sir Ron, *The Making of Accounting Standards*, Report of the Review Committee, presented to the Consultive Committee of Accountancy Bodies, (The Dearing Report), ICAEW, 1988
- Nobes, Christopher and Robert Parker, 『Comparative International Accounting(fourth edition)』, Prentice Hall, 1995
- Radebaugh, L. H. and Sidney J. Gray, 『International Accounting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1997
- SEC, “Administrative Policy on Financial Statements,” 『ASR No.

4』, SEC, 1938

Turley, Stuart, "Developments in the structure of financial reporting regulation in the United Kingdom", (published in *The European Accounting Review*, pp.106-pp.122), (reprinted in 『Country Studies in International Accounting - Europe』, pp. 397 - pp. 414)